

농업·농촌발전계획

-농업인과 함께하는 열린농정 실천계획-

1998·10

농림부

목 차

□ 농업·농촌발전계획	3
□ 농산물유통개혁대책	49
□ 협동조합 개혁방안	123
□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189
□ 참고자료	193

여 백

농업·농촌발전계획

- 농업인과 함께하는 열린농정 실천계획 -

여 백

목 차

I. 농촌의 실상과 농정여건의 전망	7
II. 농정개혁 방향과 추진전략	10
III. 농정조직·제도 및 추진체계 개혁	12
1. 농정조직 개혁	12
2. 협동조합 개혁	14
3. 농산물유통 개혁	17
4. 농촌 투융자제도 개혁	20
5. 농업관련 규제 개혁	24
IV. 중점 추진시책	25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과 지속가능 농업의 육성	25
2. 생산·유통·품질·안전성중심의 총체적 경쟁력 제고	30
3. 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37
4. 농업통상협력 강화와 통일농정 적극 전개	39
5. 21세기 선진 농촌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 확충	41
6.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 안정시책 강화	44
V. 농정개혁 추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	46
VI. 농업·농촌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방향	47
<참고> 농업관련 주요지표 전망	48

여 백

I. 농촌의 실상과 농정여건의 전망

1. 농촌의 실상

- 최근 2년간 대풍으로 주곡인 쌀의 자급이 유지되고 있으나 경지면적 감소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식량자급기반이 불안정
 - 사료곡물 수입증가 등 식량자급률 저하 : ('90) 43.1 → ('97) 30.4%

- '90년대이후 농가소득이 연평균 11.4% 정도 증가해 왔으나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과의 격차가 커지고 농가부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
 - 농가소득/도시가계소득(%) : ('85) 113 → ('90) 97 → ('97) 85.6%
 - 부채도 '90년이후 연평균 15.5%씩 증가, 과다 차입문제 대두

-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정비와 교육·의료 등의 농촌 복지가 확충되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
 - 이에따른 청장년층의 이농으로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현상 심화
- 50세이상(%) : ('85) 27.1 → ('90) 34.5 → ('97) 47.4%

- 지난 5년간 급속한 투융자 증가로 외연적인 성과는 나타났으나 최근 외환위기를 계기로 비효율과 부실문제가 크게 노출
 - 국민 1인당 실질소득(GNP)이 1990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큰 폭의 실업증가로 농산물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일시적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현상으로 농촌경제 압박

◇ 우선 농업경영안정과 농촌투융자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면서 IMF 경제위기를 우리 농업 체질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 ◇

2. 농정여건의 전망

- 21세기의 상황변수 : 개방·경쟁 심화+농업의 새로운 가치관 제기 -

<대외적 여건>

□ WTO, OECD등 국제기구의 규범이 더욱 강화되고 각국의 개별 정책이 국제규범에 더욱 구속을 받게 될 전망

○ WTO에 제출한 시장개방일정에 따라 품목별로 수입개방확대 (쌀은 2004년 재협상, 쇠고기는 2001년 개방)

※ 차기협상에서도 AMS 감축과 MMA수입량 확대, 관세 상당치 인하 등 보호장치 완화(deeper cut) 예상

○ 각국의 농업정책도 시장지향적 정책과 허용보조정책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특히 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농가소득 안정화 차원에서 자국의 특성에 맞게 제도화

※ 미국 : 생산탄력계약지불제(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ayment)

※ 캐나다 : 순소득안정화 계정(Net Income Safety Account)

※ 프랑스 등 OECD : 농업의 다기능성고려,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농촌개발

※ 일본 : 신농업기본법 제정으로 직접지불제(중산간지역) 확대 도입

□ 세계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증되고, 각국별로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대한 관심 증대

○ 세계식량정상회의(WFS)에서도 식량안보(Food Security for All)의 중요성 강조('96.11)

※ World Watch Institute : "21세기는 세계적인 식량난 시대"

○ 세계인구증가 및 중국의 식량수입국으로의 전환 등 식량불안 고조

- 세계인구성장율은 년 2%내외로 2010년 72억명 예상('97:55억)

※ 세계 쌀 (특히 중단립종)시장은 변동이 심한 thin market : 총 무역가능량은 연간 200만톤(중단립종)이며, 교역량 변화에 따른 가격변화가 극심(쌀생산 1% 변화시 : 교역량 17%, 가격 47% 변화)

<국내적 여건>

- 농업과 농촌의 다면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
 -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과 이로인한 경제·사회적 안전망(Safety Net) 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공익적 기능은 13조4천억원으로 추정('95 기준 농진청)

- 농업생산이 소비지향적으로 변화하고, 과학기술발달·정보화로 생산·경영·유통구조에 획기적인 변화 전망
 - 대형판매점 등 신물류·신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유통의 대형화가 촉진되고, 다양한 유통주체·경로가 출현
 - 농업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이 증대되어,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요구 증대
 - 농업의 범위가 가공·유통까지를 포함하는 Agribusiness로 확대
 -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배양 요구 증대

- 농업의 국제화·지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농정의 필요성 증대
 - 농산물 교역·해외협력 등을 통한 우리농업의 국제화 추세와 함께,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농정이 필요
 - 통일에 대비한 대북지원방안 및 남북한 농업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한 통일농정 필요성 증대

-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농촌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투융자사업의 부실화·낭비 등 비판 제기
 - 이상기후조건 및 토양오염·농업용수 부족현상에 대비한 특단의 영농대책 필요
 - 투자의 효율성 강화, 농업관련 조직의 구조조정 등이 강력히 요구

Ⅱ. 농정개혁 방향과 추진전략

<농정목표>

- 주곡의 안정적 자급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 농업인의 소득을 타산업 종사자와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
- 농업인이 “어엿한 경제주체”로서 경제발전에 적극 참여
- 농촌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쾌적한 복지농촌 건설

1. 개혁방향

제 도 : 시장경제원리 확충과 농업의 특수성에 역점을 두고 개혁

- 농업관련조직을 농업인에 대한 봉사위주로 축소 개편
- 직거래제도 등 다양한 신물류·신유통체계 정착
- 투융자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 효율성 제고
- 농업관련 각종 진입규제 및 제한규정 등을 과감하게 정비

체 계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정책자금은 고객만족형 종합지원 방식으로 전환
- 지방농정의 자율성 강화와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기능 재편

정 책 : 선진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

-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과 지속가능 농업의 육성
- 생산·유통·품질·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
-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협동화 등 체계적 육성
- 생산구조개선사업의 내실화와 경영혁신의 본격 추진
- 기술혁신과 정보화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 품질·안전성 위주의 차별화로 품질경쟁력 제고
- 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 선진 농촌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 확충

2. 추진전략

◇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개혁 추진으로 『국민의 정부』 농정의 품질혁신 ◇

- 참여농정, 현장농정, 봉사농정의 『열린농정』 전개
 - 『농업인·소비자·정부』가 함께하는 『참여농정』의 실천
 - 『농·소·정』 협력강화와 농업회의소 설립 등으로 경영주체로서 농업인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농업인의 현장애로를 찾아 해결해주는 『현장농정』의 강화
 - 농업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농정』의 구현

- 농정개혁을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농업인의 무리없는 적응 유도
 - 제도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연착륙 유도
 - 정책수단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개혁효과를 극대화

- 경영·기술컨설팅 및 농정평가 기능을 강화
 - 경영컨설팅과 연계, 현장밀착형 평가체제 구축
 - 시장성과 경영성과에 입각한 유형별 지원체계 강화
 - 유형별 성공·실패요인을 분석, 성공여건을 갖춘 곳 우선 지원
 - 지자체간 경쟁체제를 도입, 우수지자체에 지원 확대
 - 중앙정부의 기능을 기획·평가 중심으로 개편

- 농촌투융자 재원은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 년차별로 적정 배분
 - IMF 경제위기 극복시까지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효율화하고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Ⅲ. 농정조직·제도 및 추진체계 개혁

1. 농정조직 개혁

농정관련조직을 농업인에 대한 봉사위주로 축소 또는 통폐합

가. 농림행정조직 개편

- 농림조직은 지난 2월 1차 개편(123명 감축)에 이어 7월말까지 추가적인 조직개편으로 총인력 1,040명(11.7%) 감축
 - 농업통계사무소와 농산물검사소를 『농업정보농산물관리소』로 통합
 - 잠사곤충연구소를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편입하고, 임목육종연구소를 임업연구원에 통합
- 축산물가공업무 이관에 대응,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
 - 조직·인력증원없이 축산물 생산·유통·위생 전과정에 대한 관리체제 정비
- 중앙정부의 기능을 기획·조정·평가 중심으로 개편
 - 중앙의 정책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복수직렬 확대 등 직렬제 완화 추진
 - 종자보급, 수입농산물검사 등 집행업무는 지자체나 민간에 위임·위탁
 - 각종위원회 활동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등 정비추진

나. 농림분야 정부투자기관 개혁 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지원 전담기구로 개편

- 물류센터, 화훼공판장, 직판장 등 농협 또는 민간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이양
- 농수산물의 국영무역, 구매비축·방출 등 물가안정 사업과 수출정보·시장개척 등 공익적 업무만 전담
- 인력은 '97말 기준 751명에서 530명으로 30% 감축
 - ※ 1차 120명 감축(5.22), 2차 101명 감축(12월말), 기능이양시 추가감축 고려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3개 기관을 통폐합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로 발족

< 1단계로 3개 기관별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우선 실시 >

-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구조조정은 '99. 10월 까지 완료
-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자체구조조정과 함께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는 25개 농조 우선 합병 추진
 - 합병명령후 1년이 경과하도록 불이행하는 조합은 해산명령토록 하고 나머지 조합은 인력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 추진
 - 직원 1인당 관리면적을 상향조정하여 인력감축 확대

< 2단계로 3개기관을 통합, 가칭 『농업기반공사』 신설 >

- 농진공, 농조, 농조연 3개기관 해체후 별도 기관 조기 신설
- 3개기관의 중복조직을 정비하여 인력 추가 감축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경지정리,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추진 전담조직으로 육성

<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

- 농업생산기반 관련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
 - 농번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조와 농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진공의 통합으로 조직·인력의 효율성 배가
- 통합에 따른 경비절감 정도에 따라 농조조합비 감면 적극 추진
- 농업용수의 과학적 관리와 수질개선을 통해 수질오염문제 해결

2. 협동조합 개혁

가. 중앙회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사업부문별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유통·판매사업 중점 강화

□ 중앙회조직 구조조정 에 대해 3개 개편방안 제시

- ① 현행체제에서 독립사업부제 강화 방안(전문경영인 체제)
 - 실질적으로 부회장 중심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 확립
 - 회장은 총괄대표권을 갖고, 지도·관리부문 및 농정활동업무를 담당
- ② 기능별 분리·통합 방안
 - 기존의 각 중앙회는 경제사업 전문연합회 체제로 전환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농축임삼협중앙회』를 설치
 - 각 연합회는 농산물 유통, 자재공급 등 경제사업만을 담당
 - 신설 『농축임삼협중앙회』는 협동조합간 업무조정, 교육·지도·감독 및 농정활동 등을 수행
 - 회원조합과 각연합회가 공동출자한 『협동조합은행』을 별도 설립
- ③ 현행 각 중앙회를 1개 법인체로 통합하는 방안
 - 1개 법인하에서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여 실시

□ 신용사업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사업부문은 농산물의 유통·판매기능을 중점 강화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 지속 적자사업, 정부지원 과다의존사업 등은 사업중단, 민간매각, 자회사 전환 등 과감하게 정리
- 시장개방, 대기업 유통업참여 등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나. 부실조합의 과감한 정비 및 조합의 합병 추진

지역 및 업종조합의 합병 촉진 및 경영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 각 중앙회별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경영평가단을 구성, 재무구조 등을 기준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명령·합병권고·인가취소 등을 추진
 - 자본잠식조합, 2년이상 적자조합 등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
 - 부실원인 파악후 임원에 대한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시행
 - * 자본 전액 또는 일부잠식 조합('97말 현재)
 - 농협 : 1,332개중 25개(1.9%), 축협 : 193개중 63개소(32.6%)
 - * '97 적자조합 : 농협 39개소, 축협 41개소
- 경영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합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조합의 규모화·광역화 추진
 - 지역 및 업종조합 합병 기본방향
 - 지역농협은 원칙적으로 1시군 1조합 체제로 개편하고 전문조합은 광역화 추진
 - 지역축협은 한우전문조합 또는 종합축협의 기능을 담당하고 돼지·닭 등 업종축협도 광역화 유도
 - 이종조합간에 합병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 조합의 자율합병 유도
 - 합병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대해 1표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부가의결권제 도입
 - 흡수조합에 대한 합병촉진자금 및 세제지원방안 강구

다. 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권한에 상응한 경영책임 부여

- 중앙회의 경우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부회장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또는 각 기관별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 부회장 전문경영체제의 경우 부회장에게 소관 부문별로 독립적인 대표권과 소관 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 회원조합 상임이사경영제 도입을 확대하고 임원선출제도 개선
 - 일정규모이상 조합의 상임이사제 도입 의무화 및 자격요건 강화
 - 조합장 선출제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후보자격요건을 강화
 - 조합장 선출을 조합원의 직접선거, 대의원회 선출, 이사회 호선중 조합의 선택(정관 규정)에 따라 결정토록 함
 - 조합장 출마를 위한 조합원 자격 보유기간 강화 : (현행)2→5년
 - 회원조합의 경영평가실시를 의무화하고 평가가 나쁜 조합장의 연임 및 중앙회 임원진출을 제도적으로 금지

- 이사회 전문성 확보 및 임원의 책임 강화
 - 직능대표 이사제 및 원외이사제 도입
 -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현행 “고의·중과실”에서 “경과실(직무태만)” 까지 포함

-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현행 지도·감독체제를 보완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3. 농산물유통 개혁

가. 적정생산 및 산지유통 혁신

농산물 적정생산을 통한 가격안정과 산지유통시설 대폭 확충

□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프로그램 운영

- 부패변질이 쉬운 채소류·우유 등은 농소·상정이 참여하는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제 도입
 - 유통협약을 통해 농소·상정 공동으로 생산·출하·소비 자율 조절
 - 수급불안이 심한 경우 산지폐기·도태를 강제하는 유통명령제 실시
- 품목별 『채소류 생산출하조절 기획단』을 설치, 지역별·시기별 생산·출하물량의 계획적 조정으로 가격안정 유지
 - 예), 채소류가격이 경영비의 80%이하로 3일 이상 하락시에는 수매·시장격리 등 자동 개입
- 채소류 주산지의 농협 계약재배사업 대폭 확대

□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출하 확대

-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 포장·브랜드화하여 대량 출하
 - 채소·과일 포장센터, 쌀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산지에서부터의 물류혁신 기반 구축
- 공동판매·직거래 등 선진유통을 주도하는 산지유통시범농협 육성

□ 산지에서부터 정보화·포장화·기계화 기반 구축

- 농업전용 광역통신망 구축, 농업인(여성포함) 정보화교육 실시
- 도매시장내 포장농산물 우대 및 비포장농산물 반입 억제
- 파렛트·지게차 등 장비 보급으로 하역기계화를 제고

나. 공영 도매시장 개혁

거래제도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 정착

□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다양화하여 생산자의 선택기회 확대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도매상 제도도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개방하여 신설 또는 지방도매시장에 우선 적용
- 기존의 주요 중앙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수의매매품목을 대폭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개설자 판단에 따라 도매상제도 도입
- 경매의 경쟁촉진을 위해 중도매인이 참여하는 경매시장 범위확대
 - 타법인·타시장 경매참여 확대(거래보증절차 간소화), 법인간 공동 경매제 실시 등 실질적인 경쟁 활성화
- 농민단체의 도매시장 운영 참여 폭을 점차 확대

□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 마무리 및 기존시장의 시설 보완 본격 추진

- 2001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18개소 개장, 16개소 건설중)완료
- 기존시장의 하역기계화시설·저온저장고·주차장 등 시설확충 보완
- 전국 최대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도시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운영혁신방안 강구

□ 도매시장의 고비용구조를 타파하고 부조리 근절

-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를 인하하여 출하농민의 부담경감
- 도매시장 관리·운영체제를 일원화하는 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 거래규모가 작은 도매법인의 통폐합, 중도매인의 법인화·규모화 등 도매시장 조직의 구조조정 적극 추진
- 도매시장 운영자(법인포함)가 하역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유도
- 전자경매의 조기실시로 경매비리 소지 근절(서울, 대전 시범실시 중)

다. 직거래 제도화 및 소매유통 개선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가격 인하 선도

□ 다양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직거래 정착

- 대도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규모화(500평이상)된 상설 직거래장터 개설('98년 50개소)
- 중소도시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 개설
- 농·축·수·임협 등이 공동으로 주택단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미니직거래장터” 운영

□ 물류센타 조기 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정착

- 2001년까지 당초 예정된 12개소의 물류센타를 차질없이 건설
- 일부 공영도매시장의 물류센타로의 전환 지원(성남, 고양 등)
- 출하자와 소매점간 전자정보거래망(EDI) 연결로 자동 집배송

□ 대형할인점·체인점의 농산물 취급 확대 및 경쟁 촉진

- 포장센타, 물류센타 등 유통시설 및 직거래 자금 지원
- 중간대리점없이 공장에서 유통업체로 직공급하는 우유판매체계 구축
- 슈퍼·편의점·식당의 식육판매 취급을 지원하여 육류소매가격 경쟁 유도

□ 직거래 제도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자금을 특별 지원
- 인터넷에 『직거래마당』 개설 및 직거래장터 정보지 발간, Cyber Market 개설 등을 내실화

4. 농촌 투융자제도 개혁

가. 보조·융자 지원체계 개편 및 사후관리 강화

투융자 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체제 구축

□ 농업인, 생산자조직·단체에 대한 보조의 단계적 감축

- 보조는 원칙적으로 생산·유통기반시설 등 농업 SOC성격의 공공사업과 환경농업 목적사업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국한
 - 농업인 및 법인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1년까지 융자로 전환(종합자금제 시행과 연계)
 - 예) 농기계구입자금 보조

┌	전업농 : ('98) 10% → ('99) 10 → (2000) 융자전환
	법인체 : ('98) 20% → ('99) 10 → (2000) 융자전환
 - 환경농업 실천사업과 같이 외부효과가 큰 사업은 보조 유지
 - 생산자조직·단체의 보조도 감축 : 쌀종합처리장, 농축산물공판장 등
- 융자지원 조건도 사업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

□ 농업관련 기금의 정비

- 현행 농업관련 5개 기금을 성격과 지원대상이 서로 다른 농지관리 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3개 기금으로 개편
- 정부차원의 기금통합 방침과 조화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

□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으로 비리·부실발생 방지

- 과거 투융자사업중 일부는 농가 경험미숙과 업자농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비리·부실 발생
- 재발방지 및 비리척결 차원에서 정밀실태 조사후 의법 처리하고 향후 세무당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비리·부실사업 단속 강화

나.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으로 농업인의 편의와 자율성 확충

-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발전단계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적기에 적량을 종합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
 - 농업 정책금융 시스템을 시장·사람 중심으로 개편, 전문화

<자금지원방식 비교>

구 분	현행사업별 지원	종합 지원제도
○ 주 체	· 공급자 위주	· 수요자 중심
○ 지원대상	· 신청자의 개별사업	· 경영체의 종합사업계획서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농발심의회)	· 대출취급기관
○ 선정·지원시기	· 년 1회 일괄 선정·지원	· 수시 선정·지원
○ 사후관리	· 채권관리 중심	·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 '99년 시범사업 실시후 2001년 전면도입 추진

- 컨설팅체제 구축 및 경영혁신 등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 '99년 농·축협 시·군단위까지 컨설팅 전담요원 배치
- 수급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부터 우선 시행
 - 분야별·품목별로 자금지원 한도를 운용하되 탄력적으로 조정

□ 금융경색 방지 등 보완대책을 병행추진하여 조기정착 유도

- 대출취급기관내에 사업타당성 검토와 여신심사를 분리
 - 사업타당성 검토는 중립적 기능을 갖는 경영컨설팅팀에서 담당
- 정책자금의 신용대출한도 확대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정책자금 취급관련 면책기준 제정 검토
- 특정분야 자금집중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 등 수립

다. 지방농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탄력적인 투융자제도 도입·확충

□ 포괄 보조성격의 제도 확충

- 단기적으로는 소액 보조사업 및 실적 가산금제도 확대
 - 실적가산금 지원확대('98 : 250억원) 및 지방비 부담 완화
 -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및 기반조성사업중 자율 선택
- 중장기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세항 사업을 묶어 분야별로 항목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차등 보조제도의 단계적 도입

- '99년에 시범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도입 추진
 - 차등 또는 차감 보조율 적용 : 10%
-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대상사업 : 발기반정비, 경지정리, 토양개량

□ 농림사업 중 지원대상, 지원목적, 사업추진기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유사사업의 실질적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현재 99개 사업을 2001년까지 70개 수준으로 단순화
 - 사업수 : ('98) 99 → ('99) 89 → (2001) 70개
- 기 통합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성이 발휘되도록 운영 개선

□ 지자체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 경쟁체제 확립

- 매년 자치단체별 사업실적을 엄정히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부여

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농발심의회) 기능 재편

농발심의회 전문성과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단위 열린농정 실천

- 종합자금제 시행과 연계, 농발심의회 기능을 사업대상자 선정보다 시·군 농촌발전계획 수립과 농림사업의 사후 평가기능에 중점
 - 시·군 농촌발전계획이 중장기 지역 농촌 발전의 청사진으로 기능하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
 - 시·군 농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원칙적으로 계획에 없는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종합자금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대출기관이 책임을 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농발심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원자격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기능 수행
 - 농발심의회 농림사업 심사·평가를 정례화(년1회 이상)

- 농발심의회를 실무급위원으로 재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단위의 열린 농정을 실천
 - 농·축·임협의 전·상무 등 실무전문가, 한농연, 전농 등 농업인 단체의 지역대표, 품목별 농업인 조직 대표 등의 참여 확대
 - 사안별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방식으로 운영

- 시·군 농발심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농발심의회 운영비를 지방비로 확보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정한도내에서 Matching Fund 방식으로 지원
 - 시·군의 농발위원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확대·강화

5. 농업관련 규제 개혁

모든 농업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 농업관련 각종 진입규제·영업활동에 대한 제한·간섭 등을 시장경제원리 확충과 경쟁촉진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비
 - 기득이권의 축소·폐지와 농업인의 직·간접적 이익 증진
 - 규제시스템을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준·절차를 투명화·객관화하여 내용을 대폭 간소화

- 민간인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비방향 설정
 - 총 687건의 농업분야 규제중 52.1%인 358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결정
 - 개혁대상 358건중 88.8%인 318건은 '98년내에 정비 완료
 - ※ 주요 잔존규제 : 농산물 안전성 확보, 환경·소비자 보호, 우량농지 보전에 관한 사항 등

< 폐지 또는 완화되는 주요규제 >

- 양곡도정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양곡매매·가공업자에 대한 매도명령 폐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환지업무에 민간참여 허용
- 축산분야 부화·종축업의 등록·허가제를 폐지하고 정액등록처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 동물약품으로 분류, 생산·판매가 제한되는 사료첨가제중 아미노산(메치오닌, 라이신), 비타민 등을 제외하여 생산·판매 제한 해제

IV. 중점 추진시책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과 지속가능 농업의 육성

가. 주곡의 안정적 자급과 식량안보 강화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과 통일에 대비, 쌀자급과 식량안보체제 확립

□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우량농지 보전시책을 강화
 - 산업용 등 비농업용 토지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토록 유도
 - 부담금 면제를 위한 준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검토 : 70 → 50%
 - 진흥지역내 행위제한 강화 및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단가 현실화
 - 폐염전 등 유휴토지의 농지개발 추진과 받기반 정비 확대
- 다수확 품종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
 - 고품질 다수성(500kg/10a)품종 보급확대 : ('97) 34 → (2004) 50종
- 기계화·규모화 및 생산기반정비 지속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

□ 민간유통 활성화와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쌀유통 혁신

- 적정수준의 쌀값 계절진폭 허용
-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계열화하여 품종 통일과 브랜드 판매를 촉진, 『얼굴있는 쌀』 유통체제 강화
 - 미곡종합처리장을 민간 쌀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건조 저장시설과 운영자금 지원 확대
- 양곡도매시장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양곡유통거래소』로 전환 검토
 - 산지 생산·유통업체, 소비지 유통업체, 대형 실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선물시장 성격의 『양곡유통거래소』 설립 추진

□ WTO 규정 이행에 따라 수매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직접지불제도 확충

- WTO 규정에 의해 양곡수매에 따른 총 보조상당액(AMS)을 매년 일정 수준 감축 불가피
 - 현행 수매제도를 계속 유지시 2002~3년 이후에는 농가소득 지지와 적정 비축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 예상
- 현행 추곡수매중 농협 차액수매를 시장기능이 중심이 되는 수매 제도로 단계적 전환
 - 쌀종합처리장 등 민간업체가 농가와 용자가격, 물량 등을 계약하여 수매하고 가공·판매후 정산하는 용자수매방식 도입 추진
 - '99년 시범사업을 실시,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 검토
- 2000년 이후 정부추곡수매 감축에 상응하는 쌀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도의 점진적 도입 방안 검토

□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에 대응, 식량안보체제 확립

- 수매제도 개편과 연계, 식량안보용 쌀 비축제도 도입
 - 최저비축량 설정 운영 : 연간 소비량의 10% 수준인 350만석 내외
- 보리, 밀, 콩 등 전통 친환경 곡물의 소비 및 생산기반 확충
 - 보리 : 고품질 보급 등 소비확대 추진('97 : 1.7kg/1인당 → 2004 : 3)
 - 밀 : 우리밀살리기운동은 민간시민단체가 계속 담당하되 사업은 정부지원하에 농협에 이관
 - 콩 : 두부, 콩나물 등 식용콩 자급율제고 대책을 수립 시행
- 국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서류생산 확대(비상식량활용가능)
 - 감 자 : 인공씨감자 기술보급·실용화 촉진과 수출산업으로 육성
 - 고구마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 적극 육성, 수요 확충
- 민간의 해외 선물시장 참여촉진 등 안정적 곡물도입체제 강화

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생산성 향상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고품질농산물 공급

□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영농체제를 지역단위로 구축

- 친환경농업 시범마을(IPNM)과 환경농업지구 조성 추진
 - 병해충종합방제(IPM)와 작물양분종합관리(INM)를 실천하는 시범 지역을 들녘단위로 지정하여 농약·화학비료 사용 절감
 -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일정지역을 환경농업지구로 지정, 마을정비와 각종 친환경농업을 종합지원하는 체제 구축
- 친환경농업자재 및 기술의 개발·보급 확대
 - 완효성비료, 씩는 비닐, 미생물·천적·불임숫나방, 해충박멸전자망 등
- 가축분뇨 자원화사업(퇴비생산)과 토양개량사업을 연계추진
 - 생명의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톱밥 생산·공급 확대
 - 토양개량제 공급주기 단축(6→4년) 및 가축퇴비의 토양개량제 공급
- 농림부, 농진청, 농·축·임·삼협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 가축퇴비 등 친환경농업 자재의 수요·공급 연계 등의 기능 수행
- 축산분야의 유기농업(유기축산) 확산과 유기가공식품 생산 확대
- 농약빈병, 폐비닐 등 폐영농자재의 회수·수거체계 강화

□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 '99년 제1단계로 환경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 희망농가와 전국의 기존 유기농·저투입 농가에 대해 실시
 - 환경규제지역 : 79,019ha, 57천여 농가, 유기·저투입농 : 7,314ha, 9천여 농가
 - 저투입농법과 일반농법의 쌀소득차이를 기준으로 지불금액 결정
- 2000년이후 2단계로 전국 단위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 환경농산물 유통차별화로 소비기반 확충

- 현행 품질인증과 차별화된 별도의 환경농산물 표시제 도입
 - 유기농, 무농약 등 재배방식별 색깔을 구분 표시
 - 환경농산물 생산단체의 자율표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사후관리 강화
- 환경농산물 직거래 등 차별화된 유통경로 확산
 - 포장·디자인 개발 등 상품성 향상과 브랜드화 우선 지원
 - 소비자협동조합 등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판매망 확충
 - 백화점 등의 유기농산물 판매장 확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WGF : Winter season Green Field) 운동 지원

- 자운영, 호밀, 이탈리아안 라이그라스 등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배를 활성화하여 조사료생산 증대, 경관유지, 지력증진, 표토유실방지, 관광자원화 등의 다목적 효과 도모
 - ※ 자운영 재배시 쌀 5% 증산과 질소비료 50% 절감 가능
- 원칙적으로 농민과 민간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추진하되 종자대 수준(ha당 100천원)을 지원하여 재배면적 확산 촉진
 - 녹비작물 재배면적에 대한 직접지불제 형태의 장려금 도입 검토

□ 자원절약형·부존자원이용형 농업경영 확산

- 볏짚의 사료화, 담리작 사료작물재배 확대, 부실초지 관리강화 등 부존사료자원 이용을 촉진, 사료 수입비용 절감 및 조사료 이용을 제고
 -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는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개발·보급 확대
- 남은 음식물 사료화, 성장단계별 사료구분 급여방식 등 사료절감 기술 개발·보급
- 연탄·왕겨·폐목·농산 부산물 등 부존자원 활용 확대 및 에너지 절감형 축사·온실·주택 모델 개발·보급 등 추진

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충과 경제적 가치 증진

□ 산림의 환경·휴양기능 확충

- 참나무 등 함수기능이 높은 수종 조림과 사방댐 설치로 산림의 녹색댐 기능강화 : (현재) 180 → (목표) 237억톤
 - 5대강유역 산림(116만ha) 집중관리로 수질개선
- 자연친화적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휴양문화의 정착
 - 경관·도시와의 근접성 등 입지에 맞는 자연휴양림·숲속수련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 조성
 - 건전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휴양공간별 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

□ 산림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체계 확립

- 야생조수 보호구역 확대 등 야생조수 보호·관리강화
 - 도·국유림관리청 단위로 야생동물관찰원 조성(2004년까지 14개소)
- 희귀·특산식물 등 자생식물 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 천연보호림 지정 확대 : ('97) 11 → (2004년까지) 25천ha

□ 자원가치가 낮은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

- 『숲가꾸기사업』과 연계, 녹화된 산림에 대한 대대적 육림사업 전개
- 지역특성과 산주의 희망을 반영하여 유망 소득수종 조림 확대
- 산불을 자연재해로 간주, 재해보상 방안강구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 국내산 임산물 가공·이용 촉진

- 권역별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지원 : (현행) 1 → 3개소
- 목탄, 목초액, 톱밥 양산체제 구축으로 환경농업 지원
- 집성재·보드류 등의 생산을 적극 지원, 목재 수입대체 및 수출 확대

2. 생산·유통·품질·안전성중심의 총체적 경쟁력 제고

가. 경영혁신을 선도할 경쟁력있는 경영주체의 육성

1) 가족농 육성체계 정립 및 지원확대

□ 전업농으로 발전을 목표로 가족농의 전문화·규모화를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 농업인후계자 지원을 창업지원 방식으로 전환, 지원 강화
 - 경영개선 목적외에 농대·농고졸업생, U-Turn농가 등 창업자 지원
 - 발전계획서에 의한 자금지원과 병행, 기술컨설팅과 교육확대
 -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3~4년차에 일정한도 내에서 보완적 투자를 지원
- 경영능력·기술수준 등을 평가하여 전업농 육성대상자를 선정, 규모화·전문화 적극 지원
 - 2004년까지 15만호 전업농 육성(쌀 10, 축산 2, 원예 3)
 - 후계자에게 가산점 등 우선순위를 부여, 단계별 인력육성체계 강화
 - 전업농규모 산정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상위 30%의 평균소득』에서 「자영업자 평균소득」으로 조정

□ 전업농 단계로 발전이 미흡한 다수의 가족농을 중심으로 협동화(협동생산·공동출하)를 유도, 규모의 경영 및 소득안정 도모

- 가족농의 특성을 살린 유기농 등 친환경농으로 지원 육성
- 쌀종합처리장 중심의 벼 계약재배 등 협동체계 강화
-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가축계열화 및 경종 복합농 육성
 -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을 계열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과수·원예 등은 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운영 활성화
 - 작목반 단위의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방안모색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강구

2) 법인경영체 제도개선 및 내실화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경영체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 내실화방안과 유형별 정리대책 수립·추진
 - 회생가능법인은 지속적인 컨설팅과 자금지원으로 경영내실화
 - 회생불능법인은 인수, 합병 등 유형별 정리 방안 강구
- 법인경영체 설립·운영요건 개선과 지원조건 대폭 강화
 - 영농조합법인 자본금 규모 설정 등으로 무분별한 설립 방지
 -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비농업인의 출자제한 완화
 - 정책자금 지원시 재무제표 제출 및 전문컨설팅기관 심의 제도화

3) 전업농과 법인경영체 중심으로 농업경영 혁신

- 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영·기술컨설팅체계 구축
 - 농·축협은 종합자금제와 연계, 독립적 경영컨설팅 체계 구축
 - 농촌진흥청의 지도기능을 컨설팅 서비스 위주로 전환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식품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특성화대학 등 기관별로 컨설팅기능 전문화
 - 민간 컨설팅업체의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 농업인 교육·훈련체계 개편 및 교육 확대
 - 농업공무원교육원을 활용, 농업인 지도자, 농발위원, 농민단체 간부 등에 대한 정책·경영교육 과정 개설
 - 전문교육은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기관 등에 Outsourcing
 - 『농·소·정』 협력 차원의 교육지원 확대
- 경영장부 기장 지도 및 지원 강화
 - 경영장부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농업인의 이용 확대
 - 자금지원과 연계, 장부기장 전업농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나. 생산구조개선사업을 성과지향적으로 효율화

- 매매위주의 영농규모화사업을 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개편
 - 소유농지의 일부 부분임대차를 허용하는 등 임대차사업 활성화
 -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지원단가 인상 및 부분이양 허용
-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고 효율적 개편
 - 각종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종합개발방식으로 추진
 - 경지정리는 2004년까지 진흥지역내 논에 대해서 마무리
 - 경사지 등 조건불리지역은 간이개발방식 도입으로 예산절감
 -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준공예정지구 집중투자로 사업효과 조기거양
 - 사업계획변경 제한과 설계·시공 동시입찰제(Turn-Key방식) 도입
 - 농업인이 사업시행주체가 되는 생산기반정비사업 시범 도입 추진
 - 간이경지정리·개보수 등 소규모 사업부터 도입,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기계화사업은 이용을 제고와 사후관리에 역점
 - 공급지원을 미작중심에서 밭작물 및 축산분야 기계화로 전환
 - 광역 농기계수리센터 확대 설치 : ('98) 7 → (2004까지) 17개소
- 유리온실 등 시설 설치사업은 수출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설치 유도
 - 일정규모이상 사업은 전문기관의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의무화
 -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선자금과 경영자금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 3년내 작목전환규제 해제 및 부실시설 제3자 인수 원활화방안 마련
- 임도시공은 환경친화형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대폭 강화
 - 절토·성토면 녹화피복, 석축·옹벽 등 구조물공사 확대 등
 - 사후관리 책임기관 명시, 임도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종합관리체계 확립

다. 기술혁신과 정보화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1) 농업기술혁신 추진체계를 수요자 지향적으로 개편

기술연구비를 2004년까지 농업 GDP의 2% 수준으로 확대

□ 농업기술개발 종합조정체계 확립

- 기술개발·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정책과』 독립 설치
 - 농업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기술개발 network를 구축, 기관간 중복개발 방지 및 이용도 제고
-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에 민간기술자들의 참여확대로 현장성 강화
 - 분야별·품목별 기술개발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등

□ 특정과제 연구사업을 첨단기술과제에서 현장애로과제 중심으로 전환, 수요자 지향성 강화

- 현장애로과제는 기술·경영 컨설팅 체제구축과 연계하여 생산현장·유통 및 수출현장에서 컨설턴트가 발굴한 애로기술 중심으로 선정
-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적 조정으로 내실화
 - 연구기간 단축 : 첨단기술과제 5→3년, 현장애로과제 3→2년
 - 연구비한도 : 첨단기술과제 10→5억원, 현장애로과제 3→2억원

□ 개발기술의 실용화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연구성과 평가결과, 산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는 별도과제 선정 절차없이 실용화 연구비를 추가지원하고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각종 박람회, 전시회를 통한 개발제품 출품 확대
-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전환,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

□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제정으로 기술개발 의욕 고취

- 연구개발 실적, 농민 현장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인사고과 반영

2) 농업경영·유통효율화를 뒷받침하는 미래지향적 정보화

□ 정보이용자 중심의 농업정보종합서비스체계 확립

- 농림수산정보센타 중심으로 기관별 특화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종합 제공
 - 품목코드의 표준화 등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 농업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보화지원 담당관실』을 『경영·유통정보화담당관실』로 개편
- 읍·면 단위까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확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활성화

□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이용하는 유통정보 체계 강화

- 출하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전략정보시스템을 구축
 - 전자경매제와 연계, 유통정보의 실시간 분산체계 구축
 - 공영도매시장을 통합 연결하는 종합유통정보체계 구축
- 인터넷 사이버마켓을 활용한 전자직거래장터 개설

□ 품목선택, 기술지도, 경영혁신 등 농업경영을 뒷받침하는 정보화 추진으로 생산성 제고

- 농업D/B화 종합계획을 수립, 농업인이 원하는 D/B 우선 구축
- 경영기록·분석평가를 위한 S/W 이용확대로 경영혁신 유도
 -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PC조작 등 농업정보 활용교육과 정보 이용기회 확대

- 정책자금 수혜농가 중심으로 정보화교육 실시
 - 15만 전업농을 중심으로 PC조작 등 정보화 교육 조기 실시
- 간행물, FAX, 전문지, CD-ROM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활성화 하고 장기적으로 인터넷TV, 케이블TV 등 정보분산채널 다양화 추진

라. 농업관련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농업인의 참여 확대

□ 농기계, 농약·비료, 종자·종묘, 사료·동물약품 등 농업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촉진

- 시장제한 또는 규제적 요소를 철폐, 전문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 제고 도모
- 생산자단체의 기자재산업 참여 확대로 농업인의 시장력 강화

□ 국내농업과 연관성이 큰 농산물 가공업의 체계적 육성

- 신규공장 설립위주 지원에서 경영혁신·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 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개발연구원에 경영·기술지원센터 설치
 - 제품 다각화·사업품목 조정·품질개선 등 적극 유도
- 현대적 생활패턴에 부응하는 편의식 등 신기술 개발·보급과 유망분야의 신규 창업 촉진

□ 농업인의 농업관련산업 참여확대로 『범위의 경제』 실현

- 포장센터, 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지원
- 김치류·장류 등 자본규모와 위험이 비교적 적은 분야 중심으로 농업인의 가공산업 참여 확대
- 품목적 특화나 지역적 유리성이 있을 경우 농업인이 외식산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제공 등의 지원
 - 지역특화식품이나 전통음식 중심의 레스토랑 등 외식센터 운영

□ 농업관련식품(Agri-Food) 산업의 육성 지원체계 확립

-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식품체계(food system)의 정립으로 소비자 지향적 생산·유통체계 강화
- 『가공산업과』를 『식품산업육성과』로 개편하여 식품산업정책을 총괄
- 『식품산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

마. 품질 고급화·안전성제고 등 소비자 지향적 정책 확충

□ 농산물 품질인증 및 차별화 시책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 농산물 품질인증 품목의 연차적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품질인증 대상품목 : ('98) 90 → (2004) 120개
 - 도매시장의 품질관리실 설치 확대 및 반품교환제 실시
- 원산지표시 단속대상 품목 확대와 명예감시원제도 적극 활용
-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지역특산물 보호 강화 및 차별화 촉진
- 『유통관리과』를 『유통소비과』로 개편, 소비자정책 기능 강화

□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도체계 및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 재배단계, 출하 등 산지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검사 강화
 - 대상 및 건수 : ('98) 58품목, 5천건 → (2004) 100품목, 10천건
 - 안전기준치 초과 농산물은 원인분석 및 개선지도 등 조치
-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 평가기준, 품종등록제도, 표시방법 등을 신규 설정
 - 호르몬사용식품의 검사대상항목 확대 및 검사장비 보강
-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축산물 위생검사체계 확립
 -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본격 도입
 - 수입농산물 검역시설 확충 및 검역의 정밀화·과학화 추진
- 생산자단체 등에 소비자상담실 및 고발센터 설치·운영

□ 우리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안전성기준 국제화 적극 지원

- 고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기준을 Codex에 반영, 국제화
- 농산가공식품 생산시스템의 『ISO 9000 시리즈』 인증 적극 장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품질차별화 제도를 정비

- 안전성조사,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지리적표시제 등의 시행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규정

3. 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확대의 교두보로 삼고, 농협·축협·임협·삼협·한냉을 수출시장개척에 전면 전진배치 ◇

□ 수출시장에 맞는 규격품 생산지도 강화와 규모화 촉진

- 주요 시장별 수출가능상품의 규격, 안전성 기준, 검역절차, 시장선호도 등을 심층 분석 제공하고 생산지도 강화
 - 품목별로 KOTRA, KATIC 등을 활용한 해외시장 주문정보 수집
 - 농촌지도소, 특성화대학, 수출업체 등으로 품목별 수출재배 기술팀을 구성, 규격품 생산지도 강화
- 수출단지조성을 확대하고 수출업체와의 계약생산 체계 확립
 - 과수·화훼류 수출단지 확대 : ('97) 32 → (2004) 50개소
 - 돼지고기는 품질개선단지(40개) 중심으로 계약생산지원 확대
-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의 수출생산체제로의 전환 적극 지원
 - 공동수출협의회 구성 등 조직화 유도, 경영자금과 운송비 지원 확대 등

□ 해외 대형 슈퍼마켓 체인 등과의 수출직거래체제 개척 등 시장별·품목별 시장개척 활동 강화

- 감귤·화훼·돼지고기 등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 중심으로 해외 대형유통업체와의 사전 가격협상 등을 통한 수출직거래 체제 구축
 - 대형 유통업체 수출품목의 특별판촉행사 및 광고비 지원
 - 현지 유통업체를 에이전트로 지정, 수출거점 기지로 활용
-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와 연계, (가칭) 『국제농산물식품박람회』 (Agri-Foodex Korea) 개최
 - 해외유력 바이어 유치, 국내산 농산물 홍보, 수출상담 및 계약 추진
- 박람회 참가 등 현지 시장감각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수출금융제도를 간편화하고 지원규모 대폭 확대

- 수출업체 중심의 종합수출금융 지원체계 확립
 - 현재 품목별로 각기 지원되는 수매자금과 유통자금을 수출업체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
 - 수출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업체의 담보 설정비율 차등화 등 인센티브 부여
- 농산물 수출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보상비율 확대 : 60→70%
 - 보험금 지급시한 단축 : 4~5 → 3개월

□ 농산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대폭 강화

- 20개 수출전략품목별 현장애로 타개와 기술지도 강화
 - 수출용 오이·토마토·화훼구근 등 개발·보급, 대미 신고배 수출단지 확대, 대일본 신선채소·돼지고기의 국내 현지검역 등
- 수출품 포장자재비·운송비 등 WTO상 허용가능한 지원 확대
 - 채소류·화훼류 지원단가 상향조정, 돼지고기 등의 신규지원 추진
- 장관주재의 『농산물 무역확대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농산물 수출탑』 시상제도를 별도로 마련, 수출농업인 사기 진작
- 수출애로 상담실 운영활성화와 수출검역·통관·선적 등을 동시에 처리하는 EDI 지원체계 구축

□ 농산물무역진흥센터 설립과 연계, 수출관련 One Stop Service 제공

- 농산물 수출 거점기로서 농업관련 기관·수출업체들이 입주, 수출농가·바이어에게 수출종합 서비스 제공

4. 농업통상협력 강화와 통일농정 적극 전개

가. WTO 차기협상 대응체제 구축

- 민·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협상력 강화

- 농산물협상대책단 운영 활성화 등 민·관 공동대응체제 구축
 - 민·관·학 공동으로 구성된 『통상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각계의 의견수렴 등 철저 대비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반』 과 『협상추진반』 을 운영
 - 농산물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주무부서(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사전 정부입장 조율 및 공동대응 체제 구축
 - 각종 국제기구 통상협상 담당자간의 정기적인 협의기구 설치 추진

- 달라진 경제여건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할 분야, 양허수준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철저 대비
 - 일본의 '99년말 쌀협상 추진 등에 대응한 단계별 협상전략 수립

- FAO, OECD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사전대응 강화와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긴밀한 사전 협조체제 구축
 - FAO 세계식량정상회의, OECD 농업각료회의 선언문에 포함된 식량안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적극 활용
 - EU, 일본, 스위스 등 입장이 같은 나라와 지속적인 유대 강화

- 농산물 수출확대 시책과 연계, 공세적인 통상외교 강화
 - 20개 수출전략 품목의 수출가능 대상국 검역, 관세제도 점검과 협정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및 불공정 무역관행 발굴 시정

나. 실질적 남북협력 확대로 통일농정 본격 전개

□ 통일농정에 대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국제협력 강화

- 농림부 주도하에 농업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남북농업협력 추진 협의회』 운영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활성화와 민간교류 협력사업 협의
- 북한농업 부흥을 위해 이해관계국들이 참여하는 『KADO』 (Korean-Peninsula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설립 검토
 - 북한의 농지복구, 수리개발, 산림녹화, 농장체계 개편, 농업경영 방식의 시장경제화 등 중점 지원

□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생산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교류 협력 확대

-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및 기술지원 확대
- 농산물 수급안정 차원에서 대북 농산물 교역과 지원

□ 남북 관계개선 단계에 따라 농업분야 공동개발·합작투자 추진

- 남북한 작부체계(남한 - 논, 북한 - 밭)를 활용한 계약 재배
- 기술교류, 합영농장 운영, DMZ에서의 생태농업 공동개발 추진
-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인력을 결합, 해외농업 공동개발 추진
 - 예시 : 연해주, 시베리아 등

□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농업체제의 조화로운 통합방안 수립

- 북한지역 농업현황 파악과 직·간접 조사사업 수행
- 농촌경제연구원에 설치된 『북한농업연구센터』를 활용, 통일대비 농업정책 종합기획 기능 수행
 - 북한 농업생산체제, 농지·산지제도, 시장·유통정책, 산림황폐 실태 및 야생동식물 자원 등에 대한 사전연구와 실천계획 마련

5. 21세기 선진농촌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 확충

농촌을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기반을 갖춘 정주공간으로 개발

가. 농촌을 1·2·3차 복합산업 공간화하여 농외소득원 확충

□ 농공단지 운영 내실화

- 단지조성비 지원시 우대하는 농어촌 부존자원 활용업체의 범위 확대
 - 농산물, 석재 등외에 영농자재생산 및 농수산물유통산업 등도 포함
-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지원 확대

□ 도시·농촌 교류사업의 활성화

- 도시생활자의 농업·농촌 체험 등을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
 - 체험농원, 건강휴양농원, 주말농원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농원 개발
- 도시·농촌 교류사업의 기획, 이벤트 개최, 관계자 교육사업 등 지원
 - 고향쿠폰권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농산물 오너제도, 자매도시 제휴 등
- 환경친화적인 근교농업을 육성하여 도·농교류 사업에 적극 활용

□ 농업 名品, 名人, 名所化 운동의 전국적 추진

- 농림축산물중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국 특산품과 가공식음료품을 “농업 名品”으로 지정
- 농림축산인증 과학기술수준이 탁월한 농업인을 선정하여 “농업 名人制” 실시
- 농촌의 역사·문화·환경·영농의 “名所”를 지정, 농촌관광상품 및 Eco, Green-tourism 개발

□ 산지 농산물 박람회 개최의 체계적 지원

- 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직거래장터로 활용
- 시·군단위 농업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추진협의회 결성

나. 농촌생활환경 개선

□ 생활환경 개선을 도·농 통합형 방식으로 추진

- 공공서비스 시설은 농촌중심도시를 대상으로 확충하고 지역 특성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주택·상수도 등 주거기능 개선에 중점
 - 배후 농촌지역과 중심도시간 도로교통체계 정비에 중점
- 일정규모 이상의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준하는 『마을개발 계획제도』를 도입하여 계획적인 정비 및 개발을 추진

□ 현행 면단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상권·생활권 중심으로 개편

- 향후 행정구역개편 등에 대비, 면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면적인 개발 계획보다는 생활권중심의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전환
 - 계획수립시부터 지역의 주민대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촌주택 모델의 개발·보급
- 농촌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마을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타부문 사업과의 연계강화, 종합정비

- 『농·산·어촌 마을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소득원 개발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연계, 지역종합개발 체계로 발전
- 산촌특성 및 개발여건에 따라 산림소득형, 휴양림연계형, 농림업복합형 등으로 산촌개발 유형을 다양화하고 종합 개발

□ 행락철 깨끗한 농촌지키기 운동 추진

- 행락철 도시민의 쓰레기 투기, 미풍양속 저해 등 농촌생활환경 훼손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대책 마련(입장료 부과, 출입금지 등)

다. 농업인 복지확충

□ 농촌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 농어촌 고교 졸업생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 확대방안 추진
 - 농고졸업자에 대한 동일계열 진학의 특례 확대 유도방안도 추진
- 농어촌 출신 도시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충
 - 전국 9개소에 1개소씩 건립완료(2000년)후 도별 1개소씩 추가건립 추진
- 시의 개발제한 구역내 중학교 의무교육 우선실시 추진
- 농촌 초등학교 유치원 병설운영,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등 추진

□ 농촌 의료여건 개선

- '98. 10월부터 전국 227개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모든 조합의 완전통합 추진
 - 농어촌지역 보험료 감면기준 마련 등 농업인 보험료 부담경감 대책강구
- 의료보험 통합과 진료권역 폐지에 따라 농촌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장비 지원 강화
 - 보건소와 진료소를 중심으로 시설장비 및 인력보강 지원

□ 농업인 연금제도 및 노인복지시책 강화

- 농업인부모를 위한 『효도연금저축』 개발 등 노령농업인 대책 강화
 - 저축가입자는 자녀가 되고 수혜자는 농촌의 부모로 하는 연금저축
 - 저축가입자에게는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 부여
- '98. 8 국민연금 확대적용시 농촌노인(60~65세) 특례가입 허용

□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강화 및 농촌복지지표 확충

- 농촌여성지원체계를 정비
 - 여성농업인 정책자문회의를 상설운영하고, 여성농업인 대화방 운영
- 농촌생활지표(농진청)를 농촌복지지표로 확대발전

6.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 안정시책 강화

가. IMF사태이후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조치한 사항

- 정책자금 금리인상 최소화 및 농업·축산 경영자금 확대 공급
 - 농특회계 등의 농업정책자금(총 11조 1,405억원)의 금리인상 요인 3.5%P중 2%P를 재정에서 흡수, 금리인상 최소화
 - 기금지원 정책자금 금리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97말기준 : 6조16백억원)
 - 농안기금(1조6,588억), 축발기금(2조2,850억), 농지기금(2조336억) 등
 - 저리의 농업·축산 경영자금 대폭 확대 공급
 - ('97) 3조 8,200억원 → ('98) 4조 4,700억원(6,500억원 증)

- 농업정책자금 및 농·축협외 상호금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 시설원예(45억원), 축산정책자금(5,707억원) 3~9개월 상환 연장
 - 농·축협에서 금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6조원) 상환을 6~12개월 연기·또는 대환 조치(이자납부시)

- 외환위기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축산부문 특별 지원
 - 수출업체, 가축계열업체 등에 긴급운영자금 1,288억원 지원
 - 쇠고기 공급감축을 위해 수매방식을 한우 큰 수소에서 가임암소와 중수소 수매로 전환하고 수매육 방출 중단
 - '97. 1월부터 5,370억원을 투입, 190천두 소수매 실시('98. 7.25 현재)
 - 농가의 추석·설날 등 한시적 자가도축 허용 및 도축세 면제 추진
 - 우유 수급안정을 위한 젖소 송아지 수매 및 저능력우 자살도태 추진
 - 학교우유급식 확대와 분유 및 젖소의 북한 지원방안 강구

- 붉은곰팡이병으로 피해를 입은 보리생산 농가에 대한 특별 지원

◇ 농업인을 위한 긴급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획기적인 부채경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

나. 농가부채 현황 파악과 합리적인 경감대책 강구

- 농업인·학계·정부 공동으로 『농가부채협의회』 구성·운영
 - 부채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대책 강구
- 농업인의 고금리 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지원, 경영활성화 촉진
 - '99년도 예산에 부채경감 경영자금 1조원을 신규 확보 추진 (재정 5,000, 농협 4,000, 축협 1,000억원)

다. 농업재해지원 강화와 신용보증 확대

- 농업재해지원제도의 개선
 - 재해복구지원 기준단가 현실화 및 지원범위 확대 추진
 - 농약대, 대파대, 농업시설복구비 등의 지원단가 상향 조정
 - 2ha이상 농가도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 확대
 - 시범사업중인 가축공제사업을 '99년부터 본격시행(공제료 50% 국고보조)
 - 농업인 재해공제 제도 확대
 - 1,2급 상해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특약상품 개발(공제료 50% 국고보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
 - IMF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신용제공이 경색되어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농신보의 신용보증 확대 필요
 - 농신보의 보증대상을 영농자재의 외상구입 등 경제사업 채권과 교육비·의료비 등의 생활복지자금으로 확대
 - 매년 1조원 이상의 신규 신용보증 발생 효과

V. 농정개혁 추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

-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 21C 선진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
 - 『농업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합하여 21세기 농업·농촌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 농업분야 53개 개별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기능
 - 『농업·농촌발전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
 - 식량안보, 친환경농업, 종합자금제도, 직접지불제도, 가족농육성, 직거래 정보화, 통일대비농정, WTO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

- 유통개혁 등 제도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개정, 유통개혁을 뒷받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고품질·안전성 제고시책 강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 농산물 직거래 제도화 및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관련법』들을 개정, 협동조합 개혁을 뒷받침
 - 『농업기반공사법(가칭)』을 제정, 농업생산기반 정비관련 조직(농지 개량조합,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통폐합을 제도화
 - 『축산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폭 개정

- 제도개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 『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을 제정, 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대통령령)을 개정,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등을 보완하여 WTO 이행특별법에서 규정한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VI. 농업·농촌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방향

□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가족농 육성, 유통·품질·안전성 중심의 총체적 경쟁력제고, 수출확대, 농촌개발 등에 중점 지원

- 쌀 생산기반 확충과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 농업용수개발, RPC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 쌀브랜드화 촉진 등
- 친환경농업 육성과 자원절약·부존자원 활용 증대
 - 흙살리기, IPM·INM 확산, 환경농업직불제, 가족분노자원화 등
- 생명의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의 환경보전 기능 확충
- 가족농의 체계적 육성과 경영혁신 및 경영안정
 -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협동화, 경영컨설팅 및 교육, 경영자금 등
- 농산물 직거래 등 신유통체계 확립과 수출 확대
 - 직거래장터, 품질인증, 안전성검사, 유통정보화 등
 - 해외시장정보수집, 수출조직화·규모화, 판촉활동, 수출금융 등
- 도·농교류 증진과 농촌개발 및 농업인 복지 증진
 - 다양한 교류사업, 농촌마을재개발, 농촌 의료·보험·교육 등
- 농업회의소 설립과 농·소·정 협력을 위한 교육·연구 확대

□ 공급과잉 또는 부실 우려 사업, 에너지 과소비형 시설, 비환경 친화적 사업,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은 과감히 중단 또는 축소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종합처리장, 간이집하장 등의 신규설치 지원은 중단
-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 농기계구입자금,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 대구획경지정리, 축사시설, 에너지과소비형 유리온실 설치 등은 축소 조정

<참 고>

농업관련 주요지표 전망

구 분	'95	2000	2004
○ 농림업 및 관련산업 부가가치(10억원) (GDP대비 비중, %)	53,149 (15.1)	60,745 (14.3)	70,345 (13.4)
- 농림업 부가가치 (GDP대비 비중, %)	20,570 (5.8)	21,354 (5.0)	21,554 (4.1)
- 농림업관련산업 부가가치	32,579	39,391	48,791
○ 농림축산물 수출(억불)	12	23	50
○ 농어촌인구(만명) (총인구대비, %)	957 (21.3)	858 (18.3)	839 (17.4)
○ 농가인구(만명) (총인구 대비, %)	485 (10.9)	442 (9.4)	350 (7.3)
- 농가호수 (만호)	150	140	110
○ 전업농(명) (쌀 전업농)	16,375 (11,435)	95,000 (60,000)	150,000 (100,000)
○ 농가소득 (만원)	2,180	2,337	2,950
- 농외소득 (만원)	693	859	1,062
○ 농지면적 (만 ha) (논면적)	198 (120)	188 (115)	180 (110)
- 호당 평균 경지면적 (ha)	1.34	1.34	1.64
○ 쌀 생산량 (만석)	3,260	3,257	3,067
- 쌀 자급률(%)	92.2	98.0	98.5
○ 농어촌도로포장율(%)	29	38	51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9	57	71
○ 의료인력 1인당 인구(명)	626	453	37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004년 농정지표 재점검』(농림부) 자료를 기초로 최근 경제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치임. (부가가치 및 소득은 '95 불변가격 기준임)

농산물유통개혁대책

여 백

목 차

I.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배경	53
II.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	58
III.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	60
1. 직거래제도화 등 유통경로 다원화	61
2. 공영도매시장 개혁	70
3. 산지유통 혁신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84
4. 농산물 물류 및 정보체계 개선	94
5.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체계 확립	102
【 축산물 유통개선 】	109
IV. 지원체계정비	116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농축산물 유통개혁 지표</div>	121

여 백

I.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배경

- ◇ 수차에 걸친 유통개선대책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거래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반적인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아직도 「고비용·저효율」 구조
 - '94-'97년간 유통부분에 2조 5천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생산자·소비자가 피부로 느낄만한 개선효과 미흡
 - ◇ 특히, 그동안의 유통개선대책이 관련제도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보다는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기본틀 속에서 시설확충에 치중한 결과, 급격한 유통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와 같은 공영도매시장 위주의 경직된 정책으로는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고효율·저비용」 유통구조를 실현하는데 한계
 - ◇ 또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선사업도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불가능
 - 영세한 영농구조체제하에서 농가소득지지와 생필품인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산물 유통 개혁은 시급한 과제
- ⇒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의 틀과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유통개혁을 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제고를 뒷받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1. 농산물 유통의 현황과 문제

가. 농산물 유통의 특성과 현황

-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구조적으로 유통비용의 과다발생 요인 내재
 - 농산물은 다수의 생산자로 부터 다수의 소비자까지 전달되어야 하므로 수집과 분산과정이 길고 복잡
 - 생산자 - (수집상) - 도매법인·중도매인 - (중간상) - 소매상 - 소비자
 - 또한, 농산물은 부패·변질이 쉬워 유통과정에서 감모나 폐기가 많이 발생하고, 부피가 크고 무거워 수송·보관·하역 등의 표준화·기계화가 어려움
 - 농산물 생산은 연도별 또는 계절적으로 등락이 심한데 비해 소비는 연중 고르게 이루어져 수급 불안요인이 상존

- 농산물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직·간접비용이 주요한 요인임

소비자 구입가(100%)		
생산자 수취비율(44%)	유통마진율(56%)	
	물류비 등 직접비 (18%)	간접비 및 이윤 (38%)

- 소비자 구매액중 농가수취비율 44%, 유통마진율 56%
 - 무·배추 등 일부품목의 농가수취가격이 20%, 유통마진이 80% 수준
 - ※ 고랭지배추 : 농가수취가 370원/포기, 소비자가 2,000원/포기
 - 농산물 유통마진(56%)중 수송·하역·상장수수료 등 직접비용이 18%이고, 이를 제외한 간접비 및 이윤은 38% 수준
- 특히, 높은 임대료, 인건비, 감모 때문에 유통마진의 절반이상이 출하·도매단계보다 소매단계에서 발생
- 단계별 유통마진 : 출하 14%, 도매 14%, 소매 28%
 - 산지가격하락 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

나. 그동안의 유통개선 노력

□ 생산자조직 육성과 산지유통시설 기반 확충

- 주산지 중심으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이 육성되고, 선별·포장·가공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이 양적으로 확충
 - 간이집하장 3,290개소, 포장센터 78개소, 산지가공공장 1,349개소 등
- 채소류를 제외한 과실류의 포장출하가 정착되고, 농산물 브랜드화가 진전
 - 시설채소·과실 포장출하율 95% 이상

□ 대규모 도매시설 투자 확대 및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물류센터·공판장 건설 확대
 - 공영도매시장 18개소 개장(16개소 건설중), 물류센터 2개소 개장(10개소 건설중), 공판장 90개소 개장(10개소 건설중)
- 농산물 유통의 주경로가 유사도매시장에서 점차 공영도매시장·공판장 등으로 전환 추세
-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경매 확대로 공정가격 형성에 기여

□ 우수농산물 차별화제도 도입 및 생산자단체의 소비자시장 참여 확대

-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제('91년), 안전성조사제도('96) 도입으로 국산농산물의 차별화 진전
- 생산자단체의 직판사업도 유통여건변화에 맞게 대형화 및 다양화함으로써 소매유통개선에 기여

다. 농산물 유통단계별 문제점

< 출하단계 >

-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가 부진하여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이 떨어지고, 규격출하 미흡·속박이 등으로 신용거래 한계
 - 농촌지역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시장출하 정보제공 체제 미흡
- 포장센터, 간이집하장, 가공공장 등 산지유통시설이 크게 늘어났으나 소비지 유통시설이나 판매망과의 연계체계 미흡으로 산지유통개선효과 미미

< 도매단계 >

- 공영도매시장이 확충되었으나 거래제도의 경직적 운영, 상윤리 실종,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영도매시장 개선시책의 실효성 저하
 - 전통적인 상거래 관습에 젖은 유통종사자의 이해 대립으로 유통개혁애로
- 농산물의 50%수준이 유통되는 유사시장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미흡

< 소매단계 >

- 소매유통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나 농산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미흡

< 물류단계 >

- 농산물의 포장규격·유통시설 및 장비의 표준화가 미흡하고, 파렛트 적재출하·하역기계화가 부진하며, 하역노조에 의한 하역 독점 등으로 농산물 물류비가 과다
- 예냉, 저온저장, 냉장수송, 저온경매 등 콜드체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감모가 발생하고, 고품질농산물 출하 곤란

2. 농산물 유통여건의 변화 전망

□ 유통경로·유통주체간의 상호 경쟁심화

- 막대한 자본과 선진경영기법을 갖춘 외국 신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대기업 유통참여로 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확대
- 싼값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직거래나 물류비 절감 촉진
- 농산물유통경로가 기존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직거래 등으로 다원화됨에 따라 유통경로간 경쟁 치열
- 공영시장 중심으로 신선농산물의 '대량거래단계에서 대형점·체인점 중심의 가공식품 및 브랜드화 농산물의 직출하단계로 발전
- 국내농산물과 외국농산물과의 품질 및 가격경쟁 치열

□ 소비패턴의 변화와 소매단계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 증대

- 소비의 고급화·다양화와 다품종 소량구입 패턴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증가
- 포장화·브랜드화 및 예냉처리·가공처리가 촉진
- 농산물거래와 가격형성의 중심이 도매시장에서 점차 대형화된 새로운 소매유통업체·가공업체로 전환

□ 수급안정, 유통개선 주체로서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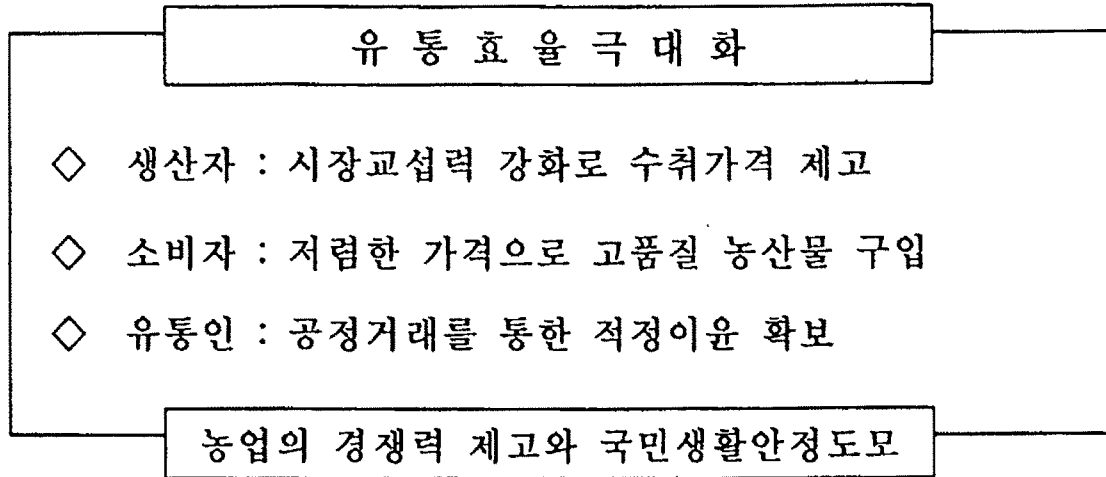
- 경쟁력있는 일부품목에 생산이 집중됨에 따라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품목별 생산자 조직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역할 중요
- WTO체제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정부의 가격지지 한계
-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확산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생산자의 질적 조직화와 소비자조직과 연계가 필요

□ 정보통신을 이용한 통명거래·전자거래 급속 확산

- 현재 농촌 정보인프라가 취약하나 초고속정보망 구축 및 PC 보급 확대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전자상거래(EC) 확산 전망

II.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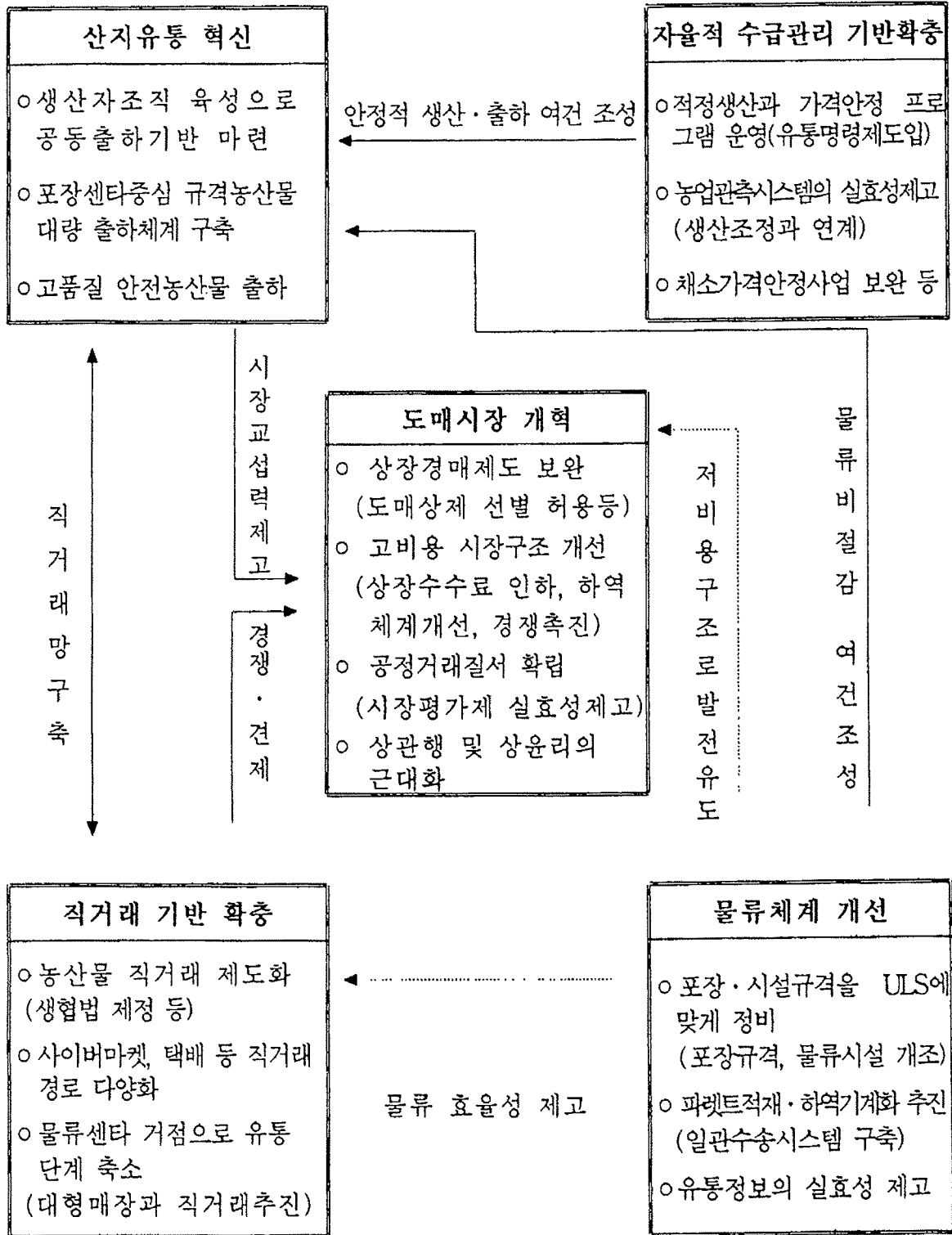
< 추진목표 >



< 추진방향 >

-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유통의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
- 확충된 유통시설을 바탕으로 유통경로 다양화, 도매시장 제도 개선 및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부문 개선에 중점
- 경쟁 제한요소를 최소화하고 민간업체의 유통참여 유도로 유통경로간, 유통주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전환
- 지역별, 품목별 여건에 따라 관련제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실효성을 제고
- 중앙정부는 각 유통주체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
- 각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농산물 유통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단체가 유통개혁에 전력 투구토록 체제개혁 독려

< 추진과제 >



Ⅲ.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

농산물유통개혁 12대 과제

제1부문 : 직거래제도화 등 유통경로 다양화

- 1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 2 물류센터 조기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형성
- 3 소매단계의 유통마진 절감 및 소비자정책 강화

제2부문 : 공영도매시장 개혁

- 4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 개선
- 5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유사시장의 체계적 관리
- 6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개선

제3부문 : 산지유통 혁신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7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혁신
- 8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
- 9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제4부문 : 농산물 물류 및 정보체계 개선

- 10 효율적인 농산물 물류체계 구축
- 11 수요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정보개선

제5부문 :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체제 확립

- 12 생산자조직 중심의 농산물 수급안정

1. 직거래제도화 등 유통경로 다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 농산물유통은 특성상 수집과 분산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구조적으로 유통단계가 많고, 유통마진도 과다하게 발생
 - 유통단계와 유통마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통경로 개발 필요
- 최근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유통 경로로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직거래장터 등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은 생산자단체의 직판행사적 성격이 강함
 - 특히, 직거래장터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참여, 장터 확보의 어려움, 인근 상인과의 마찰 등으로 직거래 정착에 애로
- 새로운 선진 직거래형태의 유통시설인 물류센타는 2개소 개장에 불과하여,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역부족
 - 물류센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도·소매 기능을 병행하고 있으나 일반유통업체의 가맹점 확보로 도매기능 활성화 필요
- 유통과정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소매유통 개선문제는 정책 대상 에서 소홀하게 취급
 - 소매단계 유통마진의 대부분은 임대료, 인건비, 감모 등이 주요 요인이나 이에 대한 대책 소홀
 - 소매단계 유통은 여러부처가 관여되어 있고 산지 및 도매단계의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부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부족

과제 1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 유형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

<제 1 유형> 생산자단체-소비자 직거래 장터 개설

- 대도시에 규모화되고, 정례화된 직거래 장터(500평이상) 개장('98년 50개소)
 -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생산자단체가 투자·운영을 담당하는 모델 보급·확산(중앙정부가 시설비 및 운영자금 일부지원)
- 중·소도시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민시장 개설(2001년까지150개소)
 - 참여농민이 자율운영(협의회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농기계수리점, 영농자재판매점 등을 함께 운영하여 농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 시설비 용자지원('99년 23개소, 49억원)
- 농민·소비자 및 행사주관기관의 손익을 분석, 경제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도록 유도

<제 2 유형>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직판기능 효율화

-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직판장은 유통여건 변화에 맞게 규모화·대형화
 - 생산자단체 상호간 물품공급체제 확립으로 일괄구매기회 제공
- 농·축협 등 금융점포내 직판코너를 확대 설치하고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까지 취급품목을 다양화
- 차량순회판매는 소매점수가 적고 소비자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농수축협 합동 판매(서울 5개팀)

<제 3 유형>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조합간 농산물 직거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으로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육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산지 생산자조직간에 정례화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소비자조합의 공동구매 자금, 직판장 지원 추진('99년 80억원)

<제 4 유형> 산지 생산자조직-대형유통업체(실수요업체) 직거래

- 산지에서 선별·포장·가공을 종합처리할 수 있는 농산물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확충
-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농산물의 30~40%를 산지에서 선별·가공·포장하여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대량실수요처, 가맹점과 직거래 확대
- 특히 대량실수요업체인 병원, 학교, 기업체 등과의 자매결연 강화

<제 5 유형> 물류센터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정착

- 중간상인의 개입을 배제하고 물류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직거래의 규모화·제도화 추진
- 산지출하처, 물류센터, 소매점 및 대량수요처간을 연결하는 전자주문거래시스템 운영으로 유통효율 극대화

<제 6 유형> 통신판매·택배 등 무점포방식의 직거래 추진

- 통신판매, 택배, 자매결연 등을 활용한 무점포 직거래 추진으로 임대료, 감모 등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 소비자는 전자주문서로 주문하고, 물류센터는 소포장센터를 이용하여 주문가구별로 포장, 배송하는 「찾아가는 직거래」 개발·추진

<제 7 유형> 농산물 전자직거래 장터 개설

-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전자직거래를 개설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용 절감 도모
-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농산물 취급을 확대 하도록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 생산자단체, 민간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소비자가 쉽게 찾아 갈수 있도록 「농축산물 통합몰」 구축 운영

⇒ 농산물 직거래비율을 97년 7% 수준에서 2001년 25% 수준으로 확대

나. 직거래제도화 지원체제 구축

□ 중앙 및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협조체제 강화

- 중앙정부는 직거래실태조사 및 경제성분석, 재정적·법적 뒷받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강화 등 관련제도 정비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제공, 홍보 등 간접적 지원에 주력
- 생산자 단체는 물량수집 및 배송, 가격정산 등 운영주체 역할 담당
 - 생산자단체의 직거래추진단 운영
- 소비자단체는 일반소매점보다 직거래장터, 자매결연 등 직거래 사업 활용 확대

□ 직거래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 정부의 농림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직거래 추진실적 포함
 - 부지 지원실적, 자매결연 알선, 생산자단체 지원실적 등 평가
- 실적가산금('98년 250억원) 차등 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직거래 규정 제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산지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 활성화
 - 농산물 직거래사업 및 지원근거 마련
- 구체적인 지원사항 명문화 위해 대통령령으로 직거래 규정 제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 직거래 추진실적 보고 등 명문화

□ 직거래 촉진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

-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직거래마당」을 인터넷에 개설('98. 6.29)
 - 산지별 생산자의 제품안내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유통업체·대형요식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간 직거래 유도
- 직거래장터 및 농민시장 정보지 발간 배포('98 하반기)

과제 2 물류센타 조기 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형성

가. 물류센타 건설 확대

□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기여

- 물류센타를 중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현행 도매시장을 통한 5~6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축소
 -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조달하여 대형소매업체에 배송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여 유통비용과 마진을 크게 절감
- 예약·수의거래를 통한 계획적인 출하 및 하역기계화 등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공급
- 집배송과 직거래로 소매중심의 대형할인매장과 차별화하고 외국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응

□ 주요 소비지 거점을 중심으로 물류센타 확충

- 이미 계획이 확정된 12개소의 물류센타(개장 2개소, 건설중 10개소)는 2001년까지 차질없이 개장
-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공영도매시장의 물류센타 전환 지원(고양, 성남 등)
- 대도시 주변 농·수·축·임·협 공동으로 직거래형 물류센타 추가 건설('99년중 2개소)

□ 물류센타건설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됨을 감안하여 「공공 소유·민간운영」 방식으로 건설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지방자치단체 소유)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민간유통업체에 운영 위탁('99년 2개소)
 - 지원조건 : 총사업비 70% 국고보조, 지방비 30%

- 건설비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유통단지에 건설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설허용도 강구(건교부와 협의 추진)

□ 민간 등의 물류센터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조건 강화

- 추가건설 물류센터는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민간업체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조건 강화
 - 민간지원조건 : (당초) 건설비 60%용자 → (개선) 총사업비 80%용자
 - ※ 생산자단체 : 부지구입비 50% 용자, 건설공사비 50% 보조
- 민간업체가 자체건설한 기존 소규모 물류센터간 운영협약을 맺어 공동브랜드, 공동수집·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

나. 유형별로 구분 운영 활성화

□ 지역여건과 사업체 특성에 맞게 기능 및 운영방식을 유형화

- **대도시형** 대도시 또는 인근 외곽에 대형 직판장을 병행 건설하여 집배송 위주로 운영하되, 직거래제도화를 위하여 직판기능도 병행
- **중소도시형** 산지 또는 중소도시 인근에 건설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물류기지로 운영
 - 산지공판장, 미곡종합처리장 및 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과 연계를 추진하여 산지유통의 거점 시설화
- 물류센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대형 민간유통업체 중심의 컨소시엄형태 운영도 허용

□ 산지 포장센터,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선 확보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회원농협 등을 물류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확보
 - 산지에서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하여 채소가격안정사업(계약재배)의 계약주체에 물류센터 포함

- 개장초기 운영활성화를 위해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등 일정기간 지원
- 도매실적, 하역기계화, 가맹점확보 실적 등 평가를 통해 차별지원

○ 소비지 일반유통업체를 판매망으로 확보하여 도매기능 강화

- 소포장 가공시설을 이용한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용 식자재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 차별화
- 슈퍼마켓 협동조합, 요식업중앙회 등과 전략적 제휴 추진
- 물류센터 이용가맹점의 표준소득을 경감 추진(국세청과 협의)

□ 물류센터와 산지 출하처, 소매점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전자상거래(EDI/EC) 시스템 구축

- '98.3월부터 양재동 물류센터와 소매거래처 사이의 전산망(VAN)을 통해 전자 수·발주시스템을 구축 운영중(150개 거래처에 2,000 아이템 적용)
 - '99년 부터는 산지출하조직까지 EDI 시스템 확대
- 농산물전자상거래(EDI/EC)시스템으로 발전시켜 거래의 정확도 제고와 시간 및 유통비용 절감

과제 3 소매단계의 유통마진 절감 및 소비자정책 강화

가. 소매단계 유통마진 절감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

□ 생산자단체의 민간유통업체 견제 및 민간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취급 확대

- 농·축협 의 직판장의 대형화,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의 소비지시장 견제기능 강화
 - 농협 :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가맹점(농협 식품전문점, 한들마트)
 - 축협 : 시범판매장, 가맹점(목우촌, 축협직매장)
- 포장센터·물류센터 등 유통시설의 「공공소유·민간운영」 방식도입으로 민간유통업체의 농산물 유통참여 확대('99년 4개소)

□ 민간 유통업체의 산지직구입 및 시설현대화 지원

- 산지 포장센터로부터 포장, 파렛트 출하품 및 브랜드화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직거래자금 신규지원 추진('99년부터)
- 중소유통업체의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사업 지원 확대(산자부 '98년 1,000억원)

□ 임대료 인하 및 감모·폐기 최소화 방안 강구

- 관계부처와 협의,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소매점의 임대료 인하 등 종합적인 소매유통개선 방안 검토
- 포장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및 시장거래제도개선, 유통경로다원화 등으로 유통시간을 단축시켜 감모 최소화

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 소비자 모니터링제 운영 활성화
 - 소비자단체 회원중심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확대하고 명예감시원의 기능을 원산지표시관리에서 품질인증, 안전성 조사 등으로 확대
- 농검, 생산자단체 등에 소비자 상담실 및 소비자 고발센터 설치 운영
 - 농산물의 품질, 가격, 안전성, 원산지표시 관리 등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
- 소비자단체에 유통 농산물 감시를 위한 조사·연구 기능 부여
 - 농산물 가격조사 결과 공표, 부정·불량 유통농산물의 수거 및 조사의뢰 등

□ 농산물 반품교환제 도입

- 품질인증, 브랜드화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 정착
- 부정·불량 농산물에 대한 반품교환 및 환불제 도입
 - 저장성있는 품질인증품부터 점진적으로 실시

□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품목별, 시장(지역)별, 품위별 가격 등 유통정보 수집 전파
- 지역별 특산물, 유기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에 대한 상품정보제공
-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 품질인증 농산물 등에 대한 정보제공

□ 농산물 유통정책 추진에 소비자참여 확대

- 농산물 유통·수급·가격·품질관리 등 주요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과정에 소비자단체 참여 및 의견수렴 확대
 - 도매시장제도개선 심의회, 시장관리위원회에 소비자대표 참여 의무화
- 소비자·농업인·유통인·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상·정」 유통협약 활성화
 - 저품위 농산물 유통억제, 적정가격 유지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 소비자의 농사현장 방문기회 확대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확산

2. 공영도매시장 개혁

과제 4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장경매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시장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인 제도운용으로 당초의 제도도입 목적달성이 미흡하고 부작용이 발생
 - 대도시 도매시장의 일부 품목 및 일부 지방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가 제대로 안되어 기록상장과 담합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보완 필요
- 도매시장 관련 관리업무(도매시장의 상인 인·허가 및 취소, 거래질서 유지, 시설물관리 등)와 운영업무(수탁판매, 대금결제 등)가 관리공사나 도매시장법인으로 이원화되어 유통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음
 - 중도매인이 사실상 특정법인에 종속된 도매법인별 독립된 시장기능 수행으로 경쟁체제 구축에 저해
 - 일원화를 위한 공공출자법인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음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경쟁에 의한 도매시장의 경쟁력제고가 미흡
 -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공영도매시장에 입주하고 있으나 농민의 이익 대변에는 미흡하므로 농협 이외의 생산자조직도 도매시장내 유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도매시장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도매법인의 공정거래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어 평가실효성에 한계

가.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성 인정

- 거래제도의 다양화로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경쟁촉진
 -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경매제 원칙하에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주장(제1안)과 거래제도를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제2안)이 대립
 - 그동안 전문가회의, 유통개혁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안 마련

— < 조정안 > —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의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도매상제도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상장의 개념 재정립
 - 현행 도매시장의 상장개념을 도매법인 위탁에서 도매시장 반입으로 변경하고, 현행의 상장경매품목은 경매품목, 상장이외품목은 수의매매품목으로 구분
- 중앙도매시장은 경매를 원칙으로하되, 시장여건과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의매매품목을 대폭 확대
 - 일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설자가 거래제도를 자율선택하도록 허용
 - 특별시·광역시를 개설구역으로 하는 도매시장중 인구나 상권,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매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특별시·광역시 개설자가 2개이상의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경우, 권역별 기준 가격 결정기능을 하는 1개시장 이외의 나머지 시장
 - 다만, 동일시장내에서 동일품목에 대한 경매와 수의매매의 병행은 금지하되 수의매매품목의 경우 출하자가 원할 경우 경매도 허용
- 지방도매시장은 경매제나 도매상제중 개설자가 자율선택
- 다만, 도매상제도를 도입한 공영도매시장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대금의 안정적 정산을 위한 장치를 동시에 강구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당초(안)

제 1 안	제 2 안
<p>가. 중앙도매시장 : 경매를 원칙으로하되, 수의매매 품목 확대</p> <p>※ 중앙도매시장의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여 개설자가 자율선택 하도록 허용</p> <p>i) 광역시 개설도매시장중 인구나 상권, 시장규모 등을 고려시 경매가 부적합할 경우</p> <p>ii) 개설자가 2개 이상의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경우, 권역별 기준가격결정 기능을 하는 1개시장이외의 나머지 시장</p> <p>나. 지방도매시장 : 경매제, 도매상제중 선택</p>	<p>○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와 병행하여 일정한 자격의 전문중도매법인의 경매 없는 수탁 또는 매취 판매 허용</p> <p>※ 전문중도매법인 :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3인 이상 중도매인이 공동설립한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p>

□ 도매상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상 개념 도입
 - 생산자(또는 중간상인)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중간도매상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정한 규모를 갖춘 법인화된 상인
-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 출하자의 송장 작성 및 도매상의 품목별 기준가격 고시 의무화
 - 도매상에 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보고 실시
 - 대금정산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 강구(정산법인설립 등)
- 기장 의무나 보고 의무 태만시 제재방안 마련
 - 수탁판매시 수수료 상한 설정 및 별도비용 징수 금지
 - 의무위반시 다른 거래주체에 상응하는 벌칙조항 적용

□ 거래제도의 다양화에 맞게 도매시장 재분류

- **중앙도매시장** 특별시·광역시를 개설구역으로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공영도매시장
- **지방도매시장** 위 시장이외의 도매시장을 지칭하되 공판장과 민영도매시장을 포함
- 지방공영도매시장 : 국고지원 도청소재지 및 일반시 소재 공영도매시장(10개소)
- 공판장 : 생산자단체 및 그 유통자회사,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90개소)
- 민영도매시장 : 도매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로 허용하는 민간 자본에 의한 도매시장과 기존의 일반법정도매시장 포함
 - 민간자본건설 도매시장 시설기준 별도 마련 및 거래제도 자유화

□ 시장여건,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의매매품목의 탄력적 운용

- 지방도매시장까지 수의매매품목을 확대하고 도매시장간 이동이 많은 품목도 수의매매제도 활용
 - 현 상장 예외품목 : 가락동도매시장 90개, 구리도매시장 61개
- 수의매매 품목에 대한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강구
 -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출하대금즉시결제, 추가 수수료부과 제한 등 농안법 준수여부 지도·감독 강화

나. 생산자조직의 도매시장 참여 확대

□ 공판장 개설 대상범위 확대 및 공판장의 자회사 전환

- 생산자조직과 생산자단체 자회사도 공판장 개설 허용
 - 현행 공판장 개설권자 : 농·수·축·임·협 및 공익법인
-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앙회 직영 공판장을 자회사로 전환 추진
 - '98년중 농협의 가락·구리공판장 시범 전환

□ 생산자조직의 공영도매시장 참여 확대

- 도매상체제를 도입하는 경우, 생산자조직도 도매상으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
- 도매시장내 생산자조직이 수의매매 품목을 직접 출하하여 분산시키는 직거래장소 제공

다.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유도

□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시범도입 유도

- 건설중인 16개 도매시장 중심으로 관리·운영 일원화를 시범 도입 하되, 유통전문기관에 위탁의사가 있는 도매시장부터 우선 추진

□ 관리·운영일원화 시장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 신설시장의 경우, 관리운영 일원화 시장에 대해서는 건설비 등에 우대
 - 지방비 부담분을 농안기금에서 확대 지원
- 기존시장은 관리공사와 도매법인간 M&A를 유도하고, 일원화 도매시장에 출하촉진자금, 하역기계화 장비지원 및 도매시장 평가시 우대 등

라. 전국 도매시장관리위원회 설치 및 도매시장 평가 강화

□ 도매시장 정책 및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중앙 및 개설자별로 설치

- 농림부에 생산자·유통인·소비자·학계, 언론계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국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설치
 -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개선, 공영도매시장 평가결과 심의 등
 - 평가결과에 따른 도매법인 취소 등의 조치를 개설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마련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동 위원회에는 출하자대표, 유통인, 소비자대표, 학계전문가를 포함하되, 공익기관대표를 과반수이상 되게 구성·운영
 - 거래제도 선택, 수의매매품목 선정, 상장수수료·하역비 결정, 비포장·비파렛트 출하품 반입제한 등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 수의매매 품목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출하자 의견수렴 방안 강구

□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도매시장 평가내용을 유통개혁방향에 맞게 개선
 - 현행 평가내용에 추가하여 하역기계화촉진, 규격출하품 우대, 관리·운영 일원화 노력, 구조조정 노력, 전자경매·선취경매 등을 반영

- 평가결과에 근거한 인센티브와 제재 강화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우수도매법인 출하촉진자금 30% 가산, 부진법인 50% 감액
 - 일정횟수이상 부진평가 도매법인은 지정 취소, 지정기간 조정 등

과제 5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유사시장의 체계적 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

-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 경매 불신 상존
 - 포장화가 미흡하고, 수집상출하가 많은 일부품목은 기록상장·형식경매 상존
 - 소수 독과점 중도매인들이 수집상 등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수탁 또는 포전매매하여 소매상(중판)에게 판매
 - 서류상으로는 가상의 출하자를 내세워 상장경매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경매를 하더라도 담합으로 특정 중도매인에게 낙찰
 - 실질적인 중도매인의 소속제 존속으로 중도매인의 경쟁체제 미흡
 - 현 수지식 경매방식은 낙찰가격에 대한 불공정 시비 발생

- 도매시장내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 미약
 -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하고, 점포 임대료도 최소화하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전대 성행
 - 중도매인 사업실적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점포 분배로 경쟁체제 미흡
 - 법령위반 도매법인, 중도매인, 경매사에 대한 개설자의 고발 및 행정처분이 개설자의 개선의지 부족으로 소극적
 - 관리공사체제의 경우 인허가업무,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공권력을 수반하는 업무를 관리공사가 수행하는데 한계

- 농산물의 40~50%를 담당하는 유사시장의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안법상 유사시장정비 규정도 사문화

가. 경매제도의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전자경매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현행 수지식 경매는 경매사의 담합경매, 저가낙찰 의혹 등 불공정 시비가 자주 발생(특히, 포장화가 미흡한 채소류)
 - 이러한 수지식 경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매방식을 단계적으로 전자경매로 전환
 - 등급규격화되어 있고, 거래 물량이 많은 과실류를 우선 실시하고 점차 대상품목 확대(현재 1개법인이 시범실시)
 - 실시성과를 평가, 표준모델개발 보급 및 지방공영도매시장에도 도입 추진

- 「선취매매」·「견본경매」의 실용화를 적극 유도하여 경매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 거래의 효율성 제고
 - 선취거래는 현행 농안법상에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나 극히 제한적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운용되지 않고 있음
 - 경매전 반출·경매후 가격결정을 하는 선취매매 제도를 조기 실용화
 - 현행 관련 제한 규정(예, 해당 품목반입량의 30%) 완화 및 대상 품목 확대
 - 우수 출하주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견본 경매」의 시행을 적극 유도 하는 한편, 견본경매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안전장치도 제도화

- 「경매사 공영제」와 「품목별 경매제」 시범도입
 - 신설시장의 관리·운영일원화를 통해 경매사 공영제와 품목별 경매제 실현
 - 기존 도매시장에서는 취급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에 대해 관리공사·관리 사무소 또는 도매법인 주관의 「품목별 경매제」도입

나. 중도매인의 실질적인 소속제 해소 등 경쟁여건 조성

□ 중도매인의 실질적인 법인 소속제를 해소하는 방안 강구

- 시장여건에 따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자율적인 정산회사 설립 추진
 - 농안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개설자 또는 관리공사의 출자 참여
- 거래보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타법인·타시장 경매참여 확대

□ 도매시장내 중판 등을 매매참가인으로 참여시켜 시장내 경쟁여건 조성

다. 도매시장 불법행위 제재와 감독기능 강화

□ 불법행위에 대한 개설자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 공권력 수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매시장관련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법무부와 협의)
 - 관리공사에 시장내 거래질서 단속권, 과징금 처분권 등 부여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 중도매인의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개설자의 관리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예:현행, 3년이상 10년이하→ 3년이상 5년이하)

□ 중도매인의 점포불법전대 일체 조사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법임대·전대를 자진 신고토록하고 기간 경과후의 위반자는 점포사용 계약 해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
- 불법전대 억제를 위해 중도매인 점포사용료(시설사용료)를 현실화

□ 공영도매시장내에 『도매시장 불법행위 고발센터』 운영

- 공영도매시장별로 구성될 시장관리위원회에 상설고발센터를 설치
- 일정회수 이상의 불법행위시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상습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라. 유사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하고, 책임관리제 도입

□ 유사시장의 실태조사 및 유형별 대책 수립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시장의 유형, 거래규모, 거래형태 등을 조사
 - 조사대상 유사시장의 기준, 조사내용, 조사표 작성 등
-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할 대상과 유사시장으로 관리할 시장으로 유형화하여 대응
 - 건설중인 16개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에는 22개 주요유사시장 흡수계획

□ 공영도매시장 건설지역의 유사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

- 2001년 까지 16개 공영도매시장 추가건설로 유사도매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
 - 공영도매시장 : ('97) 18개소 → (2001) 34개소(증 16개소)
 - 주요유사시장 : ('97) 50개소 → (2001) 28개소(감 22개소)
- 공영도매시장 개장시 유사도매시장 흡수를 위한 개설자의 노력강화
 - 유사시장 종사자의 능력에 따라 도매법인 지정이나 중도매인으로 흡수
 - 유사시장의 교통 단속강화 및 과세행정 엄격 수행(국세청 협조)
- 도매상제를 도입하는 신설 도매시장은 유사시장의 도매상 우선 입주

□ 기타 유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리제 도입

- 시설물 개·보수 유도 및 소요자금 지원
- 품질관리, 위생검사, 원산지 표시 등 이행 점검
- 거래실적 조사, 유통정보의 수집·전파 등

과제 6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 의무화로 상장경매수수료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 상장수수료 : 가락시장 5%, 대전시장 6.5%, 기타 7%
 - 상장수수료의 용도(가락시장 예) : 도매시장 사용료 0.5%, 출하 장려금 0.75%, 판매장려금 0.75%, 법인수입 3%
 - 상장수수료를 정율제로 징수함에 따라 공동출하나 대량출하 유도미흡
- 하역노조에 의한 하역작업의 독점성과 수작업에 의존하는 하역시스템으로 하역비용 증가(청과부류 연 216억원 추정)
 - 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어 도매법인이 하역비 절감에 소극적
 -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수하여 하역노조에 전달
 - 파렛트 출하비율이 낮고, 공영도매시장 데크시설 미비, 지게차 보급 미흡으로 하역기계화 부진
-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낙후, 교통혼잡 등으로 물류효율화 한계로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 필요
 - 공영도매시장이 도·소매 혼재, 하역기계화 및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크시설, 저온저장고 미비 등으로 물류비 증가 요인
 - 가락동도매시장은 적정취급량(4,680톤/일)의 1.7배를 거래(7,686톤/일)하고 시설 노후화로 보수비용 매년 증가
- 관리공사·관리사무소의 비대화, 도매법인·중도매인의 적정수 초과 등으로 구조조정 필요

가.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단계별로 2%P 수준 인하

- 도매법인 경영합리화, 시장사용료 인하, 일부 장려금 인하 등을 통한 상장수수료 1%P 이상 인하('98상반기)
 - 장려금폐지 등을 통해 추가인하 추진
 - ※ 상장수수료 1%P 인하시 연 350억원의 출하자 부담경감
- 도매시장상장수수료 징수방식개선 검토
 - 정액제와 정률제의 병행실시로 대량출하, 대량경매 유도
 - 비포장출하품, 포장품, 파렛트 출하품의 상장수수료 차별

나. 도매시장의 하역체계 개선

-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로 부터 도매법인이나 도매상으로 전환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역기계화 촉진
 - 신설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하역회사가 하역업무 수행
 - 기존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 부담을 추진하되, 상장수수료 인하와 연계 추진
-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게차·파렛트 등 하역기계화 장비 지원
 - 산지에서 부터 파렛트단위 출하를 유도하고, 파렛트단위 공동출하시 하역비 면제

다. 출하자등록제 및 출하예약시스템 도입

- 출하자 등록제 실시
 - 출하자는 단계적으로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의 품목·지역별로 코드부여, 관리
 - 등록된 출하자를 대상으로 하여 출하예약제, 미등록수집상 단속 실시 등 도매시장 출하개선시책 추진

□ 출하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경락가격 유지

- 도매시장간 정보망구축으로 도매시장별 적정물량 직출하 유도
- 출하자의 송장작성이 정착되고, 일일 출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2~3일전 출하예약을 한후 출하하되, 예약출하를 이행하지 않는 출하자에게는 경매의 후순위 부여 등 불이익 제공

라. 도매시장 시설보완 및 가락시장 이전방안 검토

□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되, 건설중인 도매시장 규모 축소 및 타 유통시설로 전환 유도

- 개설구역내 유사시장 및 공판장 흡수계획이 있어 도매시장 건설이 필요한 시장은 규모축소 유도
- 도매시장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경우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유도

□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도·소매분리, 하역기계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개보수 본격추진

- 기존 도매시장은 도·소매구역을 분리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하역시설·저온저장고 등 시설보완('99년부터)
- 도매상제도를 도입하는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개조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

□ 가락동도매시장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문제 해소와 하역기계화·콜드체인시스템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개보수 또는 이전 필요

- 단기적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의 보수와 보완 등 시설물을 정비
- 장기적으로 현대화된 도매시장의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전 검토

마. 도매시장관련 조직과 유통종사자의 구조조정

□ 시장 관리공사·관리사무소의 전문화 및 효율화

- 인사제도개선, 보수상 우대 등으로 시장관리주체의 전문성 제고방안 강구
- 시장 관리주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력 및 조직 재정비
 - 청소 등 단순관리업무의 단계적인 민간위탁 추진
- 사용료 수익의 지나친 증대를 지양하고, 사용료 수익은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

□ 도매법인수 축소 등 법인의 구조조정 촉진

- 가락시장 4개이내, 광역시장 3개이내, 기타시장 2개이내(공판장포함)
 - 신규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적정수 지정유도
- 도매법인간의 M&A와 도매법인 평가를 통해 부진법인 지정 취소
- 임직원의 대폭 감축과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기능 강화

□ 중도매인 법인화 유도 및 일제정리

- 신설시장은 중도매인 법인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점포사용 면적도 우대
- 기존시장은 영세 중도매인의 통합, 법인화를 유도하고, 중도매인 결원시에도 신규허가는 억제
- 중도매인의 불법 점포전대를 근절하고 영업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불법거래자, 일정거래실적 미달자 등에 대한 일제정리

□ 경매사의 불법행위 엄단 및 관리감독 강화

- 불법경매 발견시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확실히 시행하고 불공정 불법경매 방지를 위한 자체개선안 마련

□ 하역노조 운영개선 및 하역체계 개선방안 강구

3. 산지유통 혁신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현황 및 문제점 >

- 산지유통의 핵심역할을 해야 할 농협이 경제사업의 위험부담, 노하우 부족, 농민과의 신뢰기반 미정착 등으로 산지유통 활동이 아직 미진
 - 최근 농협의 경제활동 강화로 공동출하 등의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계약재배, 공동계산제 등 질적 내실화는 초보단계
 - 주요 수급불안정품목인 무, 배추, 마늘, 양파는 농협의 계약 재배 비율이 전체 생산량의 6% 수준에 불과
- 생산자의 조직화와 조직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생산자조직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산지 최일선 생산·출하조직인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이 지역별·품목별로 많이 조직되어 있으나 기능면에서 지역조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상호 보완적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자율적인 생산·출하조절을 위해 「품목별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단순한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
- 산지유통시설이 확충되었으나 생산자와의 연계체제가 미흡하고, 판로확보의 애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 가중
 - 포장센터가 '97년까지 78개소가 건설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평균가동일수는 93일)
 - 산지가공공장('97년까지 1,349개소)은 규모의 영세성 및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150개소 지정 취소
- 소비의 고급화추세에 비해 농산물의 안정성 및 품질관리 미흡

과제 7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혁신

가. 농협이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체제 구축

□ 산지단위농협 합병을 농산물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실현 기회로 활용

- 산지농협수 : ('97) 1,286개 → (2001) 800개 → (2004) 500개
 - 기존 전문조합의 광역화 및 신설전문조합의 운영 활성화
- 농협과 지역축협·임협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경제사업의 효율성 제고
 - 이종조합간에 합병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조합의 자율합병 유도

□ 유통관련사업 통폐합 및 주산지 대상 농협으로 집중 지원

- 각종 산지 유통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추진 주체를 농협으로 일원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
 - 생산자단체 유통지원사업, 작목반육성사업,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을 산지 유통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원 주체를 농협으로 일원화
- 사업지원대상도 주산지중심, 전략품목에 집중지원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대상농협과 지원대상품목 축소
 - 시·군별 또는 조합별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유통관련 자금을 집중지원하고, 농협을 통한 공동출하 의무 부과

□ 생산자조직과 농협에 대한 유통사업 평가 강화로 차등지원

- 국립농산물검사소 주관하에 시·군별로 지역조합, 생산자조직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생산자조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동규격출하·공동계산제 실시가 우수한 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조직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 정부, 농협, 산지조합장,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중앙단위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의 산지유통 실적을 평가
 - 산지유통활동이 부진한 농협에 대한 자금지원 축소 등 제재조치 강화

□ 「산지유통시범농협」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산지 유통의 거점역할 수행

- 채소류 중심으로 공동출하·직거래 등 산지유통을 혁신하는 산지유통시범농협을 육성(150개소)
 -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실적, 산지 유통기여 정도 등 종합평가
- 산지유통 시범농협에 대한 농산물유통시설과 운영자금을 중점지원
 - 포장센터, 하역기계 장비, 포장재 등 정부 지원자금과 농협중앙회의 각종 유통자금 우선 지원
- 시범 농협을 중심으로 공동규격출하·공동계산제 및 직거래 등 선진화된 산지유통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전농협으로 확산
 -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물류센터 전속출하조직으로 육성

□ 농협의 공동규격출하 활성화로 산지유통을 주도

- 중간상인의 포전매취와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 확대
 - 주산지 중심으로 관내 생산량의 20~30% 계약재배하여, 공동출하
 - 농협의 단순 순회 수집 기능을 공동출하·공동계산 체제로 발전
 - 농협의 농산물 수송차량을 시·군단위 통합운영으로 운송효율 극대화 추진
 - 산지에서 공동출하할 수 있는 포장센터·미곡종합처리장등에 농협참여 확대
 - 산지유통시설을 소유한 농협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우선 지원
 - 농협중앙회에 산지 공동출하 지도 전담팀 구성·운영
 - 공동출하 모델 개발·보급, 회원조합, 작목반지도·교육담당
 - 농협을 통한 직거래장터,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망 구축
 - 산지조합과 소비자조합과간의 대량의 농산물 직거래
- ⇒ 농협의 공동출하비율을 현재 35%수준에서 선진국수준(70%)으로 제고

나. 우수 작목반을 육성하고 부실 작목반을 정비하여 내실화

□ 산지농협이 작목반을 중점관리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농협과 작목반을 전산망으로 연결

- 농협이 작목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작목반과 연계체제 강화
- 전산화된 작목반을 중심으로 생산 및 출하정보의 수집 창구로 활용
- 공동출하등 활동 실적이 없는 작목반은 정비하고 소규모 작목반은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 유도
 - 농협내 작목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작목반은 통합

□ 영농지도 요원을 시·군단위로 통합 운용하여 시·군 특화품목 중심의 전문지도 요원으로 활용

- 품종 및 재배기술 통일, 품질관리, 판매정보 제공 등의 지도를 통한 공동생산·공동출하 체계 확립(1인 1품목 전문지도요원 확보).

다. 영농조합법인의 활동정도에 따라 차등 육성

□ 경쟁력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산지유통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원을 강화

- 유통관련시설, 하역기계화 장비, 유통지원 자금 등 지원 확대
- 전문농협으로 가입을 허용토록하여 산지의 농산물 유통조직으로 육성
 - 운영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제를 도입하여 우수조직으로 유도

□ 소규모 영농조합법인과 사업활동이 미약한 조직은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협의 계열 조직으로 유도

- 산지농협이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지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기능보완

□ 영농조합법인의 산지유통활동 추진실적을 정기평가 및 차등지원

라.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포전매매 감독 강화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및 수집상 참여 제도화

- 주산지별 우수작목반을 중심으로 품목별 시·군단위 작목반 연합체 결성
 - 농협 시·군지부의 적극적인 협조
- 산지유통혁신 및 전국적인 출하조절·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으로 발전
 - 농협·한농연·전농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수집상(14,000명 등록)의 산지유통에 대한 감독과 지원체제 강구
 - 표준계약서 사용유도 및 계약재배 참여 허용

마. 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품목별생산자조직과의 연계 강화

□ 지역별 생산자조직 연합회를 결성하고 품종통일, 브랜드개발, 출하조절 등 종합유통기능 수행

- 시·군별 농협을 중심으로 지역생산자조직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
- 우수생산자조직에 대한 자금지원강화, 판로지원 등 실시
 - 농안기금 융자지원 방식의 개선으로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효과 거양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품목별생산자조직에 대하여 농협이 생산·유통 정보제공, 시설공동사용 및 세무·회계 등 경영관리 지도 강화

농협과 생산자조직간의 연계추진 사례

- ◇ 대상조직 : 강진군 원예작목 연합회
- ◇ 연합회 결성
 - 관내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이 농협을 중심으로 연합사업 추진
 - 농협, 군청, 지도소, 농검과 연계하여 추진
- ◇ 자체 공동브랜드 개발
 - 관내 생산 농산물의 상표를 청자골 강진으로 통일

과제 8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

가.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주산지의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확대

- 지역별 생산량, 주산단지 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건설목표를 조정하고, 지역별 포장센터 적정 배치계획을 수립
 - 포장센터 건설목표 확대 추진 : (기존) 160 → (조정) 220개소
- 포장센터건설 방식의 다양화로 활용도 제고
 - 대규모 포장센터 건설 촉진을 위해 생산자조직 연합출자 포장센터 건립을 유도하고, 사업비 지원 우대
 - 「공공소유·민간운영」의 포장센터 건설방식 도입('99년 2개소)
- 산지유통인 등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민간유통업체에 의한 규격 농산물 출하 촉진
 - 보조(현행 50%)를 축소하는 대신 용자로 전환하여, 책임경영의식 고취
 -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업체의 지원조건 차별 배제로 경쟁여건 조성
 - 포장센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동식포장센터 시범 지원 검토

□ 포장센터 중심의 계열화 및 운영 활성화

- 포장센터 운영주체와 대형유통업체간의 계열화 체제 구축
 -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과 계약생산 확대로 연중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
 -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와의 지속적인 직거래체계 구축으로 판로의 안정화 도모
- 농산물 포장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우대
 - 포장센터 운영활성화자금 지원 확대, 포장재비, 브랜드 개발비 지원등
- 전문경영컨설팅제(농협, 유통공사) 도입을 통한 포장센터, 경영 및 기술지도 강화

□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소규모 포장센터로 전환

- 간이집하장의 건설확대를 지양하고 운영내실화 추진(3,290개소 완료)
- '98년부터 간이집하장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설치한 간이집하장에 포장·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소규모 포장센터로 육성
 - 농협 자체 건설 간이집하장도 시설개보수 지원대상에 포함
- 간이집하장의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지역특성에 알맞는 활용방안 강구

나. 산지공판장 중심으로 산지경매 활성화

□ 산지 공판장의 신규건설 확대로 산지경매 확대

- 주산지 위주로 전문품목 취급 공판장 개설 확대 : (당초) 67개소→80개소
- 사용일수가 많은 산지의 개장 운영중인 경매식집하장(32개소) 중 시설기준이 적합한 경매식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전환
- 산지경매식집하장 경매에 참여하는 거래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도매시장 중도매인 수준으로 인하(국세청 협의)

□ 산지공판장 운영활성화

- 산지공판장에 경매시설과 병행 선별·포장·저장시설 등도 지원하여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시설로 육성
- 산지공판장과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체계 구축

□ 포전경매 및 산지 창고경매제 활성화

- 농가의 포전거래 비율이 높은 무·배추·양파·마늘 등 대상으로 실시
- 주산지 농협이나 공판장이 농가별로 판매시기와 판매규모를 신청받아 포전(창고)에서 판매농가 입회하에 경매실시
 - 산지농협이나 공판장이 거래인(수집상, 대형유통업체 등) 유치
- 경매참가자격, 경매방법, 대금정산방법 등을 제도화하여 확산유도

다. 가공업체 운영활성화

□ 산지 가공공장 건설 목표 축소 및 지원방식 개선

- 기존 가공공장의 경영내실화에 중점을 두되, 신규건설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효과가 큰 특화품목의 주산지 위주로 선별지원
 - 당초 2,000개소 건설목표에서 1,500개소 수준으로 축소 조정 ('97까지: 1,349개소)
 - 성장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증설, 시설현대화 등 추가 지원
- 경영능력이 있는 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99부터 건설자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이를 저리융자로 전환
 - 보조지원율(융자) : ('97) 40(40) → ('98) 30(50) → ('99) 0%(70%)

□ 산지 가공업체 운영활성화 및 구조조정

- 지역내 동일·유사업종간 통폐합 등 가공산업 구조조정
 - 유사업종 통폐합을 위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제 실시
- 기존업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자금 확대지원
- 경영 및 기술지원 강화, 우수업체 차등지원제 실시로 경쟁력 제고 유도
 - 경영·기술 지원(유통공사, 한식연 등)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업계의 R & D를 통한 신제품 등 개발촉진

□ 가공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농·축·수협 등 직판장, 물류센터, 대형소매업체 등의 판매망 확충
- 대량의 주문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체제 구축 지원
 - 가공공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EDI 시스템 구축 지원
 - 인터넷에 의한 가공제품 정보제공 및 홍보·판촉 강화
- 주문자생산방식(OEM), 반제품 가공 납품 등으로 유통판매 제휴
- 대형유통업체에 민속주 등과 같은 전통식품 판매코너 설치 유도
 - 전통주 도매업 면허신설, 통신판매 등 주세법령 개정 등 병행 추진

과제 9 고품질 · 안전농산물 공급체제 구축

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안정성 조사 강화

□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를 위한 기반구축 및 조사 확대

- 안전성조사 시설 및 장비확충
- 안전성 조사를 현재 58개품목에서 주요 농산물 120개품목으로 확대하고, 조사지역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전도매시장으로 확대
- 속성검사방법 도입 및 토양·수질조사 강화
 - 공영도매시장에 속성검사기를 도입하여, 간이검사 실시
 - 토양 및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활용

□ 생산자 중심의 산지 안전성조사 체제 구축

- 산지농협, 집하장, 포장센터 등에서 안전성조사 강화
- 산지에서 속성검사에 의한 사전 검사후 부적합품 발생시 국립농산물 검사소에 정밀검사 의뢰
 - 생산자단체의 자체 간이안정성조사 강화
-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 모니터링제 도입

□ 농산물 등에 대한 품위 검정제도 도입

- 수출농산물 등에 대해 소유자가 희망하여 신청할 경우 농산물의 품위, 안전성 등에 대한 검정을 실시
 - 농산물의 당도, 색상, 크기 등 품위와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 여부 등 조사
- 검정의뢰품목에 대하여는 조사결과를 표시한 검정서 발급

□ 농산물 안정성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

- 조사결과 안정성 기준위반 농산물에 대하여는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토록 조치

나. 품질인증 농산물 관리강화

□ 고품질 농산물 및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확대

- 전국적인 명품 및 지역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 현재 사과 등 85개 품목에서 주요농산물 120개 품목으로 확대
- 생산조건, 재배지·재배용수 등 적정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재배 전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품질인증제도 단계적 도입

- 품질인증농가 협의체를 결성, 자율적인 품질관리 유도
- 농가단위 품질인증에서 생산자조직 중심의 브랜드화 추진
- 일정시설과 조직을 갖춘 생산자단체에 자체생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업무를 위탁

□ 환경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제정
 - 생산자재의 사용기준, 품질 및 표시기준, 사후관리방안 등 규정
- 시판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강화, 품질기준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표시사용 금지

다. 농산물 품질관리체제 정비

□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 도입 및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표시제 도입

-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국제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 도입
-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보건안전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표시토록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 농산물안전성,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지리적표시 근거마련

4. 농산물 물류 및 정보체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대량집하·분산의 특성을 갖고 있는 농산물 물류체계가 출하단위, 수송단위, 판매단위간의 표준화가 되지않아 물류비 과다

농산물 물류비(6조 2천 억원)						
수송비 (28%)	선별·포장비 (15%)	가공비 (14%)	하역비 (11%)	보관비 (11%)	감모 등 (15%)	관리비 (6%)

- 대량으로 유통되는 무, 배추, 수박 등의 비포장 출하와 포장출하품의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낮아 쓰레기 발생과 물류비용 증가 요인
 - 산지에서부터 파렛트적재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산물 수송 차량 단위가 적으며, 파렛트 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수송의 효율성이 낮고, 기계화 하역 곤란
 - 포장센터,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이 테크나 랙 설치 미비로 파렛트 출하에 의한 물류효율화 곤란
- 산지예냉, 냉장수송, 저온저장, 저온경매 등 콜드체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감모가 발생하고, 고품질 농산물 출하곤란
 - 예냉처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예냉 농산물에 대한 가격차별화가 정착되지 않아 예냉처리의 경제성이 없음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통정보 지원체제가 미흡하고 농산물전자상거래(EDI/EC) 기반 미비
 - 산지와 소비지의 상거래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지원체계 미흡
 - 농림부문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요소의 표준화 및 기반시설의 미흡

과제10

효율적인 농산물물류체제 구축

가. 농산물 규격포장화로 물류개선 기반마련

□ 농산물 포장 및 등급 규격 정비

- 124개 농산물표준출하규격을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에 맞게 정비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규격 개발 확대
 - 농산물표준출하규격은 농산물 품종개량, 유통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시조정 보완(공산품 KS규격 : 5년)
- 농산물 등급규격을 크기 위주에서 품질, 특성, 소비자의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규격 설정과 보급 확대
 - 출하량이 많고 품질상의 차이가 뚜렷한 사과, 배 등 품목부터 추진
 - 품목별 품질등급 규격집을 제작 보급
- 환경친화적이고 여러농산물의 포장, 수송 등이 가능한 플라스틱상자 보급 확대

□ 농산물의 규격포장화 및 브랜드화 유도

- 무배추과 등 포장출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포장화 추진
 - 물류센타,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유통부터 포장화 우선 추진
 - 골판지박스 포장, 플라스틱상자 및 매쉬파렛트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장 방법 강구
- 포장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은 축소(40→12개) 하고 비포장품에 대한 지원 위주로 개편
 - 도매시장의 쓰레기유발부담금과 유통발전기금(도매시장법인협회)을 포장화 추진 자금으로 확대 지원
 - 포장재비 지원 지방비 부담 완화
(국고 20%, 지방비 20% → 국고 30%, 지방비 10%)
- 농산물 고유브랜드 확대로 신용판매제도의 정착
 - 소규모 생산자조직별 브랜드를 광역단위 브랜드화 유도

□ 비포장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 제한 추진

- 도매시장의 포장품과 비포장 출하품의 차별강화로 포장품 출하유도
 - 포장품 우대조치 : 포장재비 지원, 하역료 징수, 쓰레기유발 부담금 부과, 경매순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실시
 - 비포장품 제재조치 : 쓰레기 유발부담금, 하역료 인상 및 시장내 다듬기 금지, 출하촉진자금 지원중단
- 단계적으로 공영도매시장내 비포장출하품의 반입제한 추진
 - 1단계로 월동배추·마늘, 2단계로 배추, 무, 파, 수박 등으로 확대
 - 도매시장여건, 유통종사자 의견, 산지출하자 의견을 종합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장기적으로 하역기계화와 연계, 비파렛트 출하농산물의 도매시장 반입 제한 검토

□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속박이를 근절하고 규격화 촉진

- 생산자조직의 자율검사체제 구축
 - 등급판정, 포장개선, 속박이 근절지도를 전담하는 농협의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 도입 확대
 - 규격미달품은 자체소비 또는 가공원료로 사용 유도
-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 실시 및 속박이 출하자 명단 공개
 - 일정 횟수이상 적발시 도매시장 판매제한 실시
- 속박이 농산물의 반품교환제(Recall)의 단계적 도입

나. 일관수송 및 하역기계화 체계 구축

□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규격에 맞는 차량 지원

- 정부 및 농협 자체지원 차량은 광폭차량 구입 조건부로 지원
 - ※ '97.10.1 부터 중형트럭(5톤)의 광폭적재함 생산 의무화(건교부)
- 기존 수송차량은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중심으로 보유차량 개조 유도
- 냉장차, 탑차도 파렛트 수송, 기계화 하역이 가능하도록 적재함 광폭화

□ 지게차, 파렛트 등 수송·하역기계화 장비 보급 확대

- 파렛트적재·하역기계화에 필요한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장비 보급
 - 하역기계화장비 보급을 유통시설 개보수와 통합 지원하고 지원조건도 우대(음자 80% → 보조 50%, 음자 30%)
-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포장재지원 뿐만 아니라 수송·하역 기계화에도 지원
- 파렛트 출하품에 대한 하역료면제 및 도매시장 하역요율체계 조정으로 파렛트 적재출하 촉진
- 포장센터 및 도매시장 등의 지게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소형 지게차 운전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에서 제외토록 요건완화 협의(건교부)하고 지게차의 보험가입도 협의추진(재경부)

□ 농산물 파렛트화(Palletization) 추진 및 파렛트풀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파렛트 회수관리를 위하여 농협과 한국파렛트풀(주)와 연계 추진
 - 농협, 영농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대형유통 업체 등 유통시설간 종합연계망 구성
 - 농협조직을 파렛트 집배소로 활용함으로써 파렛트 공급·회수의 원활화 도모
- 농산물 파렛트 풀 시범사업을 위한 이용료 지원대책 강구

□ 농산물 수송차량의 공차율 최소화로 수송효율제고

- 농산물 수송단위를 현행 5톤 위주에서 8톤이상으로 확대 공산품과 연계, 수송이 가능토록하여 수송효율 제고
-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을 농산물 분야에도 활용
 - 건설교통부의 중앙전산센터('97.11완공)와 연계하여 농협차량을 지역별로 통합관리하는 방안 검토

다. ULS체계에 맞는 농산물 유통시설 건설 및 개보수

- 정부지원 신규건설 유통시설은 ULS체계에 맞게 건설
 - 농산물포장센터, 저온저장고 등과 같은 유통시설은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확대
 - 도매시장 하역기계화를 위한 데크시설, 저온저장고시설 설치 의무화
 - 파렛트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방식 개선(용자 80%→보조 50%, 용자 30%)

- 기존유통시설의 물류진단을 통한 시설개보수
 - 기존 도매시장, 포장센터 등에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파렛트적재·하역기계화 점검 및 활용도 제고 강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담팀을 구성, 물류진단을 실시하여 가장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으로 시설을 개조토록 유도
 - 시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자금 우선지원

라. 농산물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시스템) 구축

- 콜드체인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 신규 유통시설 지원시 저온·예냉 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의 지원을 포함하고, 기존시설에는 저온보관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 산지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표준모델 개발 보급
 - 수확이후 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표준모델 개발 및 운영
 - 도매시장내의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 콜드체인농산물 표시제 도입
 - 콜드체인시스템 조기 확산을 위하여 농산물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실현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저온수송 효과가 크고 소비자관심이 큰 채소류 중심으로 산지유통 시설과 농산물 물류센터간에 실시하여 문제점 발굴·개선 보완
 - 품질차별화로 콜드체인 농산물 포장상자에 「예냉처리」표시를 품질인증제와 병행 추진하여 수취가격 제고

과제11 수요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정보 개선

가. 수요자 위주의 농산물 유통정보 지원체계 강화

□ 농산물 출하전략 정보시스템 구축

- 유통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시간(real time)대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의 출하의사결정 지원
 - 가격위주의 단순정보에서 주요산지별 출하물량·가격 등 시황정보와 기상·관측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공
 -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스템과 연계하여 시황정보가 즉시 분석 제공 되는 시스템을 농림수산정보센터에 구축
- 장기적으로 유통정보를 생산정보와 연계시켜 농산물 출하조절시스템 구축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유통정보를 이용하여 농산물 출하를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생산자의 경영수익 증대 도모
 - 시설오이·풋고추·참외를 대상으로 9개시군 200여 작목반, 지역농협, 산지 공판장을 연결한 『시설채소 생산유통종합정보화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중
 - '99년말까지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분석·보완하여 2000년부터 확대실시

□ 소비자를 위한 유통정보 제공

- 소비자들이 싼값의 고품질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형 소매점 등의 농산물판매가격을 비교조사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주요농산물(25품목) 판매가격을 '98년 하반기부터 조사, 제공
- 일방적인 정보제공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유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상담실을 설치·운영

□ 농산물 출하정보 전산화를 위한 EDI 시스템 도입 확산

-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와 산지 생산자단체, 포장센터간 EDI시스템 도입으로 유통거래의 활성화 촉진
 - 송품장, 정산서 등을 고속통신망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전자경매를 촉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산지에서 제공된 EDI 출하정보를 출하전략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생산자에게 신속히 정보 제공
- 농산물 EDI 시범사업 실시 및 농업부문 표준 EDI 제정
 - '98년 하반기에 농협물류센터와 산지포장센터간 EDI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0년부터 대상지역을 확대 실시
 -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한 농업부문 표준 EDI 제정
- 보다 발전된 모델인 인터넷 EDI 실용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유통정보 조사분석·분산의 전문화

- 유통공사, 관리공사,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유통정보기능을 재조정하고,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유통정보의 생산·분석·가공 기능 전문화 : 생산자단체(산지유통정보), 관리공사(도매시장정보), 유통공사(소비자정보),
 - 농업관련 생산·유통·경영정보의 종합적인 수집·분산기능 강화 (농림수산정보센터)
- 유통정보의 조사·분석의 전문성 제고
 - 농산물 유통정보만 전담하는 조사원배치 및 농산물의 품질, 규격 등이 동일한 기준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교육·실습 강화
 - 유통정보의 인력을 전산전문가 위주에서 유통전문가 위주로 확보
- PC통신, 인터넷, 신문·잡지 등을 통한 정보분산 수단의 다양화

나. 유통정보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농산물 거래서식 및 상품코드 표준화

- 유통중사자, 업체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코드, 거래서식을 '98년중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기반 구축
 - 거래서식 : 송품장, 정산서, 세금계산서, 판매원표, 낙찰명세서 등
 - 코드 : 품목코드, 지역코드, 규격·등급코드 등
- ※ 농산물코드·거래서식 표준화 추진반을 구성 운영
- 기존 물류센터나 도매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서식이나 상품코드를 감안하여 표준서식 및 코드 마련
- 농산물 표준 서식 및 코드의 보급 확대
 - 서식, 코드저장 CD-ROM 등 제작, 일정기간 무상 보급
 - 표준서식 및 코드사용자에 대한 유통자금 우선지원, 도매시장내 우대방안 마련

□ 농업전용통신망 구축

- 낙후된 농업·농촌지역정보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도시와 농촌지역의 정보화격차 축소
 - 도단위 10개 거점지역과 54개 접속관문국 연결, 현재의 통신속도를 고속화(9.6Kbps → 56Kbps이상)
- 농업인이 인터넷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관련 단체, 법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비용절감 및 통합정보체계를 강화
 - 통신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주민 및 농업인이 인터넷 EDI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농업인과 농업관련기관·단체 이용자가 농업정보를 편리하게 수집·공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

5.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체제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

-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에 대한 다양한 가격안정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함
 - 농협중심으로 생산·출하약정제도, 채소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협의 소극적 참여와 농업인의 인식부족등으로 성과 미흡
 - 사후적인 정부수매 대책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가격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불신 상존
 - WTO체제 출범, OECD가입으로 가격정책에 정부개입 한계
- 수급조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농업관측제도가 미비하고, 생산조정과 연계되지 못함
 - 농업관측 및 유통예고, 유통정보 등 상황판단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 제공하는 농업관측체제 미정비
 - 농업관측에도 불구하고 생산조정과 연계되지 못함
 - 전국적인 농업관측, 생산조정, 출하조절 등 일관적인 수급조절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품목별 조직구축 미흡
 -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인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자조금 조성 등 제도적 장치 미비
- 단기대책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정책효과 미흡
 - 수급안정목적의 개별사업이 여러추진 주체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정책간 연계부족
 - 기금 규모에 비해 가격안정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단계별 조치수단이 제도화·공식화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응급처치 방식으로 추진
 - 사전적 생산조정보다는 사후적 출하조정·정부비축등에 치중

과제12 생산자조직 중심의 농산물 수급 안정

가.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프로그램 운영

- 부패·변질이 심한 채소류·우유 등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조직화 되어 있고, 주산지 생산비율이 높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우유, 감귤, 고랭지배추 등)
 -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와 필요시 미국과 같은 농민투표 검토
 - 저급농산물 유통금지 명령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관리가 쉬운 사업부터 추진하고, 재배면적 조정, 출하량조절 등 사업까지 확대
 - 유통명령 대상 농산물 생산자·출하자의 전산관리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생산·출하조절기획단 설치 운용
 -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명령 시행이 불가능한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사업 추진을 위해 「생산·출하조절기획단」 설치·운영
 - 중앙 및 주산지 시·군에 생산농업인·협동조합·자치단체·관련유통인 등으로 구성
 - 파종기에 수요 및 재배전망 예측에 의한 파종면적 자율조정하고, 수확기에 과잉생산시 저급품 자율폐기와 출하조절 등 사업추진

- 가격폭락시 시장 자동개입 시스템 구축
 - 무·배추·마늘·양파 등 주요채소류의 도매시장 가격이 경영비의 80% 수준으로 3일이상 유지시 농가 또는 도매시장으로 부터 자동개입하여 수매
 - 수매물량과 연계하여 유통명령하고 이행농가에 대해 우선 수매부여
 - 저장성이 없는 수매물량은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거나 산지 폐기처분하고, 저장성이 있는 수매물량은 비축후 수급상황에 따라 수출 또는 단경기 시장판매

나. 채소계약재배 제도개선

□ 과거 다양한 채소류 가격안정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나 정착에 미흡한 점을 감안,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 시키는데 중점

- 계약재배 대상품목이 많고 계약재배 물량부족(전체생산량의 6%)으로 수급안정효과에는 부족
- 가격상승시 농민들의 계약파기 등 계약문화 미정착
 - 계약재배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파, 당근
- 산지농협은 손실부담을 우려 사업에 소극적

□ 주산지 중심으로 계약재배규모 확대

- 농안기금 지원중 정부수매, 민간저장·가공업체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계약재배자금을 확대하여 계약재배 물량을 일정수준까지 확대
 - 계약재배자금 : ('98) 2,865억원(6%) → (2001) 4,500억원수준(10%)
- 주산지중심으로 20~30% 계약재배 실시가 가능하도록 주산지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자금 집중지원('97 지원조합 405개)

□ 사업조합의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

- 사업 및 자금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조합별로 「손실보전계정」 설치관리
 - 사업주체의 손실 보전재원등으로 사용 제한
- 사업주체의 「손실보전계정」 적립금 일부를 중앙회에 설치된 「채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자조금」 재원으로 예치, 적립
 - 동 자금은 수급안정 관련 활성화자금으로 활용
- 가격안정대(현행 $\pm 20\%$)를 품목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농협이외의 영농조합법인·산지유통인의 참여 확대

- 주산지 우수영농조합법인 참여('97년 8개) 유도
 - 영농조합법인의 참여요건 완화
- 산지유통인도 품목별 주산단지에서 채소류 생산·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참여 허용
 - 사업참여시는 사업수행능력, 자금능력, 지역여건등을 종합고려
 -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지원과 계약재배에 따른 의무 이행은 다른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
- 가격 폭·등락시 가격안정을 위한 산지출하조절 적극 실시

□ 사업자의 전산관리 및 평가에 따른 차별화

-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합은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의욕 고취
 - 상습적으로 계약재배 이행실적이 낮거나 위약금 징수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조합은 자금회수 등 제재
- 계약재배농가('97년 36천호)를 전산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한 농가는 계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위약농가에 대하여는 제재강화
 - 일정기간(예 : 3년) 계속 참여한 농가부터 우선 계약권 부여 및 계약 미이행 농가는 일정기간(예 : 3년) 계약재배 대상농가에서 제외

□ 수집상의 포전매매에 대한 감독 강화

- 포전매매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수집상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계약서 내용 개정('98)
- 계약 미이행 수집상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

다.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 수급조정과 직접 연계

□ 정부와 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 기능 강화

- 정부의 농업관측조사에 있어 표본추출, 조사일정 등을 현실에 맞게 설계
 - 현행 주산단지 표본농가 조사에서 최근 재배면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 신뢰도 제고
 - 조사일정을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 및 수급조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 원격관측(Remote Sensing) 자료를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정기관측 보완
- 생산자조직도 지역별 관측정보를 조사하여 생산·출하조정에 활용
 - 단협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지역별 재배의향·파종실적·작황, 생산예상량·재고·출하 등 생산·유통정보 수집, 분산체계 구축
- 수집상, 도매시장 유통인, 종자판매상 등을 농업관측에 참여시켜 정보수집처를 다양화하고 정보수집 보장

□ KREI 중심으로 관측정보 분석·분산기능 강화

- 유관기관에서 조사된 모든 관측정보를 KREI에서 종합하도록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등 관측의 전문성과 정확성 제고
 - KREI에 농업관측전담팀을 구성·운영, 수급 및 가격전망의 계량적 분석과 생산·출하방향까지 제시
 - 농업기상정보, 지역별 작황, 출하동향, 소비동향, 해외시장정보 등 사전 예측적 기능을 갖는 정보를 가공·생산하여 제공
- 관측내용은 공중통신망 및 관측월보를 통해 신속하게 분산
 - 생산·출하·구매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발표시까지 대외비로 관리

□ 농업관측과 생산조정·출하조절사업의 연계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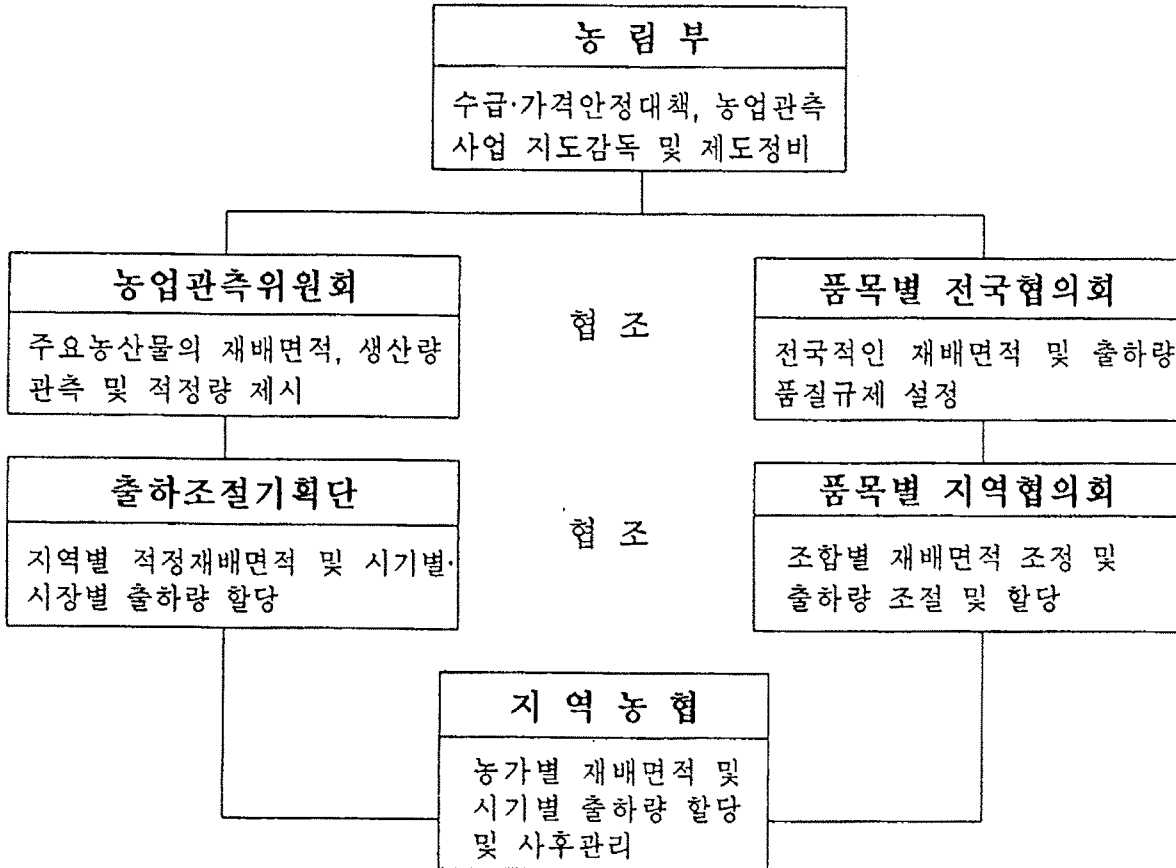
- 관측결과에 따라 품목별 전국조직에서 생산조정, 출하조절 실시

라. 생산조정·출하조절의 제도화

단 계	농업관측	대응조치
과종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의향조사 - 현행 관측체계이외에 작목반장 등을 이용 ○ 종자판매량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품목별 조직을 통해 주산단지별·생산자조직별 면적 조정 ○ 농협 계약재배물량 조절
과종·생육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종면적조사 ○ 정기적인 작황조사 - 원격관측(Remote Sensing)으로 보완 ○ 생산예상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생산예상시 수확전 「산지폐기」나 타 작목으로 전환 유도 ○ 과소생산예상시 「예비모공급 등」 등 조치
출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량 조사 ○ 출하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 실시 ○ 과잉생산시 정부수매 확대 - 민간저장·가공·수출업체 수매자금 지원 - 수확후 산지폐기 실시 ○ 출하예약제 실시로 단기적인 출하조절 ○ 농·소·상·정간 유통협약 ○ 생산자-소비자조직간 직거래 확대
비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비축량 조사 ○ 수출입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물량 도입시기, 물량조정 ○ 정부수매물량 방출 및 수출 조절 등

마. 농산물가격정책 추진체계 정비

□ 수급조정 및 출하조절체제 정비



□ 수급안정의 주체로서 전국 품목별 조직 육성

- 품목별 전국조직 강화 및 문호확대
 - 사업농협이외 작목반연합회, 법인 등 생산자조직의 사업참여 확대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을 생산·출하조정, 공동계산의 핵심단위로 육성
- 채소수급안정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실시의 통합관리
 - 「채소수급안정사업단」을 농협중앙회에 설치하되 「품목별전국협의회」의 심의 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사업의 총괄추진
- 지역단위(읍·면→시·군) 작목반연합회등 생산자조직을 결성운영
 - 주산지의 품목별 우수작목반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연합조직체 육성
 - 사업집행의 애로 및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협의 개선

【 축산물 유통개선 】

1. 소·돼지

< 현황 및 문제점 >

-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가 부진하고, 시설현대화가 미흡하여 유통비용이 과다 소요
 - 산지유통은 주로 상인문전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가축시장 이용율은 19%에 불과(가축시장 143개소)
 - 유통관련 시설이 도매시장 8개소, 공판장 5개소, 도축장 108개소, 도계장 58개소 등으로 확충되었으나 시설낙후
 - 영세규모의 식육판매업소가 난립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이 어려움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생축 수송·도축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공해발생 및 민원야기
 - 서울 3개 도매시장은 2000년까지 생축수송, 도축작업이 어려움
 - 냉동육, 지육 위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냉장육·부분육유통을 위한 냉장 유통체제(cold chain system)가 미흡함

-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 소매단계에서 유통마진이 30~40%발생(적정이윤 15~20%)
 - 소매점의 판매원가중 임대료, 전기료등 부대비용이 35%를 점유, 가격담합행위도 성행(하방경직성)
 - 축협을 통한 축산물 직거래와 직판비중은 5%에 수준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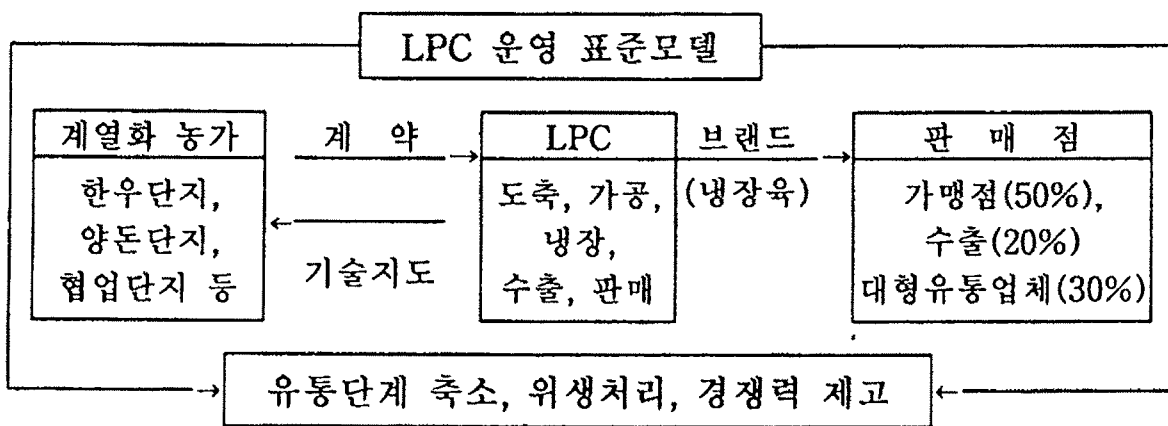
가. 축협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산지유통혁신

□ 가축시장 기능개선 및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 참여 확대

- 영세 가축시장의 통폐합 유도과 시장기능 활성화
 - 가축시장 정비 : ('97) 143 → (2004) 77개소
 - 대규모 가축시장(300두이상 출하)은 상설경매시장으로 육성
- 차량확보와 순회지도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농·축협의 계통출하 확대(19 → 30%)
 - 축산물 수송 전용차량 보급(계통출하용, 계약생산농가용 등)
 - 계통출하 자금을 활용한 출하확대 유도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거점으로 냉장유통체계 구축

- 2001년까지 12개소를 건설하여 유통량의 30~40% 공급
 - '97년까지 2개소, '98년중 4개소, '99년 3개소 2000년 3개소 건설 추진
- 도축·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판매를 계열화하고 냉장육·부분육으로 브랜드화하여 유통
 - 생산계열화 : 소·돼지 농가와 계약생산, 기술지도
 - 가맹점설치 : 축산물종합처리장 1개소당 100개소 총 1,100개소 설치



□ 축산물 브랜드육성 및 품질인증제 실시

- 지역특성을 감안한 브랜드로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 공급
 - 불량품에 대하여는 자진회수제(Recall System) 추진
- 브랜드화된 축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품질향상 유도

나. 축산물 도매시장 기능전환

- 현행 소비지 도축경매제를 산지도축 소비지 경매(부분육·지육) 체제로 전환**
 - 축협서울공판장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 시범결과에 따라 타 공판장(4개소) 및 민간도매시장(8개소)으로 확대
- 공판장에 권역별 집·배송센타를 설치하여 권역별 부분육 직거래 공급센타로 육성**
 - 수도권 : 서울공판장, 영남권 : 고령공판장, 김해공판장, 호남권 : 나주공판장
- 수도권지역의 시설이 현대화되고 규모화된 도축장을 도매시장으로 육성**
 - 서울지역 도매시장의 도축기능폐쇄에 따른 대체기능 수행
 - 축협중앙회 부천공판장을 건설하여 서울공판장의 도축장 기능이전
 - 민간도축장의 도매시장 개설 유도

다. 쇠고기 전문판매점 육성 및 구분판매제 조기정착

- 쇠고기의 종류별 전문판매점 설치로 시장차별화 유도**
 - 대형유통업체에 입주하는 형태로 한우고기, 육우고기 전문판매점을 확대하여 일괄쇼핑(One stop shopping) 기회 제공
 - 한우고기 : ('97까지) 548개소 → ('98) 593 → ('99) 700
 - 육우고기 : ('97) 23개소 → (2000까지) 100
 - 농협, 수협판매점에 한우·육우 전문판매점 동시 입점 추진
- 식육구분 판매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구축**
 -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품종별 구분 판매
 - 식육의 부위별 구분 : 쇠고기 10개 부위, 돼지고기 7개 부위
 - 쇠고기 등급별 구분 : 1*,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 쇠고기 품종별 구분 : 한우고기, 육우고기, 젓소고기
 -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를 서울 및 광역시 이외에 도청소재지와 중도시까지 확대('99. 7. 1)
- 수퍼·편의점·식당의 식육판매 취급 지원**

라.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에 따른 일관된 위생관리

□ 육류유통단계별 위생적 처리공정 확립

- 도축·가공·포장·운송·판매단계별 냉장육 처리기술 개발
 - 적정시설 및 포장·저장기간별 관리조건 확립
- 식육처리공정단계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HACCP)에 따른 관리기술 확립

□ 보관·운송단계의 위생관리

- 수입육 및 국내산 육류를 비축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에 대한 위생 시설기준 및 운용기준마련 시행
 - 시설,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실시
- 지육운반차량은 식육운반업허가와 위생검사를 필한 차량 이용

□ 소매단계 위생관리 강화

- 식육판매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교육 강화
- 식육판매업소의 냉장·냉동시설, 쇼케이스설치 권장기준 마련 등
- 도축이후 소비까지의 합리적인 저장온도 등을 설정하여 유통중 오염 및 부패에 따른 위생문제 발생 방지

마. 개방화에 맞는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소 수매제도 개선 추진

- 정가수매를 시가수매로 전환하여 구조조정 촉진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와 연계하여 정부 수매제 개선

□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로 쇠고기의 30%이상 국내 자급기반 마련
 - 송아지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지원
- 시범사업('98-'99) 성과를 분석하여 실시여부 결정

2. 닭·계란

< 현황 및 문제점 >

- 생산자조직과 양계산물 전문축협 기능이 미흡하여 중간상인이 유통의 주도권 행사
 - 육계생산량의 67%는 수집반출상, 30%는 계열업체, 나머지 3%는 군납
 - 계란의 83%는 수집반출상, 15%는 축협, 나머지 2%는 군납
- 양계산물은 도매시장이 없어 도매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의 냉장유통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고품질유지나 위생관리에 어려움
 - 도계장(58개소)이 영세하고, 가동율이 낮으며 양계산물 전용판매장이 없음

- 양계전문조합을 지역별로 설립하여 양계산물의 유통 전담
 - 양계단지 등 집단양계농가 지역에 설립 유도

- 육계의 계열화 사업을 통한 계약 생산체계 구축
 - 육계 유통량의 50% 수준을 계열업체에서 생산 공급
 - 계열업체 : ('97) 17개소 → (2004) 25
 - 계열업체의 가맹점 등을 통한 전용판매점 설치

- 농·축협 출하조직을 통해 계란을 수집·선별·등급·포장(Grading & Packing) 비축하는 계란집하장 시설 확대
 - 산란계 40~50만수 기준(1일 30만개 처리)으로 50개소를 설치하여 계란유통의 40~50% 처리
 - 계란집하장 설치자금과 경영자금의 지원을 통한 운영개선
 - 대량수요처와 직거래유통체계 확립

- 양계산물의 도매가격 형성기능 수행을 위한 공판장 건설
 - 수도권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지역별로 확대
 - 축협서울공판장 시설을 활용한 도매시장 개설 추진

3. 우 유

< 현황 및 문제점 >

- 개별유업체별로 집유하고 검사함에 따라 비용이 과다발생하고, 검사에 대한 불신 상존
 - 원유부족시 집유선 확보를 위한 업체간 웃돈거래·집유분쟁 등 발생
- 시장개방에 맞는 우유의 수급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소비부진에 따른 분유체화 등으로 낙농업계 어려움 가중
 - 시장개방으로 저장성있는 유가공품은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대체 되고 국내에서는 저장성이 없는 신선우유위주로 생산
 - 국내 수급체계가 각 유업체별로 이루어져 생산조절이 어려움
- 영세우유대리점(15천개소)이 유통량의 80%이상을 점유하여 소매 단계의 유통마진이 과다발생
 - 대리점, 보급소 및 가정배달 위주의 판매에 따른 중간비용 과다로 시유가격이 높아 우유소비감소 요인이 됨

가. 집유·검사의 일원화 및 품질관리 강화

- 원유수집을 지역별로 일원화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촉진
 - 중복집유에 따른 분쟁방지과 집유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 집유를 지역축협 또는 낙협으로 일원화
 - 원유는 생산농가에서 유가공공장으로 직송
- 원유검사의 공영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회복
 -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생산농민의 불만 해소
 - 원유검사는 제 3기관인 시·도(가축위생시험소) 에서 실시
 - 원유검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여 우유 소비확대에 기여

나. 시유·유제품의 소매유통구조개선

□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 및 신선도 유지

- 대형 유통업체와 유업체간 OEM 방식에 의한 제품생산·판매확산 유도
 - 유통비용(대리점 미경유 및 광고비)절감으로 소비자에게 저가(약 25%) 공급 (예 : 축협중앙회 ↔ 농협유통, 삼양식품 ↔ E마트)
-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가정배달 위주에서 슈퍼체인 등에 직공급체계 유도
- 포장단위를 점진적으로 중대형화(200ml→500~1,000ml)

□ 유가공조합의 시유처리 및 판매능력 확충으로 가격견제기능 수행

- 조합과 조합간 OEM 방식에 의한 생산, 판매체계 도입
- 축협 생산우유의 공동 브랜드사용에 의한 신뢰도 제고

다. 개방화에 맞게 가격관리제도 개선

□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민간자율로 수급 및 가격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 업계공동의 소비수요확충, 생산조절 등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부가 결정하는 원유가격 체계를 시장상황이나 품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등화하는 자율결정 체계로 전환

- 계절별·용도별·위생등급별 가격차등제 추진

IV. 지원체계 정비

1. 유통지원 조직 기능 강화

< 농림부 >

- 농업관측, 유통정보, 물류 등 유통정책국의 유통기획기능 강화
- 산지유통과 유통정보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 상설 도매시장제도개선 심의회 설치
- 소비자정책이나 품질관리 전담부서 설치

< 지방자치단체 >

-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유통기능 강화
- 공영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관리·감독 관련공무원의 전문화
- 관리공사의 자율경영권 확대 및 단속권 부여

< 농수산물유통공사 >

- 확충된 유통시설의 컨설팅업무와 유통사업 평가업무 강화
- 거시적인 유통정책 수립이나 효과분석을 위한 유통마진, 물류비조사 등 실태조사기능 강화
-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유통정보 및 전자상거래 기능 강화

< 생산자단체 >

-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기능 강화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는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무국으로 개편, 전국적인 농업관측, 수급조절, 수매 등 일관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 지원
- 지역조합은 경제권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전문조합을 육성하여 유통기능 강화

2. 유통개혁 투자의 대폭 확대

□ 타 분야 농림예산을 삭감하여 유통분야에 집중투입

- 공공유통사업 투자를 현 수준보다 30% 증액(국고기준, 연평균)
 - ('97~'98) 3천억원 → ('99~2002) 4천억원 이상
- 주요 유통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도매시장 : 50%(광역시 30%) → 70(광역시 50)
 - 하역기계화 : 0%(읍자 80%) → 50(읍자 30)
- 생산자단체와 민간기업간 지원조건 격차해소(쌀종합처리장, 물류센타 등)

□ 「공공소유·민간운영」 방식의 유통시설 확대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건설을 지원하며, 운영은 농·축·임협 또는 전문유통업체가 맡는 체제 도입
- 물류센타·포장센타·직거래망 등에 적용하고, 운영자금 지원

□ 농안기금은 생산자조직의 수급안정 및 유통시설의 운영자금으로 집중 지원

- 정부수매, 저장·가공업체의 지원을 축소하고, 생산자조직의 가격안정사업 위주로 지원
- 생산자나 생산자조직관련 농안사업자금은 통폐합하여 운영
 - 작목반 육성, 회원조합 육성, 전국생산자조직 육성과 채소계약재배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
 - 품목별 전국조직이 자율적·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전국단위로 당해품목을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
- 우수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에 가격안정을 위한 장기저리자금 융자

3. 관련법령 정비

농안법 개정

-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개념 재정립(제2조)
 - 상장개념 재정립, 도매상개념 도입 등
- 거래방식 다양화, 매매방법(제29조)
- 도매법인지정, 중도매업의 허가(제17조, 제23조)
- 농산물직거래지원규정 보완(제57조의3)
- 수급조정위원회, 자조금제도 규정 신설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품질관리 부문을 분리하여 품질관리법 제정
- 농산물 안전성조사,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지리적 표시 등 근거마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농산물직거래 지원근거 마련
- 관계부처와 협의, 법제정 추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 도매시장 관련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 개발제한 구역내 물류센타 및 대형직판장 설치 허용

4. 유통종사자의 유통교육 강화

< 유통인 >

-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 집하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형식적인 기록 상장을 배제하고 출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판매하려는 노력
 - 경매사 :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핵심주체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를 통해 도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 중도매인 : 담합경매, 점포불법전대 등 불법 행위를 지양하고 정당한 경매로 적정마진을 확보하려는 노력
- 하역인 : 하역은 독점적인 권리가 아닌 서비스사업으로 인식하여 하역기계화 및 서비스개선을 통한 하역비 절감 노력
- 수 집 상 : 포전거래의 투명성제고 및 실명출하 노력

< 생산자단체 >

-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고, 농산물판매는 생산자단체가 책임지고 추진하여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 신용사업 위주에서 농산물 유통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자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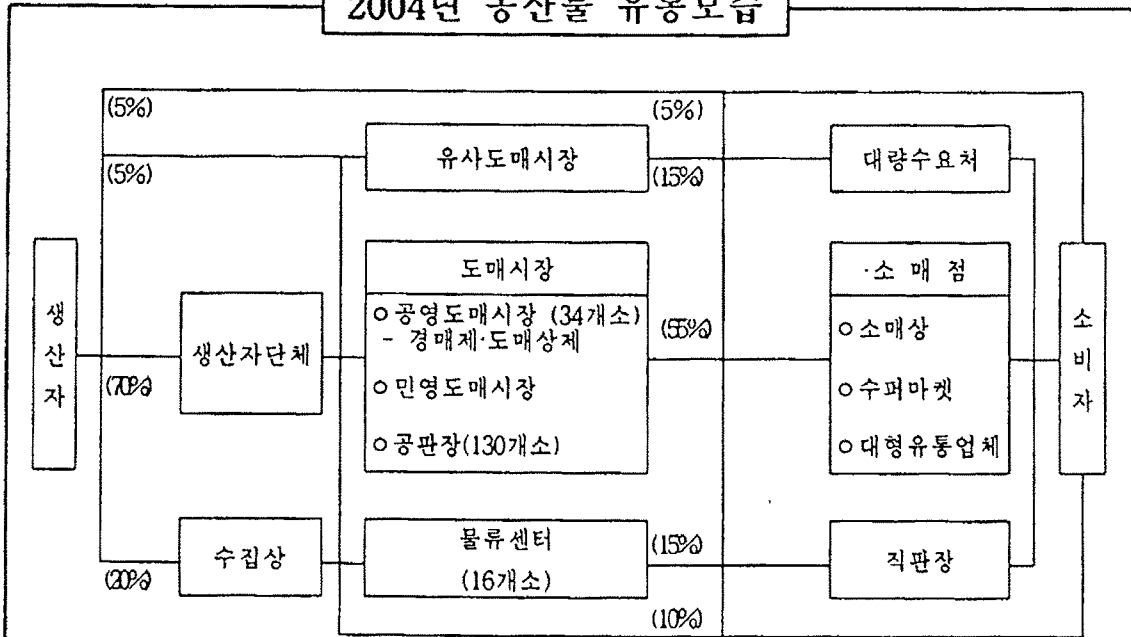
< 농업인 >

- 유통개선, 가격불안을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의식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유통개선, 가격안정을 꾀하려는 노력
- 숙박이근절, 공동출하, 공동계산으로 신용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보화 능력함양으로 정보화시대의 생존능력 배양

< 소비자 >

- 농산물 유통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노력과 직거래 참여 확대

2004년 농산물 유통모습



- ◇ 산지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계약재배된 농산물을 규격화, 브랜드화하여 대량으로 공동출하함에 따라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이 강화되고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기반 마련
- ◇ 주요거점지역에 34개 공영도매시장, 16개 물류센터가 개장되고, 유사도매시장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뿐만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따라 출하자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가 정착
-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의 다양한 직거래체제가 구축되고,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직판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산물 구입
- ◇ 산지에서부터 소비지시장까지 파렛트에 의해 수송, 지게차에 의해 하역되고 파렛트별로 경매, 소비지 대형유통매장까지 운반된후 진열·판매되는 일관체계와 냉장유통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물류비용을 30% 수준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공급

농산물 유통비용 6조원 절감

농축산물 유통개혁 지표

	단 위	'97	2001	2004	비 고
<산지유통>					
○ 생산자단체 공동출하 비율 (산지유통시범농협)	% (개소)	35 (30)	50 (150)	70 (150)	농 협
○ 포장센타 출하 비율 (농산물포장센타) (소규모포장센타)	% (개소) (“)	8 (78) (269)	15 (160) (1,000)	30 (220) (1,000)	간이집하장전환
○ 미곡종합처리장 처리비율 (RPC)	% (개소)	20 (235)	30 (350)	40 (400)	
○ 축산물종합처리장 처리비율 (LPC)	% (개소)	- (-)	25 (10)	30 (12)	
○ 가축시장 출하율 (가축시장)	% (개소)	19 (143)	20 (93)	20 (77)	일반45 대형32개소
<도매유통>					
○ 공영도매시장 경유율 (공영도매시장) (소비지공판장) (법정도매시장)	% (개소) (“) (“)	45 (17) (31) (16)	55 (34) (48) (6)	55 (34) (48) (6)	청과기준
○ 물류센타 경유율 (물류센타)	% (개소)	- (-)	13 (12)	15 (16)	광의직거래
○ 유사시장 경유율 (주요유사시장)	% (개소)	48 (50)	20 (28)	15 (28)	
<소매유통>					
○ 직거래 비중	%	7	12	15	협의직거래
<물 류>					
○ 농산물 유통량	만톤	3,500	3,850	4,080	농·축산물
○ 유통비용	조	19.3	16.0	12.8	△34%절감
○ 산물출하채소포장출하 비율	%	10	50	90	그물망 포함
○ 파렛트적재 출하비율	%	-	30	70	
○ 하역기계화 비율	%	-	30	70	

여 백

협동조합 개혁방안

이 보고서는 '98. 7. 31 협동조합개혁
위원회가 농림부에 제출하여 검토중에
있는 정책건의 자료입니다.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여 백

목 차

I. 협동조합개혁 추진연혁	127
II.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평가	131
III. 새정부의 협동조합개혁	133
IV. 개혁과제별 개선방안	134
① 협동조합 구조조정	134
1. 중앙회 조직체계	134
2. 회원조합 구조조정	151
3. 품목별(업종별)전문조합연합회 기증강화	162
4. 협동조합 협력체제	164
② 협동조합 경영관리 체제	165
1. 책임경영체제 확립	165
2. 이사회 기능 활성화	169
3. 임원선출제도 개선	173
4. 여성종합원 참여 확대방안	175
③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체제	177

여 백

I. 협동조합개혁 추진연혁

	배경(여건, 시대적상황, 사회적분위기등)	주요 추진내용
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수립후 농협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협법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신·경 분리 문제로 입법 무산 ○ '56말부터 농협법 입법활동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추진 하였으나 재경위의 반대로 무산, 경제 사업만 취급할 수 있도록 농협법 의결 ('57.2.1) - 한편 재경위가 제출한 농업은행법도 의결('5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법 제정('57.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조직(이동조합→군조합→중앙회) ○ 농업은행법제정('57.2.14)
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16군사혁명정부가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재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 ○ 이동조합은 조합규모가 영세하여 농가 경제 중심체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여 조합통합론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법제정('61.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 농업협동조합 발족('61.8.15) ○ 이동조합 합병 5개년 계획('64-'68)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말)21,239개조합 →('68말)16,089(5,150개 소멸)

	배경(여건, 시대적상황, 사회적분위기등)	주요 추진내용
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경영을 위한 이동조합(단위조합)의 합병 지속 추진 ○ 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농협의 조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조합 명칭변경(7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조합 → 단위조합 ○ 단위조합 합병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말) 16,089개조합→('73말) 1,549(14,540개소멸) ○ 준조합원 가입대상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자연인 및 농업단체(농조,산림조합등) ○ 특수조합(전문조합)설립 구역 설정(7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제한 없음→ 1구역 1조합
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조합의 폐지론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조합이 70년대 초반에 읍면 단위로 합병이 완료되고 군조합 업무가 단위조합에 이관 ○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축산물의 수요급증, 축산진흥 필요성 부각 ○ 대통령직선제등 사회전반의 민주화, 자율화 추세 확산 ○ 조합의 광역화·규모화 필요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계통조직을 단위조합·중앙회의 2단계로 재편(8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조합폐지 ○ 축협중앙회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정 ○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임명에서 선거제로 변경(88.12) ○ 단위조합 합병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말) 1,549개조합 → ('88말) 1,463(86개 소멸)

	배경(여건,시대적상황,사회적분위기등)	주요 추진내용
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전반적인 민주화 진전으로 일선조합장, 농민, 농업인단체등의 욕구수용 필요 -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만 몰두하고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비판제기 ○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국제화, 지방화에 부응하도록 협동조합 역할의 재정립 필요 -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 활동('94.2-7) ○ 농업인의 수는 감소되는 반면, 교통통신의 발달등으로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조합의 대규모 합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협동조합법 개정('94.12) <회원조합분야> - 복수조합원제 도입 · 1가구1인 → 1가구2인까지 - 상임이사제 도입근거마련 · 경영전문화 유도 - 전문조합 설립기준 완화 · 1구역1조합 원칙 폐지 <중앙회 분야> - 독립사업부제 도입 - 회장의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 - 이사회 구성 : 2/3이상 회원 조합장 참여 - 집행간부제 도입 - 중앙회 독립사업부제 경영 평가를위한 협동조합발전 기획단 운영('95.8-'97.6) · 중앙회 사업체제를 각 사업 별로 자회사화 방향 제시 ○ 지역농협 합병추진 - ('88말) 1,463개 → ('97말) 1,286(177개 소멸)

< 참고 >

< 농어촌발전위원회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

농 발 위 건 의 내 용	반영내용('94.12.22 농·축·수·임협법개정)
<p>< 반영사항 ></p> <p><input type="checkbox"/> 조합, 중앙회 이사회 2/3이상 조합원으로 구성</p> <p><input type="checkbox"/> 조합장, 중앙회장 피선거격을 조합원으로 제한 - 조합장, 중앙회장,이사 임기: 3년</p> <p><input type="checkbox"/> 복수조합원제 도입(1가구1인이상)</p> <p><input type="checkbox"/> 조합의 대표권, 경영권 분리</p> <p><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연합회육성 및 연합회 설립 - 업무구역제한 폐지</p> <p>< 수정 또는 미반영 사항 ></p> <p><input type="checkbox"/> 중앙회장의 기능축소 - 중앙회장 : 대표기능, 농정활동</p> <p><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 설립 자유화</p> <p><input type="checkbox"/> 중앙회 신용, 경제사업 단계적 분리 - 별도은행 설립근거, 설립시기등을 농·수·축협법 개정에 반영</p>	<p>○ 조합은 이사전원(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예외), 중앙회는 2/3이상 조합원으로 구성</p> <p>○ 피선거격을 조합원으로 한정 - 조합장, 중앙회장 이사임기 종전 처럼 4년유지</p> <p>○ 1가구 2인까지 가입허용</p> <p>○ 전문경영인제를 도입(선택여부는 조합자율)</p> <p>○ 연합회 설립 및 1구역1조합 설립 원칙 폐지</p> <p>○ 상임이사제를 도입, 중앙회장 기능 축소 - 부회장에게 일부 권한위임</p> <p>○ 미반영, 건의취지는 수용</p> <p>○ 독립사업부제 도입 - 독립사업부제 경영평가를 위하여 「협동조합발전기획단」 설치 운영</p>

II.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평가

□ 그간 협동조합개혁의 중점사항은

- 지역조합장, 중앙회장의 직선제 실시 등 협동조합의 자율성 강화
- 지역조합의 통합, 중앙회 계통조직의 단계축소 등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힘

□ 그동안 주요성과를 보면

- 경제사업분야에 있어서는
 - 유통판매사업 확대등에 기여
 - 농산물 공동판매시장 점유율 : 약 30%수준
 - 영농자재의 원활한 공급
 - 시장점유율('97) : 비료 85%, 농약22, 농기계23, 사료45
 - 농가생활 물자의 공급
 - 농협 연쇄점 연간 취급액 : 1조 6,704억원
- 신용사업에 있어서는
 - 농어촌저축운동을 전개하여 사채시장을 몰아내고 신용사회를 구축하였고
 - 정책자금에 협동조합 자체예수금을 투입 농촌자금 지원 창구로서의 역할에 충실
 - '97자체자금투입 : 농협 44,467억원, 축협 2,177
- 지도사업도 조합원 영농기술지도, 경제사업 지도업무 수행, 회원조합 육성에 노력
 - '97지도사업비 : 농협 1,760억원, 축협 304, 임협 11, 삼협 21

□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 생산, 유통, 가공, 판매등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비판
 - 특히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음
- 중앙회 기구의 비대화, 하향식·획일적 조직운영에 대한 불만
- 농업인 조합원의 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라는 비판
 - 농업인은 줄고 있는데 조합직원은 늘어나고 있다는 비난
- 특히 최근에는 '94협동조합법개정이후 조합의 자율성은 제고된 반면 책임경영이 미흡해 경영부실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 최근 급변하는 유통,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등이 있음

◆ 새정부의 협동조합개혁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협동조합이 농업인에 봉사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하며, 이는 협동조합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바탕을 두고 추진 ◆

Ⅲ. 새정부의 협동조합개혁

□ 기본방향

- 농업인, 회원조합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
- 사업운영의 전문화, 효율화
-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직, 기능 재정비

□ 개혁검토과제

① 협동조합 구조조정

- 중앙회 조직체제
- 회원조합 구조조정
-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 기능강화
- 협동조합간 협력체제

② 협동조합 경영관리체제

- 책임경영제 확립
- 이사회 기능 활성화
- 임원선출방법 개선
- 여성조합원 참여 확대방안

③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체제

IV. 개혁과제별 개선방안

① 협동조합 구조조정

1. 중앙회 조직체제

가. 현 황

□ 사업의 종류

- 경제사업 : 농축산물유통, 농업용자재 및 생활물자공급
 - 농협 : 농산물물류센터(2개소), 농산물공판장(14), 비료·농약, 농기계등 농업용자재공급, 생활물자공급
 - 축협 : 축산물가공공장(7개), 사료공장(8), 축산물공판장(3), 축산물 판매장(34)
 - 임협 : 임산물종합유통센터(1), 임산물직매장(1)
 - 삼협 : 인삼가공공장(1개), 유기질비료공장(1), 직판장(1)
- 신용사업 : 은행금융,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연합기능, 정책금융·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등
 - 통화·신용정책, 은행감독원의 검사·지도등은 일반은행과 동일
 - 동시에 다양한 정책사업 및 대농업인 서비스 기능을 수행
 - 신용사업의 이익금은 농업인 교육, 농축산물 구매자금, 유통시설 확충 및 운영자금등 협동조합 목적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지도사업 : 영농지원, 회원조합 지도·감사, 교육, 홍보 등 지원
 - '97지도사업비 지원현황(순수 지도사업비 기준)

	농 협	축 협	임 협	삼 협
	억원			
· 영농지원	208(17.2)	8(3.8)	3(25)	2
· 조합육성	803(66.3)	178(83.6)	4(30)	8
· 조사연구	14(1.1)	5(2.4)	1(5)	0.3
· 교육·홍보	187(15.4)	22(10.3)	3(25)	2
소 계	1,212(100%)	213(100%)	11(100)	12.3

□ 사업규모 및 수지('97)

○ 사업규모

	농 협	축 협	임 협	삼 협
- 경제 사업 (매 출 액)	60,858억원	27,288	476	99
- 신용 사업 (총수신,평잔)	348,442	23,680	-	-

○ 공제 및 상호금융특별회계

	농 협	축 협	임 협	삼 협
- 공 제 사 업 (수입공제료)	32,944억원	861	-	-
- 상호금융특별회계	123,000	12,417	660	-

○ 당기손익

	농 협	축 협	임 협	삼 협
- 당기손익	201억원	7	1	8
· 경제사업	△379	199	12	10
· 신용사업	2,340	112	-	-
· 지도사업	△1,760	△304	△11	△2

□ 자금조달 및 수익구조('97)

○ 조수익

	농 협	축 협	임 협	삼 협
- 경제사업	823억원	1,370	123	99
- 신용사업	11,975	679	-	-
- 공제사업	238	48	-	-
- 상호금융 특별회계	134	△26	-	-
계	13,170	2,071	123	99

○ 총수신증 공공예금 비중이 높고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

	농 협	축 협
- 일반수신(잔액)	281,847(72.2)억원	22,736(85.3)
- 공공예금(잔액)	108,292(27.8)	3,921(14.7)
계	390,139(100%)	26,657(100%)

□ 인력 및 조직('97)

	농 협	축 협	임 협	삼 협
○ 인 력	17,872명	4,562	525	80
- 경 제 부 문	1,773	2,525	420	53
- 신 용 부 문	12,848	1,524	-	-
- 지 도 · 관 리 부 문	3,251	513	105	27
○ 조 직	31 부 · 실	22 부 · 실	8 부 · 실	4 부 · 실

□ 사업량 대비 인력증가 추이

- 중앙회의 종사인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신용·지도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기인
- 농협의 경우 '97 인원은 '91대비 1.1배 증가하였으나 사업량은 3.3배 증가
- 축협의 경우 '97인력은 '91대비 1.5배 증가하였으나 사업량은 2.3배 증가
 - '95.11 종합육가공사업, '97.3 육가공사업 개시, '97육계가공공장 가동 준비 및 '93년이후 축산물 판매장 개장(20개)
 - '91.4 신용카드사업, '94.7 공제사업 개시 및 신용점포수 증가('91년 56개, '97년 102개, 46개 증가)
- 임협의 경우 '97 인력은 '91년 대비 1.5배 증가하였으나 사업량은 3.2배 증가
 - '93.12 산림조합체제에서 협동조합 체제로 전환
 - '96.5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

< 연도별 사업량 및 종사인원 현황 >

(억원, 명)

구		분	'91	'93	'95	'97
농 협	경제사업	사업량	27,776(100)	39,783(143)	60,846(219)	60,858(219)
		인 원	1,532(100)	1,824(119)	1,771(116)	1,773(116)
	신용사업	사업량	95,434(100)	138,243(145)	208,931(219)	348,442(365)
		인 원	11,239(100)	11,779(105)	12,446(111)	12,848(114)
	지도사업	사업량	590(100)	825(140)	1,028(174)	1,212(205)
		인 원	4,280(100)	4,469(104)	3,233(76)	3,251(76)
	합 계	사업량	123,800(100)	178,851(144)	270,805(219)	410,512(332)
		인 원	17,051(100)	18,072(106)	17,450(102)	17,872(105)
축 협	경제사업	사업량	15,081(100)	18,853(119)	24,118(153)	27,288(173)
		인 원	1,489(100)	1,712(115)	1,885(127)	2,525(170)
	신용사업	사업량	6,921(100)	13,083(189)	18,685(270)	23,680(342)
		인 원	759(100)	892(118)	1,193(157)	1,524(201)
	지도사업	사업량	117(100)	182(156)	184(157)	213(182)
		인 원	829(100)	754(91)	696(84)	513(62)
	합 계	사업량	22,119(100)	32,118(145)	42,987(194)	51,181(231)
		인 원	3,077(100)	3,358(109)	3,774(123)	4,562(148)
임 협	경제사업	사업량	150(100)	226(150)	275(183)	476(317)
		인 원	264(100)	296(112)	353(133)	420(159)
	신용사업	사업량	-	-	-	-
		인 원	-	-	-	-
	지도사업	사업량	3(100)	5(166)	8(266)	11(366)
		인 원	80(100)	86(107)	102(127)	105(131)
	합 계	사업량	153(100)	231(151)	283(185)	487(318)
		인 원	344(100)	382(111)	455(132)	525(153)

- 주) 1. 경제·지도사업량 : 연간총사업액, 신용사업: 연간평균, 인원: 년중 평균종사자
 2. 임협은 '93까지 산림조합체제
 3. ()는 '91년도기준 지수

□ 경영체제

○ 회 계

- 경제, 신용, 지도사업을 각기 별도회계로 예산편성 및 결산
- 고정자산, 퇴직급여충당금, 자기자본계정을 회계별로 구분계리

○ 예 산

- 사업계획, 수지예산은 회장의 기본방침하에 경제, 신용사업 부문별로 편성, 집행
- 예산조정권은 각 사업부에 위임

○ 인사(부회장 중심)

- 부회장소속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는 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
- 일반직원(1급이하중 사무소장은 제외)는 부회장 전결

나. 문 제 점

□ 종합적 사업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조직의 비대화, 전문성부족, 경제사업이 상대적으로 취약

- 조직의 비대화로 신속적 조직운영이 어려움
- 경제, 지도, 금융부문간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력의 전문성 확보 곤란
- 경제사업기능이 취약
 - 판로개척, 농산물유통 네트워크 구축, 품목별 수급 및 가격정보 제공, 생산 및 출하조정 기능이 미흡
- 농정활동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사 기능 미흡

□ 특히,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의 여건변화에 비추어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제정비가 필요

○ 경제사업분야

- 농산물시장개방, 대기업의 유통업 참여등으로 민간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

- 신용사업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형태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신용사업분야

- 금융분야 구조개편, 금리자유화, 자본시장개방등 전문화·규모화가 진전되고, 치열한 경쟁으로 예대마진 축소등 예상

- 전자·통신장비 확충등 금융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등 지속적 투자 확대가 절실

◆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중앙회의 조직개편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음 ◆

— <중앙회 조직개편 관련 주장 > —

□ **현행 종합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별 전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하여 실질적 독립·전문경영 체제 확립
 - 경제·신용사업별 부회장의 권한을 강화
- 신용사업의 종합경영의 시너지 효과 상실등으로 지도·경제사업의 지원이 어렵게 되고 신용사업의 경쟁력 확보도 어려움 예상

□ **중앙회를 기능별로 분리·통합해야 한다는 주장**

- 농정활동과 지도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농축임삼협중앙회」 설치
- 기존 각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국연합회체제로 전환
- 현행 각 중앙회·신용사업을 통합, 협동조합은행 설립

□ **현행 각 중앙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

- 통합된 1개의 법인체하에서 독립사업부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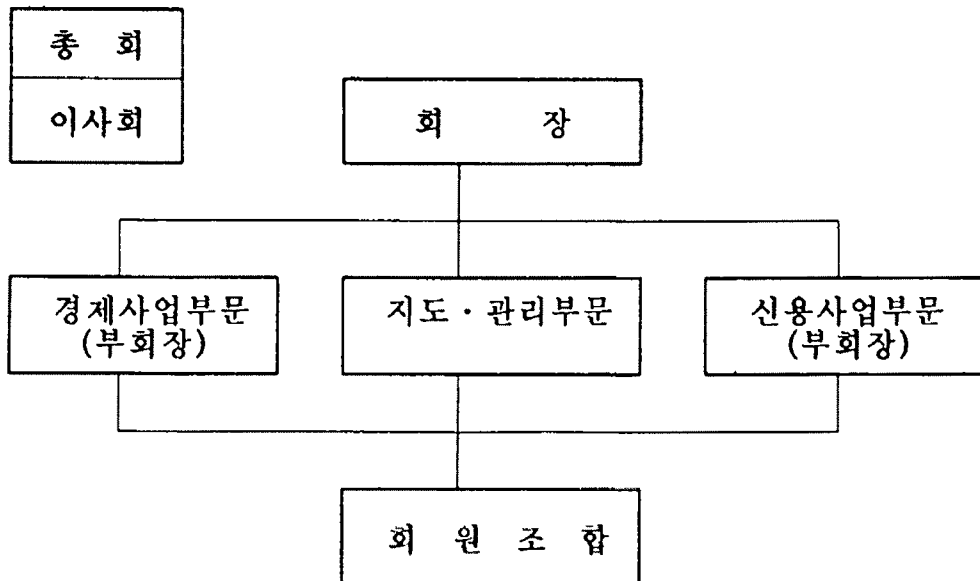
※ 시도단위 연합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부의견도 있음

다. 개편방안

- 사업부문간 전문성 강화와 협동조합의 본래목적인 지도·경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현행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전문경영인체제를 실시하는 안, 중앙회를 기능별로 분리·통합하는 안, 그리고 현행 각 중앙회를 1개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가” 안 : 독립사업부제 강화(전문경영인체제) 방안

□ 조직체계



□ 조직의 특성

- 회장은 총괄대표권, 지도·관리부문 업무, 농정활동업무담당
- 실질적으로 부회장 중심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 확립
 - 부회장 2인은 경제·신용사업의 소관업무에 대해 각각 대표권·경영권을 부여
 - 소관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법률행위와 소관사업에 대한 인사권·예산권 행사
 -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도 경제·신용 직군별로 시행
- 부회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출방법을 변경
 - 부회장 선출은 회장이 추천, 이사회 선출, 총회(대의원회) 승인으로 선출
 - ※ (소수의견) 부회장 선출은 이사회 선출, 총회(대의원회)승인으로 선출
- 부회장에 대해 임기중 외부기관이 업무평가

□ 부회장의 권한강화내용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권 - 부회장의 법률행위 ○ 부회장선출 ○ 직원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권범위 - 직군의구분 ○ 예산편성 및 조정 ○ 부회장에 대한 업무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장만 보유 ○ 전결권(내부위임)에 의해 부회장이 법률행위(회장명의) ○ 대의원회의 동의, 회장이 임명 ○ 부회장은 지사무소장을 제외한 1급이하 직원에 대해 인사 ○ 직군(신용, 경제)관계없이 채용, 배치 ○ 직군에 관계없이 승진·전보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각 독립사업부제에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내 조정은 각 독립사업부제에서 시행 ○ 부회장은 회장이 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회장도 소관사업에 대해 대표권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회장의 대표권을 등기 ○ 소관사업에 대한 부회장 명의로 법률행위 ○ 회장의 추천, 이사회 선출, 총회(대의원회) 승인 ○ 부회장은 소관 직원에 대해 직급에 관계없이 인사권 행사 ○ 직군별로 채용 ○ 직군별로 승진·전보(모든 보직에 대해 직열을 부여) (좌동) ○ 부회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되 4년 임기중 2년 기간내 외부기관이 업무평가

□ 관련법 개정사항

- 부회장에 대한 대표권 부여, 부회장 선출방법 변경, 직원인사에 관한 규정, 부회장의 업무책임등에 대해서 농·축·임협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야 함

□ 장 · 단점 분석

< 장 점 >

- 종합경영체제의 시너지효과
 - 신용사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하여 지도·경제사업을 수행
 -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용이
 - 지도·경제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기여로 지자체등 공공예금 유치 유리
- 조직개편으로 인한 비용축소, 충격 완화
-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 회장의 단독경영에 따른 경영상의 위험 축소

< 단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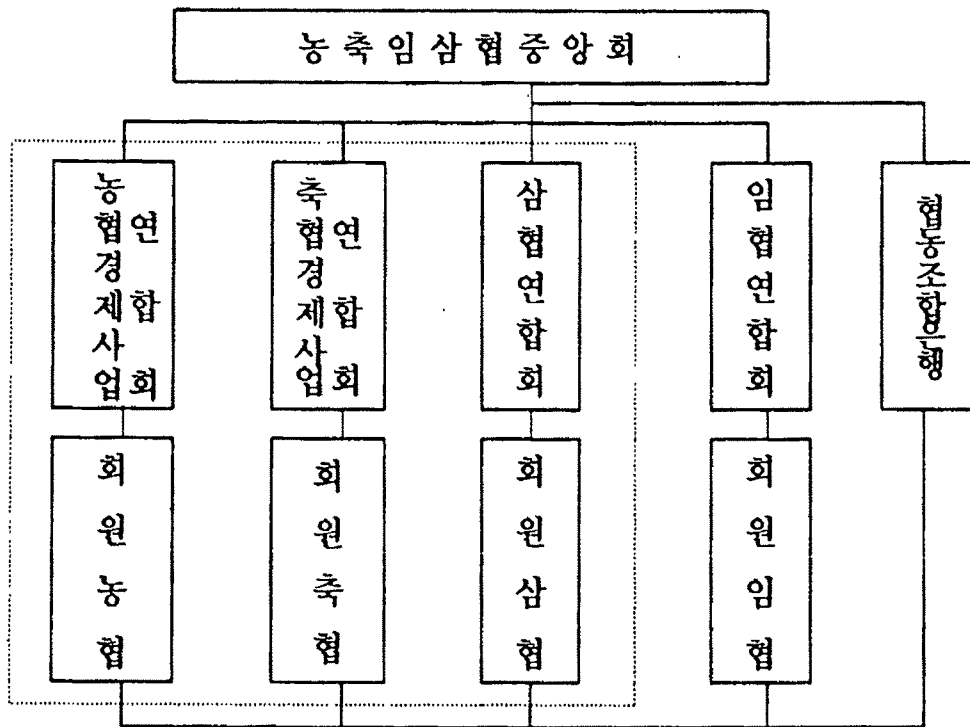
- 종합경영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상존
 - 조직비대화, 하향적 구조, 경영의 비효율성(전문성 발휘 미흡)
 - 신용사업에 치중, 경제사업에 소홀
- 신용사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수익의 재투자 미흡)
 - 수익의 재투자 미흡 우려
 -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동조합의 경쟁력 확보 미흡
- 지도·경제사업이 신용사업에 의존 지속
 - 경제사업 자립기반 자연 및 회원조합의 중앙회 의존
- 각 독립사업부간의 협조와 조정능력의 저하로 인한 종합경영체제의 사업역량 약화

“나” 안 : 기능별 분리·통합방안(협동조합은행, 각 경제사업 연합회, 농축임삼협중앙회 설립)

□ 조직개편의 방향

- 농정활동과 지도감독기능을 담당하는『농축임삼협중앙회』 설치
- 기존 각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국연합회』 체제로 전환
- 현행 각 중앙회 신용사업을 통합, 『협동조합은행』 설치

□ 조직체계



□ 조직의 특성

- 농축임삼협 중앙회
 - 조합과 연합회, 협동조합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한 비출자 특수법인
 - 농정활동, 협동조합간 협동 및 조정, 교육, 지도·감독 등
 - 이사회는 회원의 대표로 구성, 회장은 소속회원의 조합원중에서 선출,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담당

- 각 연합회(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임협연합회, 삼협연합회)
 - 기존 농·축·임·삼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전국연합회 체제로 전환, 농산물유통, 자재공급 등 경제사업을 담당
 - 농·축·삼협의 경제사업 연합회의 협력 및 통합방안 검토
 - 이사회는 조합장(2/3이상)과 전문경영인, 외부전문가이사(1/3)로 구성
 - 연합회장은 조합장중에서 선출하여 대표권 보유, 경영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전문경영인이 책임경영

- 협동조합은행
 - 회원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출자에 의한 특수은행
 - 은행(제1금융)업무, 상호금융연합업무, 공제사업연합업무, 정책자금 공급 등 금융관련 업무를 종합하여 담당
 - 이사회는 조합과 연합회의 대표와 외부전문가로 구성(관리이사회와 집행이사회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 이사회 의장은 조합 및 연합회 대표중에서 선임, 경영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선임한 은행장이 책임경영

□ 관련법 체계개편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연합회 및 지역조합, 전문조합, 농축임삼협중앙회 관련사항 규정
- 축산업협동조합법 : 축협연합회 및 지역조합, 업종 조합
- 임업협동조합법 : 임협연합회 및 지역조합, 전문조합
- 인삼협동조합법 : 삼협연합회 및 지역조합
- 협동조합은행법 : 협동조합은행의 설립·운영

□ 장 · 단점 분석

< 장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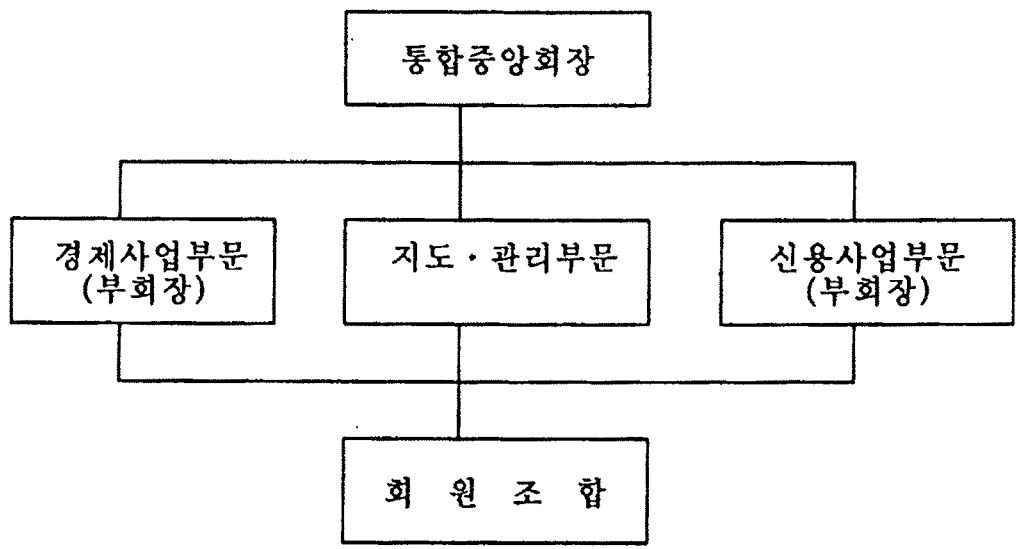
- 경제사업 전담조직체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구매·판매·가공사업의 전문화로 경쟁력 제고, 인건비 및 경비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 회원조합과의 결속력 강화로 주요품목의 수급조절 용이
- 신용사업의 전문화로 협동조합금융의 경쟁력 제고 가능
 - 조합원에 대한 지도금융의 조기구축과 질높은 금융서비스 제공
 - 일선 조합의 신용사업간 경쟁과 중복체제의 정비가능
- 단일 중앙회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조합원의 의사반영이 용이하며 농업인 권익대변 창구 일원화
- 중앙회를 통한 지도·감사기능 객관성확보 기대 및 조사연구·교육훈련기능의 집중화 가능

< 단 점 >

-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과 협동조합은행으로의 통합에 따른 조직내부 마찰 우려 및 새로운 조직의 신설에 따른 대외부담이 있음
- 종합경영 기능 약화에 따른 지도·경제사업 및 농촌부문에 자금의 적기공급 제약 우려
- 중앙회 및 연합회 운영비 조달을 위한 회원조합 부담 가중 우려

“다” 안 : 현행 각 중앙회를 1개 법인체로 통합, 독립사업부제 실시

□ 조직체계



□ 조직의 특성

- 농·축·임·인삼업으로 구분된 농촌의 각 산업별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을 1개의 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
-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경제·신용사업을 확 사업별로 통합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
-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각 회원인 각각 지역조합, 전문조합이 통합중앙회의 회원이 됨
- 4개 협동조합의 전문성 및 특성은 통합중앙회의 내부조직에서 그 효율적 방안을 제도화 함 .

※ “가”안의 부회장의 권한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

□ 장·단점

< 장 점 >

- 조직을 1개로 통합, 사업의 효율성 증대 기대
- 신·경분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
- 농정활동 용이
- 소비자유통에서의 공동판매 유리

< 단 점 >

- 조직의 비대화로 비능률 초래
- 이질적 산업의 통합은 산업의 전문화 추세에 역행, 전문적 서비스 기능 약화
- 이질적 구성원의 통합으로 내부갈등 우려
- 각 산업별 자금배분의 불합리성 초래
 - 특정부분에 자금편중 우려

2. 회원조합 구조조정

가. 합병등을 통한 조합의 규모화·광역화 촉진

1) 현 황

□ 조 직

○ 회원조합('97)

	농 협	축 협	임 협	삼 협
- 지역조합	1,286개소	146	143	-
- 전문조합	46	47	-	14
계	1,332	193	143	14

○ 조합원·준조합원 및 직원수('97)

	농 협	축 협	임 협	삼 협
- 조합원	2,029천명	283	474	31
- 준조합원	4,962	2,411	19	-
- 직원수	53,894	16,961	1,998	269

□ 사업규모('97)

	<u>농 협</u>	<u>축 협</u>	<u>임 협</u>	<u>삼 협</u>
	억원			
- 경제사업 (조합당평균)	163,003 (122)	41,959 (217)	2,815 (20)	146 (10)
- 신용사업 (조합당평균)	444,945 (334)	93,339 (489)	4,478 (42)	418 (30)
- 지도사업비 (조합당평균)	1,710 (1)	777 (4)	108 (0.8)	2.8 (0.2)

※ 경제사업은 매출액, 신용사업은 총수신고 평잔기준

□ 경영수지('97)

○ 조합당 손익('97)

	<u>농 협</u>	<u>축 협</u>	<u>임 협</u>	<u>삼 협</u>
- 총 조 수 익 (조 합 당)	24,342억원 1,827백만원	4,137 2,154	926 644	66 508
- 조합당 손익	100백만원	△90	93	42

○ 자본금 현황('97)

	<u>농 협</u>	<u>축 협</u>	<u>임 협</u>	<u>삼 협</u>
- 총 자 본 금 (조 합 당)	16,825억원 13억원	2,209 11	1,645 12	127 9
- 자산대비자본비율	2.5%	1.5	15.6	5.2
- 조합당 고정자산	30억원	80	10	19

2) 문제점

□ 조합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기능 취약

- 사업규모가 클수록 조합사업의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비능률 및 전문성 부족
 - 읍면단위 농협으로는 규모가 영세하여 효율적인 유통시설 운영이 어려움.

□ 조합의 경영기반 취약

- 조합의 자기자본 취약 및 과도한 고정투자
 - 자기자본을 초과한 고정자산투자와 고원가성 예수금의 고정자산 투자로 경영압박 요인
- 한정된 지역내 협동조합간 신용사업(상호금융)의 경쟁 치열
 - 지역농협, 지역축협, 전문농협, 업종축협, 인삼조합, 지역임협이 신용사업을 하고 있어 규모화가 어렵고 부실화 요인이 됨
 - ※ '95년 6월이후 설립된 전문조합은 신용사업을 하지 못함
 - 경제사업부문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대출목적으로 여러조합에 복수로 가입하는 사례
- 무자격조합원의 확대
 - 무자격자의 투표, 또는 임원피선으로 경영왜곡
- 각종 충당금 적립 부진

	농 협	축 협	임 협	삼 협	시중은행
- 퇴직급여	61.3%	60.6	42.0	39.6	85.6
- 대 손	36.3	34.0	5.0	0.6	94.8

□ 합병추진 실적 미흡

- 지역농협 합병추진을 위한 자금지원에 불구하고 합병추진 미흡
 - 소멸조합당 3-7억원 지원(5년 거치 1-3년상환, 무이자)
 - 합병계획 : 2001년까지 500개 농협으로 합병

	'97	'98	'99	2000	2001
소 멸	64	200	100	250	236
존 속	1,286	1,086	986	736	500

- 부실조합인수기피, 조합장등 임원의 반대, 소멸조합 조합원의 반대등

3) 개선방안

□ 지역농협 합병 강력 추진

- 1시·군 1개 조합 원칙으로 합병 강력히 추진
 - 시·군단위로 합병된 지역의 중앙회 시군지부의 지점화
 - 장기적으로는 신용부분도 합병조합에 이관 검토
- 대규모 조합원 보유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대해 1표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부가의결 및 선거권제 도입
- 합병추진을 위해 흡수조합에 대하여 자금지원등 인센티브 제공

□ 축협의 합병을 통한 광역화 추진

- 업종축협의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 1시·도 1업종조합으로 합병추진
- 지역축협을 한우전문조합 또는 종합축협으로 기능 강화
- 대규모 조합원 보유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대해 1표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부가의결 및 선거권제 도입
- 합병흡수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임협은 산림여건에 따라 구분 육성

- 평야지역 임협은 인접조합과 합병추진으로 광역화

□ 농·축·임협법에 이종조합간 합병의 근거마련

- 조합원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 합병촉진을 위한 경영평가제 실시

- 구성 : 중앙회 관계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농·축·임·삼협중앙회의 본부 및 시·도단위에 편성
- 평가기준 : BIS기준, 경영상태, 재무구조등 별도기준 마련
- 경영평가후 부실조합에 대한 조치방안
 - 부실의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합병권고, 자금지원중단, 인가취소, 해산등 조치
 - 부실원인에 다른 책임소재 규명후 손해배상 청구등 필요한 조치 강구

□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

- 무자격 조합원을 일정 정리기간(1년이내)을 정하여 준조합원으로 전환
 - 사후심사를 통해 정리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제재방안 강구
- 무분별한 준조합원 가입 억제 및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정리

나. 부실조합의 과감한 정리

1) 현 황

□ 부실조합의 개념

- 조합사업수행중 사고, 고정투자과다, 경영부실등으로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잠식하고 있는 조합

□ 부실조합수('97말)

	조합수(A)	부실조합수(B)	부실비율(B/A)
농 협	1,332개	25	1.9%
- 지역조합	1,286	25	1.9
- 전문조합	46	-	-
축 협	193	63	32.6
- 지역조합	146	30	20.5
- 전문조합	47	33	70.2

※ 적자조합수('97) : 농협39, 축협41

□ 부실원인

	사 고	매취판매 손 실	가공사업 부 실	고정투자 과 다	계
농 협	20개	1	2	2	25
축 협	2	21	7	33	63
- 지역조합	-	11	2	17	30
- 전문조합	2	10	5	16	33

2) 문제점

□ 조합임원의 과욕에 의한 무리한 사업추진

- 선거를 의식한 방만한 조합운영, 무리한 사업추진
-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전시효과적인 고정투자 등

※ 자본금 대비 고정자산 비율(평균) : 농협 2.3배 축협 7.2,
임협 0.8, 삼협 2.1

□ 경영개선 노력 미흡

- 인력감축, 비용절감등 자구노력 부족
- 경영부실조합도 조합장 퇴직시 퇴직공로금 지급, 직원에 대한 상여금 과다 지급사례 등

□ 조합의 경영기반취약 및 경영관리 능력 미흡

- 출자금 조성이 부진하고 신용사업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
 - 조합당 자본금 : 농협 13억, 축협 11, 임협 12, 삼협 9
 - 자기자본 잠식조합 증가
 - 농 협 : ('95) 11개 → ('97) 26
 - 축 협 : ('95) 55개 → ('97) 63
- 조합장 및 간부직원의 경영관리능력 미흡
 - 자율경영에 상응하는 임직원의 책임경영의식 부족
 - 집행부에 대한 내부건제기능 미흡
- 조합규모의 영세성
 - 농협의 경우, 1읍면 단위조합이 952개(전체의 74%), 조합당 평균직원수 40명

3) 개선방안

□ 조합경영기반 확충

-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자기자본 확충
 - 가입금 및 출자금 상향조정 및 추가출자
 - 각종 충당금의 내부유보 확대
- 복수조합원제 활성화
 - 여성농업인 및 농업경영인(후계자)의 조합원 가입 및 사업참여 적극 유도
- 생산위주인 영농조합법인의 가입요건을 준조합원에서 정조합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조합업무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조합과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보완 관계로 지도 육성

□ 부실조합의 과감한 정리 및 책임경영 강화

- 조합경영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부실정도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 합병권고, 인가취소, 해산 등 실시
 - 이를 위해 중앙회에 경영평가단 구성
 - 자본잠식조합, 2년이상 연속적자조합등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
- 부실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 사업실명제 도입
 - 임원에 대한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조합장(상임이사 포함) 임기내 중간평가 실시
 - 4년중 2년내 중앙회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중간경영평가를 거쳐 총회보고 의무화

□ 경영부실조합의 경영혁신 추진

-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혁신 계획수립 추진
 - 인력감축, 예산절감 등 경영개선지표 부여
 - 경영개선 이행사항 평가에 따른 자금차등 지원 등
- 경영부실조합의 조합장 퇴직공로금 지급유보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지급

□ 부실조합에 대한 합병권고제 적극 실행

- 자기자본을 잠식한 조합에 대하여 조기 합병권고 실시
- 인수조합에 대해 합병촉진 자금지원
- 합병권고 불이행시 중앙회 자금지원 축소 및 중단
- 권고불이행 조합임원에 대하여 제재조치 강구(손해배상책임 등)

□ 중앙회의 조합 조정기능 강화

- 정책사업 및 중앙회 지원 사업계획 사전 심의 등
 - 고정투자의 조정 및 심의기능 강화 등

□ 농림부의 감독권 강화

- 농림부에 협동조합 총괄부서를 두는 방안 검토

다. 조합원 과소조합의 기능 재정립

1) 현 황

□ 대도시 지역의 경지면적 감소로 조합원 과소 조합발생

○ 대도시 조합현황(농협)

	전 국	7대 도시	점유율(%)
조 합 수(개)	1,286	53	4.1
조합원수(천명)	1,954	60	3.1
직 원 수(천명)	52	6	11.5

○ 조합설립기준 : 1,000명 이상

- '94.12이전 : 50명 이상

2) 문 제 점

□ 조합원 과소조합 발생

○ 서울시 12개 조합중 조합원 1,000명이하의 조합이 10개

- 경서농협은 349명

- 서울축협은 631명

○ 비농업인 조합원의 탈퇴기피

-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다라도 조합시설 이용이나 대출목적 등으로 탈퇴는 하지 않고 있음

□ 준조합원의 증대

○ 신용사업 확대를 위하여 준조합원의 가입급증

○ 서울지역 경우 : 조합원 10천명, 준조합원 196천명

3) 개선방안

□ 대도시 조합의 합병을 통한 소비지조합으로서의 기반 확충

- 대도시 중심지역 소재 조합과 관내 외곽지역 조합과의 권역별 합병추진
- 도시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의 협력방안 강구

□ 대도시 조합의 유통사업의 전문화 유도

- 산지조합과 연계하여 직거래 등 유통사업 강화
 - 산지생산 농산물의 판매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의 거점역할수행
 -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농협법내에 대도시 농협에 대한 별도규정 검토
 - 소비지 농산물 판매역할 규정 등

□ 무분별한 준조합원 가입 억제

-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정리 등

3.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연합회 기능강화

가. 현 황

- 전문조합수('97말) : 농협105, 축협56, 임협1
 - '94협동조합법 개정시 1구역1조합 설립원칙 폐지, 설립요건 완화
 - '94법개정이후 신규설립(총 20개) : 농협13, 축협6, 임협1
 - 전문조합연합회 설립
 - '94협동조합법 개정시 설립근거 규정 신설
 - 설립기준 :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지역간 설립
 - 설립목적 및 기능
 - 품목별 생산, 출하조정, 시장개척, 자조금적립등 공동활동 수행
- ※ 전문조합 운영기반 취약 등 연합회 설립여건 불비로 품목별 전국 협의회를 운영(농·축협)
- 품목별 전국협의회 운영

	채 소 류	과 실 류	화훼특작류	축 산	계
협의회수	7	9	4	5	25
회원 수	627	230	176	57	1,090

※ 회원구성 : 전문조합, 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등

나. 문제점

- 전문조합 경영취약
 - 사고발생, 경영기반취약, 가공사업부진등으로 전문조합 부실증가
 - 축협외의 경우('97말) : 47개 전문조합(회원조합)가운데 33개 조합이 자본잠식(부실율 70.2%)
 - 단일작목취급, 시설투자과다, 재해 등에 따른 경영위험증가
- '95년 6월이후 신설된 전문조합의 운영자금 조달 애로
 - 신용사업의 불허로 사업활성화 애로
 - 출자금을 통한 자금조달의 한계
- 전문조합연합회 설립여건 미비
 - 전문조합 설립의 활성화가 미흡하고 운영기반도 취약
 - 주산단지에 품목별 전문조합보다는 지역조합이 실질적인 역할

다. 개선대책

- 신설된 전문조합의 자금조달 방안 강구
 - 중앙회의 자금공급기능 부여, 수신업무만 허용 검토 등
- 품목별(업종별)전문조합의 운영활성화 등 경영기반 확충 진전에 따라 전국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4. 협동조합간 협력체제

가. 현 황

- '94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수·축·임협중앙협의회」 운영의 근거 마련
- 설치목적 및 구성원
 - 농림수산부문 협동조합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 농·수·축·임협중앙회장으로 구성
- 주요기능
 - 대정부, 국회 등에 대한 농정건의
 - 협동조합간 협동화사업 추진
 - 국제협력, 통상, 외교 등 활동
- 운영방법
 - 비법인 상설기구 형태의 협의체(사무국 설치 운영)
 -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나. 문제점

- 유통, 가공등 경제사업의 공동사업 활성화 미흡

다. 개선대책

- 중앙회 조직체제가 “가”안 일 경우
 - 회장의 부회장, 집행간부등 실무책임자간의 협의회 활성화
 - 도단위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유통부문의 공동출자 등)
 - 유통자회사에 대한 상호출자 방안 검토
- 중앙회 조직체제가 “나”안 일 경우
 - 「농축임삼협중앙회」가 농정활동 수행
- 중앙회 조직체제가 “다”안 일 경우
 - 「통합된 중앙회」가 농정활동 수행

② 협동조합 경영관리 체제

1. 책임경영체제 확립

가. 현 황

□ 회원조합

- 조합장은 명예직이나 조합의 대표권외에 실질적인 경영권까지 보유
 - 업무총괄 · 집행권, 직원인사권 등
- 조합경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94협동조합법 개정시 상임이사제 도입
 -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업무집행권 보유 (업무총괄 · 인사권은 조합장)
 - 상임이사는 조합장 추천, 이사회 동의, 대의원회에서 선출

< 상임이사제 운영현황 ('97. 12말) >

	회원조합수	상임이사제 운용조합	비율
농 협	1,332개	13	1.0%
축 협	193	11	5.7%
임 협	143	9	6.3%

※삼협은 상임이사제 미실시

- 조합장은 법령위반에 의한 형사상 책임외에 손해배상책임과 조합원에 대한 책임(해임대상)을 지고 있음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
 - 총회(대의원회)의 해임의결 : 조합원 3분의1이상의 해임 발의에 의해 조합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 중앙회

- 회장은 상근직으로서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
 - 업무총괄권 및 집행간부(상무)와 간부직원의 인사권을 행사
 - 경제·신용사업의 집행은 부회장 2인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
 - ※ 임협·삼협은 신용사업 미실시로 부회장 1인
- 중앙회장의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하여는 조합과 동일

나. 문제점

□ 회원조합

- 조합장에게 경영권이 집중되어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 경영이 미흡한 사례가 많음
 - 인기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조합경영의 부실화 초래
 - 선거과열의 원인제공
- 조합경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전문경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전문경영인 확보 곤란, 직선조합장의 경영참여 욕구
 - 상임이사의 실질적 경영권 확보 미흡

□ 중앙회

- 부회장 중심의 독립사업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회장이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회장의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움
- 회장이 부회장을 임면함에 따라 부회장의 독립성 약화
 - 엄격한 독립사업부제 실시와 책임경영에 한계

다. 개선방안

□ 회원조합

- 상임이사제 실시 확대
 - 조합원수, 사업규모 등을 고려 일정규모 이상 도입 의무화
 -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방안 검토
 - ※ (소수의견)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조합에 한하여 조합장의 정치 활동 허용방안 검토
-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강화
 - 상임이사제 실시 여부에 따라 조합장 책임요건을 차등화
 - 조합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직무를 태만히 한 때”로 변경하는 방안(경과실 포함)으로 법개정

※ 일본농협법 :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포함(§33)

< 제33조(이사의 직무) >

- ② 이사가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③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상법 : 임원의 책임요건에 경과실(직무해태) 포함(§399)

<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경영평가 실시로 책임경영체제 확립
 - 임기만료전에 중앙회 등 외부기관의 경영평가실시와 총회에 보고토록 정관에 의무화
 - 조합장 인수인계시 경영평가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는등 철저한 인수인계실시
 - 경영평가가 나쁠시 연임 및 중앙회 임원 진출금지방안 검토
- 회원조합의 경영책임자(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징구
- 임원의 해임요건은 특별결의체제로 현행유지

□ 중앙회(중앙회 조직개편과 연계 검토)

○ 조직체제가 “가”, “다”안 일 경우 : 사업부문별 전문경영인체제

- 부회장의 권한 확대
 - 전문경영인에게 소관 부문별로 독립적인 대표권 행사
 - 소관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전면 행사
- 전문경영인의 독립성 강화
 - 부회장 선출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대의원회) 승인
- 부회장의 경영책임 강화
 - 임기중 외부기관의 중간업무평가제 도입

※ (소수의견) 전체를 통괄하여 경영을 전담할 전문경영인 회장 및 경제·신용·지도 사업부문별 전문경영인 부회장과 조합원 출신 이사장 체제가 바람직함

○ 조직체제가 “나”안일 경우 : 각 기관별 전문경영인체제

- 각 경제사업 연합회 : 부회장 또는 전무이사제

※ (소수의견) 경영을 전담할 전문경영인 연합회장과 조합원 출신 이사장(관리기능과 대표기능담당)체제가 바람직함

- 협동조합은행 : 은행장
- 농축임삼협중앙회 : 부회장 또는 전무이사제

2. 이사회 기능 활성화

가. 현 황

□ 이사회 의 성격

-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
 -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의 직접적인 집행은 업무집행권자(조합장, 회장)가 행함

□ 이사회 구성

< 회원조합 >

- 조합장 1인
- 이 사
 - 농협 6~14인, 축협 6~10인, 임협 6~9인, 삼협 7~12인
 -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자율결정

< 중앙회 >

- 농협중앙회 : 회장 1, 부회장 2, 이사 15인 이상
 - 정 관 : 조합장이사 12인, 학경이사 3인
- 축협중앙회 : 회장 1, 부회장 2, 이사 15인 이상
 - 정 관 : 조합장이사 13인, 학경이사 2인
- 임협중앙회 : 회장 1, 부회장 1, 이사 11인 이내
 - 정 관 : 조합장이사 9인, 학경이사 1인
- 삼협중앙회 : 회장 1, 부회장 1, 이사 15인(전무이사 1인)
 - 정 관 : 조합장이사 14인

□ 이사의 자격 및 선출

< 회원조합 >

- 자격 :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2년이상 계속보유 등(상임이사 제외)
- 선출 :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

< 중앙회 >

- 자격 : 회원조합장(학경이사 제외)
- 선출 :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

□ 이사회 의결사항

< 회원조합 >

-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락
- 법정적립금의 사용
- 차입금의 최고한도
-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 간부직원의 임면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및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등

< 중앙회 >

- 조직, 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 중장기 사업계획
- 총괄 자금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독립사업부간의 업무조정 등

나. 문제점

□ 회원조합

- 이사는 농업인(조합원) 중에서 선출함에 따라 조합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짐
- 이사정수의 제한으로 다양한 대표 선정상 어려움
 - 특히 합병조합의 경우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이사수 확대 필요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이사회의 정수만 규정이 되어 있어 직능대표의 이사회 구성등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미흡

□ 중앙회

- 이사회 구성원중 2/3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함에 따라 회원조합의 의사반영에는 도움이 되나 의사결정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짐
- 이사가 지역대표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전체적 관점의 의사결정 미흡

다. 개선방안

□ 회원조합

○ 이사회 전문성 강화

- 일정규모이상의 조합은 원외 이사제 도입 검토
- 이사피선후 조합업무 및 이사회 기능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

○ 이사회 대표성 강화

- 이사정수의 조정 검토
 - 1안 : 정수의 상한선 확대 : 20인이내
 - 2안 : 정수의 상한선 폐지 : 6인이상
- 적능대표 및 여성에 대한 이사수 할당제 도입
 - 정관에 품목별(업종별)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일정 이사수 배분

□ 중앙회(중앙회 조직개편과 연계 검토)

- 관리이사회, 집행이사회제 도입 방안, 현행 이사회에 집행간부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 지역본부장을 조합장중에서 선출하여 중앙회 이사로 참여시키는 방안등을 검토

3. 임원선출제도 개선

가. 현 황

□ 회원조합

○ 임원선출 방법

- 조합장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와 대의원회의 간접선거 방법중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함

· 농·축협 : 대부분 직접선거, 임·삼협 : 간접선거(대의원회)

- 이사·감사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

○ 임원자격 (상임이사 제외)

-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한 자

- 선거공고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하지 아니한 자

- 조합직원, 공무원등 겸직금지자의 사퇴시한 : 임기만료 90일전

「참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겸직금지 대상자 사퇴시한 개정('97.4)

· 종전 : 임기만료 90일전

· 개정 : 임기만료 60일전

· 관련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 중앙회

○ 임원선출 방법

- 회장 및 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대의원회 불가)

- 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

○ 임원자격

- 회 장 : 조합원

- 조합장 이사 및 비상임감사 : 조합장

- 상임감사 및 학경이사 : 제한없음

나. 문제점

□ 회원조합

- 선거과열로 부조리와 조합원간 갈등 등 부작용
- 조합장 선출방식은 조합사정에 따라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로 신축성있게 함이 바람직하나 변경요건이 까다로움
 - 변경요건 : 조합원 2/3이상 출석, 2/3이상 찬성(총회 또는 조합원투표)
- 조합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이 미흡

□ 중앙회

- 회장의 자격을 조합원으로 함에 따라 투표권자(조합장)과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일부주장

다. 개선방안

□ 회원조합

- 조합장 선출방식
 - 직선 또는 총회(대의원회)선출, 이사회 호선중 조합자율 방안 검토
- 조합장 자격요건 강화
 - 조합원 신분보유 기간 확대 방안 검토(현행2 → 5년)
- 조합장 선출방식 변경절차 완화방안 검토
 - 1안 : 대의원회에서 2/3이상 출석, 2/3이상 찬성
 - 2안 :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 조합장선거 운동방법 개선
 - 경영능력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 도입 검토

□ 중앙회

- 회장 출마자격
 - (1안) : 현행(조합원) 유지
 - (2안) : 조합원에서 조합장으로 전환

4. 여성조합원 참여 확대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94협동조합법 개정시 복수조합원제 도입

- 조합원 가입자격을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동일가구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복수 조합원 가입기준
 - 동일가에서 가구원이 각각의 경영책임을 가지고 업종을 달리 하는 경우(예: 남편은 경종업, 부인은 축산업을 경영시)
 - 농업인후계자, 전업농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지정 또는 양성하는 후계세대 가구
(예: 남편이 농업인후계자로 지정된 후계세대 가구의 경우 부인도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할 때)
 - 동일가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가구원이 55세 이상이거나 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
(예: 농업인인 부인, 아들, 며느리 중 1명 추가 가입가능)

□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욕구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여성조합원의 조합운영 참여기회가 극히 미흡

- 농협의 경우
 - 복수조합원수 : ('96) 6천명 → ('97) 14
 - 여성조합원수 : ('96) 224천명 → ('97) 267
 - 여성임원수 : 이사 11명, 감사 1
 - 여성대의원수 : 11개 조합 24명

나. 개선방안

□ 복수조합원제에 의한 여성조합원 가입 확대

- 복수조합원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홍보 및 조합원가입 권고
- 여성조합원 가입추진 실적을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여성조합원의 가입확대를 위한 복수조합원 가입요건 완화검토

- 동일가구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여성조합원의 조합운영 참여 확대

- 여성의 임원 및 대의원 참여 확대 운용
- 작목반, 영농회, 부녀회 등 협동조직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 확대

③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체제

가. 현 황

□ 회원조합의 자체감사

- 비상임감사 2인을 두고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 감사의 권한은 감사권, 부정사실 총회보고권, 이사회 의견진술권, 임시총회 소집권 등임

□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

- 주무부장관의 위탁에 의한 감독
 - 조합에 대한 검사권
 - 조합에 대한 일상업무 감사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권
 - 조합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요구권(직접 징계권 없음)
 - 전문조합의 구역조정권
 - 조합청산사무의 감독권
- 중앙회장의 지도권에 의한 감독
 - 회원조합에 대하여 일반(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실시
 - 신용·경제·공제 등의 업무전반과 회계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 회원조합의 업무에 관한 규정의 시달과 필요한 지시

< 중앙회 지도·감사현황 >

- 농·축·임협중앙회의 지도감사 인원과 예산규모('97)
 - : 인원 208명, 예산 10,411백만원
- 지도감사수행은 주로 시·도지사사무소의 인력이 담당
 - : 조합당 격년에 1회씩 감사

<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도감사 현황 >

구 분	농 협	축 협	임 협	계
지도감사인력	148명	49	11	208
(본부인력)	(23)	(17)	(2)	(42)
감사대상 사무소	3,255개	1,043	150	4,448
(본 소)	(1,332)	(193)	(143)	(1,668)
(지 소)	(1,923)	(850)	(7)	(2,780)
정기감사 주기	본소: 2년1회 지소: 3-4년1회	2년1회	2년1회	
감사일수	4-6일	6일 이내	2일	
감사분야	업무, 회계전반	업무, 회계전반	업무, 회계전반	
감사인력 인사관리 독립여부	통합운영	통합운영	통합운영	
지도감사 인건비 및 경비 (백만원)	7,030	2,961	420	10,411
감사비용 조합부담	없 음	없 음	없 음	

□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

○ 주무부장관의 포괄적 감독권

- 협동조합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되, 신용사업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
- 감독상 필요한 조치 :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등 행정조치, 정관 변경의 인가, 검사, 보고접수 등

○ 중앙회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회로부터 국정감사

○ 감사원 감사

-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정부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해당 보조 목적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

○ 은행감독원 감사

-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은감원이 감사

< 지도감사 실시 현황 >

- 농·축협중앙회는 농림부가, 임협 중앙회는 산림청이 년1회 정기 감사 실시
- 감사원은 농·축협중앙회에 대해 격년주기로 1회 실시, 임협중앙회는 산림청 감사기간중 실시
- 은행감독원은 년 1회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실시
- 국회는 정기국회중 감사

나. 문제점

□ 회원조합 자체감사 문제점

- 감사의 비전문성, 교육훈련 부족
 - 감사는 비상임으로 회계와 감사지식이 부족하나 중앙회 차원의 교육이 거의 없음
 -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사회와 대등한 감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회의체 기관이 아닌 독임제 기관임
- 중앙회 지도감사와 유기적 관계 미흡
 - 중앙회 지도감사결과가 조합장에게만 통지 의무

□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지도감사의 문제점

- 중앙회에서 시달한 규정과 지시를 불이행한 조합, 위법행위 임직원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불가
 - 조합장 등 임원은 징계가 불가능
 - 조합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만 가능
- 지도감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객관성 미흡
 - 중앙회는 회원조합과 관련된 신용,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객관성, 독립성면에서 한계
- 지도감사 비용의 중앙회 의존
 - 지도감사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상 조합에서 부담함이 원칙
- 전문성 부족
 - 지도감사 인력의 순환보직으로 전문화가 어려움

□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상 문제점

- 자주적 생산자단체에 대해 정부감독을 강화할 경우 자율성 침해
- 농림부, 재경부, 감사원, 은감원, 국회 등 감독기관의 다원화
- 중앙회 사업과 운영에 대한 지도감사 미흡
- 주무관청의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 취약

다. 개선방안

1) 제1안 : 현행체제 유지보완(감사기능 강화)

- 조합의 외부감사 결과의 총회보고를 의무화
 - 조합 외부감사시 자체감사 입회 및 결과 통지 의무화
 - 외부감사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가 총회부의권 부여

- 자체감사의 전문성 확보
 - 일정규모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상임감사제 도입
 - 일정규모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감사회(조합원 또는 외부 전문가)도입
 - 감사요원의 교육훈련강화

- 감사기능의 효율성 제고
 - 2년 1회이상 감사체제 확립

- 감사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자체감사 주관의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뢰권 부여
 - 관련법령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자산총액이 60억이상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함

- 중앙회의 경영평가를 제도화
 - 중앙회에 경영평가단을 구성
 - 예측가능한 평가시스템을 조기 구축
 - 경영평가와 지도감사를 연계하여 경영방향 제시

- 중앙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폐지 건의를 검토

< 제1안의 장·단점 >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특성에 부합되는 자율적 감독체제 유지 ○ 상임감사제 도입등으로 자체 감사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 사업추진과 연계한 효율적 지도·감독 가능 ○ 자체감사의 기능강화로 감사의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감사의 객관성, 투명성 부족 ○ 조합 자체감사의 전문성 미흡

2) 제2안 : 감사기구 설치

조합의 자체감사기능 강화

- 감사회, 대규모조합 상근감사 설치 검토

지도감사와 자체감사회 결합력 제고

- 지도감사 수행시 자체감사의 동석, 지도감사결과 감사회 통보

감사기구(안)

- <2-1안> : 농림수산업 협동조합 감독위원회 설치 방안

- 주요기능

- 농·수·축·임·삼협조합에 대한 지도감사 기능을 통합하여 독립시킴
- 여기에 각 중앙회의 사업운용(신용사업은 제외)에 대한 지도감사 기능

- 인력 및 시설

- 중앙회 지도검사인력 및 시설·자산 이관

○ <2-2 안> : 농림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설치 방안

- 주요기능

- 일본의 농협중앙회와 같이 각 협동조합의 연합조직을 설치
- 2-1안의 기능과 농정협력, 영농지도, 직원교육훈련 등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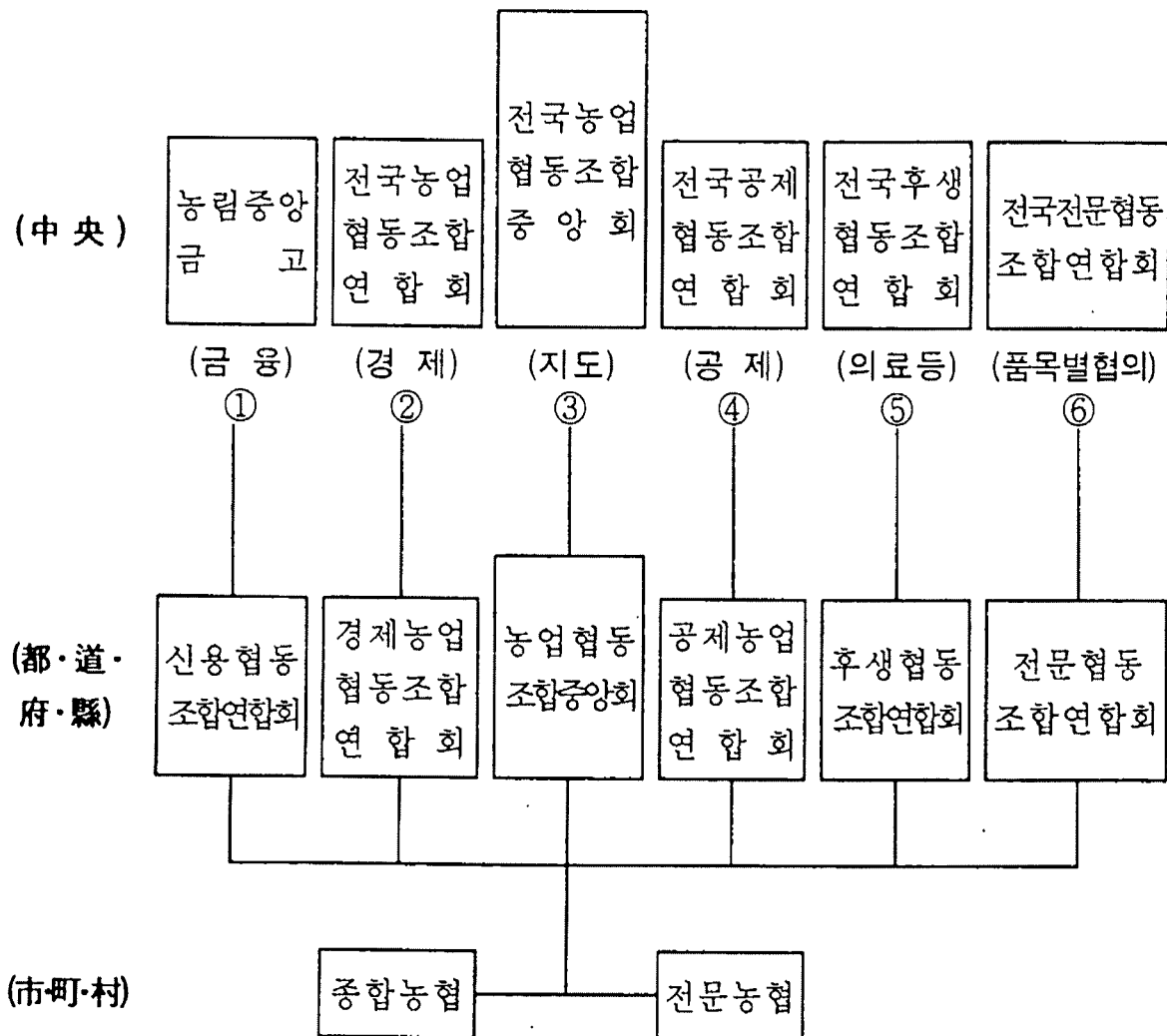
< 제2안의 장·단점 >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감사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 ○ 지도감사의 전문화로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기능 제고 ○ 중앙회에 대한 객관적인 지도감사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상임감사제 도입등으로 자체감사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 자체감사의 기능강화로 감사의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기관 설치에 따른 비용발생 및 조합 부담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기획부서 및 도지회 설치에 따른 인적, 물적비용 추가 ○ 중앙회와의 사업연계에 따른 필수 업무인 중앙회의 지도·감사업무와 중복 ○ 사업추진과 연계한 효율적 지도·감독기능 미흡 ○ 감사비용의 조합부담, 조합의 감독위원선임 관여등을 고려할 때 동기구의 독립성·객관성에 의문

<참고1>

일본의 농협운영 체계

가. 운영체계



※ 정책자금 취급을 위해 “농림어업금융공고”가 있으며 어협, 삼림조합이 별도 설립되어 있음

< 일본농협의 조직과 기능 >

中 央 : 기능에 따라 6개 조직으로 분산

- ① 농림중앙금고(農林中金) : 신용사업
- ②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全農) : 경제사업(판매·구매)
- ③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全中) : 지도사업과 전국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 ④ 전국공제협동조합연합회(全共連): 공제사업
- ⑤ 전국후생협동조합연합회(全厚連): 의료·식생활개선등
- ⑥ 전국전문협동조합연합회 : 품목별 협의

都·道·府·縣 : 중앙의 조직과 기능에 맞춰 6개로 구성

- ① 신용협동조합연합회(信連) : 신용사업
- ②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經濟連) : 경제사업
-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中央會) : 지도사업, 농정활동
- ④ 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共濟連) : 공제사업
- ⑤ 후생협동조합연합회(厚生連) : 의료등
- ⑥ 전문협동조합연합회 : 품목별 협의

市·町·村 : 전국에 5,985개의 조합

- 지역농협은 「전문농협」과 「종합농협」으로 구분
- 생산 및 생활개선 지도사업
- 조합원에 대한 저금·정기적금등 신용사업
- 경제사업(구매·판매사업)
- 공동시설(유통시설, 생활편의시설등)이용사업

※ 전문농협은 신용·공제사업이 없음.

나. 일본농협의 조직개편 추진내용

□ 조직상 문제점

- 조직 3단계에 따른 유통, 금융비용 증가 등 고비용 구조
- 전국련·현련의 사업별 조직에 따른 일부기능 중복
- 단위조합의 영세

※ 현재 조직의 탄생 배경

- 전국연합회도 종전(45년)까지는 종합경영체였으나 맥아더 진주군 사령부의 강력한 방침에 의거 사업별 연합회로 분리됨
- 그러나 자체적인 연합회 조직통합을 추진하여 72년에 전국구매련과 전국판매련을 통합, 오늘날의 전농(全農)을 만들

□ 개편 추진방향

- 전국단위·현단위의 연합회를 유사기능별로 통합
 - 현연합회 통합의 전단계로서 현연합회 공동임원제 도입
 - 일부 전국련(전중, 신문연합회, 이에노히까리 등) 통합 움직임
- 조직2단계를 원칙으로 함
 - 광역합병으로 일정규모이상이 된 조합은 현연합회를 거치지 않고 전국연합회와 직접 연결
 - 현연합회를 전국연합회에 통합(흡수합병)
- 광역합병조합의 독립사업부제 실시

<참고2>

외국 협동조합의 사업운영 체계

가. 각국은 그 역사성에 따라 서로 상이한 협동조합 사업체제를 보유

① 네덜란드형(프랑스형)

- 단위조합 및 중앙조직에서 모두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
- 경제사업조직은 신용사업조직의 중요한 고객이나 특별한 자금지원 없음

② 독일형

- 단위조합에서는 경영과 분리가 혼재하나 경제사업이 분리되는 경향
- 중간 및 중앙단위에서는 분리
- 신용사업의 중앙조직은 은행으로서 농업협동조합뿐 아니라 중소기업, 생활협동조합등 신용사업을 하는 모든 형태의 단위협동조합의 중앙은행임

③ 일본형

- 단위조합에서는 경영
- 중간 및 중앙단위에서는 분리
- 단위농협에서 경제사업의 적자를 신용사업이 보전

④ 대만형

- 단위조합 및 중간조합은 경영
- 단위농협에서 경제사업의 적자를 신용사업이 보전
- 중앙조직은 지도사업만 담당
- 중앙에 독립적으로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존재

나. 중앙차원에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단위조합에서는 분리(유럽) 또는 겸영(아시아) 체제임

- 경제사업 중앙조직의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단위조합이 부담

다. 유럽의 농협체제와 아시아의 농협 체제간의 차이점

< 유럽 >

- 네덜란드, 프랑스등에서는 중앙뿐 아니라 단위조합에서도 경제사업이 신용사업과 분리, 신용사업의 보조없이 재정적으로 자립
 - 유럽에서 경제사업이 신용사업과 분리된 형태로 발달한 것은 협동조합 발생 태생에 비롯된 것이며 경제사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
- 독일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최근 분리된 것은 경제사업 추진단위의 대형화가 성공요인이 되는 현실에 따름
 - 독일의 경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이미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경제사업의 분리 자체가 전문성을 제고시킨 것은 아님

< 아시아 >

- 아시아 농협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겸영되고 있는 것은 농협 경제사업의 취약한 기반 때문
- 경제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경우, 신용사업에서 이를 보전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여 백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중앙정부	지방비	사업자부담
합 계	450,526	378,384	47,169	24,973
1.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확충 - 배수개선·용수개발, - 친환경농업육성 - 산림자원 확충 등	150,055	131,776	13,991	4,288
2. 농업경영체 육성 - 교육 및 훈련 - 경영체 지원 등	74,822	62,633	1,862	10,327
3.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 - 기술개발 및 정보화 - 농림업관련 산업 육성 - 품목관련 일반지원 등	24,038	21,059	2,058	921
4.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 농림산물 유통개혁 - 수출농림업육성 등	93,750	77,276	7,626	8,848
5. 지역개발과 복지확충 - 복합산업 공간화 - 농촌생활환경개선 - 농촌복지확충 등	77,912	55,691	21,632	589
6.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자금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 농업인 부담경감 등	29,949	29,949	-	-

※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은 '99. 2. 22 총규모를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실천계획은 관련부처와 관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임

여 백

참 고 자 료

1. 3개 개혁위원회 활동 경과 195
2. 3개 개혁위원회 위원 및 실무작업 참여자 ... 200

여 백

<부록 1>

3개 개혁위원회 활동 경과

농정개혁위원회

일 자	주 요 추 진 사 항
'98.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농정개혁위원회 발족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장 : 차관, 김호탁 서울대교수 - 위원 :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학계, 관련 부처 공무원등 26명 - 안건 : 농정개혁위원회운영방안, 작업방향 및 향후계획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실무협의회 위원, 사업담당과장, 실무작업반 - 안건 : '99 농림예산 편성 조정지침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실무협의회 위원, 사업담당과장, 실무작업반 - 안건 : 주요 농림예산사업 효율화 방안 '99 농림예산 편성방향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농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 안건 : 농촌투융자사업의 효율화계획(안)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실무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실무협의회 위원, 사업담당과장, 실무작업반 - 안건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경영혁신을 선도할 농업경영주체 육성 농업기술혁신 추진체계 개편 농촌지역개발 촉진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실무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실무협의회 위원, 사업담당과장, 실무작업반 - 안건 : 주곡의 안정적 자급과 식량안보강화 농업경영 및 유통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수출농업의 체계적육성으로 농업활로 개척 21세기 농업통상·통일농정 적극전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의료·연금등 복지확충

일 자	주 요 추 진 사 항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농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농정개혁위원회 위원(25명) - 안건 : 농업·농촌발전계획(1차초안) ○ 제5차 실무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실무협의회 위원, 사업담당과장, 실무작업반 - 안건 : 농조·농조연·농진공 조직합리화 방안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실무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실무협의회 위원, 사업담당과장, 실무작업반 - 안건 : 농업생산기반 관련 조직의 효율화 방안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농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농정개혁위원회 위원(24명) - 안건 : 농업생산기반 관련조직의 효율화방안
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실무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실무협의회 위원, 사업담당과장, 실무작업반 - 안건 : 「농업·농촌기본법」 입법계획 「농업·농촌발전계획」 최종안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농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농정개혁위원회 위원(22명) - 안건 : 농산물 유통개혁방안, 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업·농촌발전계획(안)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개혁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농정개혁위원회, 유통개혁위원회 및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위원(64명) - 안건 : 3개 개혁위원회의 건의서 제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일 자	주 요 추 진 사 항
'98.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발족회의 - 공동위원장 : 차관보, 김완배교수 - 위원 : 농민,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유통인, 학계, 관계 등 28명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대책 과제종합 발표회 - 참석 : 공동위원장, 대책반장 및 반원 - 안건 : 유통개혁과제(30대과제) 검토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대책 방향 조정 회의 - 참석 : 공동위원장, 왕성우교수, 허길행연구위원, 대책반장 및 감사 - 안건 : 각 과제별 개혁방안 협의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의 물류센타 전환방안 협의 - 참석 : 공동위원장, 유통정책국장, 관계시 부시장 - 건설중인 수도권도매시장(성남·일산)의 물류센타 전환 검토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실무작업반 회의 - 참석 : 공동위원장, 최락환·최규섭교수, 최장호 한국유통연구원장, 한농·전농관계자, 대책반장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 참석 : 유통개혁위원 - 안건 : 유통개혁대책(시안) 협의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소위원회 - 참석 : 공동위원장, 허길행·왕성우 위원, 대책반장 등 -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산지유통 개선방안 협의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유통개선 대책 회의 - 참석 : 공동위원장, 대책반장, 축산국·과장 - 안건 : 축산물 유통의 현안사항 협의

일 자	주 요 추 진 사 항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소위원회 - 참석 : 공동위원장, 허길행·왕성우 위원, 대책반장 - 안건 : 유통개혁대책(시안) 검토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 참석 : 유통개혁위원 - 안건 : 유통개혁대책(시안) 협의
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대책 공청회(중앙) - 주관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주제 :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 발표 : 김동일 이대교수의 2명 - 토론 : 김준규 전농 사무총장의 7명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소위원회 - 참석 : 공동위원장, 왕성우·허길행 위원, 황장수 한농연회장, 대책반장 - 안건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및 산지유통 혁신 협의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개혁대책 공청회(지방:대전) - 주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제 : 농산물유통개혁대책(안) - 토론 : 김철호 충남대교수의 10명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 주관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발표 : 김병률외 2 - 토론 : 황장수외 10 ○ 제4차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 참석 : 유통개혁위원 - 안건 : 유통개혁대책(안) 최종마무리 협의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일 자	주 요 추 진 사 항
'98. 4. 13	○ 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회의 - 협동조합 개혁방향 토의
4. 28	○ 제2차 회의 - 협동조합 개혁과제 보고 및 선정
6. 9	○ 제3차 회의 - 협동조합 구조조정방안 협의
6. 16	○ 제4차 회의 - 협동조합 경영관리 및 지도·감독체제 개선
6. 27	○ 제5차 회의 - 협동조합 개혁방안 협의(전체과제)
7. 2	○ 제6차 회의 - 협동조합 개혁방안 협의(전체과제)
7. 23	○ 제7차 회의 - 협동조합 개혁방안 마무리를 위한 전체회의
7. 31	○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정부에 건의 - 농정·유통·협동조합 개혁위원회 합동회의

<부록 2>

3개 개혁위원회 구성

농정개혁위원회 위원(28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농림부	차 관	김 동 태	공동위원장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김 호 탁	공동위원장
< 정 부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박 창 정	부위원장겸농정기획단장(공동)
"	농업정책국장	김 정 호	간 사
농촌진흥청	차 장	이 영 래	
산림청	차 장	김 동 근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부 회 장	이 내 수	
축협중앙회	"	원 광 식	
임협중앙회	"	안 상 국	
< 농업인단체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 의 장	조 성 우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 장	정 장 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나 상 욱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 장	강 춘 성	
한국유기농업협회	부 회 장	정 진 영	
21C 농업위원회	위 원 장	김 수 혁	
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 장	편 정 욱	
< 소비자대표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 장	이 남 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	송 보 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 무 총 장	유 종 성	
국제농업개발원	원 장	이 병 화	
< 학 계 >			
단국대	교 수	장 원 석	농정기획단장(공동)
농촌경제연구원	부 원 장	유 철 호	
충북대	교 수	권 원 달	
"	"	성 진 근	
전국대	"	김 영 철	
"	"	정 찬 길	
성균관대	"	오 호 성	
서울대	"	이 돈 구	

농정개혁위원회 실무협의회 위원(7명)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김 준 규	사무총장	
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장 경 호	총무부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김 인 식	사무총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이 학 규	사무총장	
서울대학교	김 한 호	조 교 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조 응 제	책임연구원	
단국대학교	김 호	교 수	

농정개혁위원회 실무작업단

소 속	성 명	직 위	근무기간	비 고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김 동 근	단 장	'98. 3.14~'98. 6.30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김 정 호	"	'98. 7. 1~'98. 8. 4	
농업공무원 교수부장	소 만 호	부 단 장	'98. 3.14~'98. 6.30	
"	김 달 중	"	'98. 7. 1~'98. 8. 4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	정 병 학	투융자팀장	'98. 3.14~'98. 4.14	
농림부 과장	송 주 호	제도팀장	'98. 3.14~'98. 8. 4	
KREI 연구위원	김 정 호	정책팀장	'98. 3.14~'98. 8. 4	
농림부 서기관	김 경 규	총괄팀장	'98. 3.14~'98. 8. 4	
"	홍 병 기	(반 원)	'98. 3.14~'98. 4.14	
농림부 사무관	고 학 수		'98. 3.14~'98. 6.30	
"	최 대 휴		'98. 3.14~'98. 8. 4	
농림부 주사	송 광 현		'98. 3.14~'98. 8. 4	
"	박 상 연		'98. 6. 8~'98. 7.13	
KREI 연구원	김 창 길		'98. 3.14~'98. 4.14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장	홍 주 식		'98. 3.14~'98. 4.14	
농어촌진흥공사 계장	김 종 필		'98. 3.14~'98. 8. 4	
농협중앙회 과장	전 정 식		'98. 3.14~'98. 6.30	
축협중앙회 대리	김 대 한		'98. 3.14~'98. 4.14	
농림부 총무과	윤 수 정		'98. 3.14~'98. 8. 4	
농림부 채소특작과	김 보 선		'98. 3.14~'98. 8. 4	

유통개혁위원회 위원(30명)

소 속	직 위	성 명	참 여 기 간
<공동위원장>			
농 립 부	차 관 보	이영래	'98. 3.19 ~ 6.29
서울대학교	교 수	김완배	"
<정 부>			
농 립 부	유통정책국장	김영욱	"
농 립 부	축산국장	이관용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이용희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심의관	권선택	"
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	지광식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이희범	"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조성두	"
<농업인 단체 등>			
농협중앙회	상 무	서정근	"
축협중앙회	상 무	박수영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 회 장	정봉락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 의 장	조성우	"
한국유기농협회	부 회 장	정진영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장	김영주	"
소비자문제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재옥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인례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 장	나경만	"
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 장	한용근	"
산지유통인연합회	사무총장	장해식	"
서울시도매시장관리공사	이 사	이규정	"
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타	상임고문	김홍태	"
수퍼마켓협동조합	전 무	이정웅	'98. 3.19 ~ 5. 8
대구중앙청과(주)	대 표	이용우	'98. 3.19 ~ 6.29

소 속	직 위	성 명	참 여 기 간
<학 계>			
경북대학교	교 수	최규섭	'98. 3.19 ~ 6.29
전남대학교	"	전태갑	"
천안외국어전문대	"	왕성우	"
전북대학교	"	최락환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본부장	이동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길행	"

유통개혁대책 실무작업반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단 장		농 립 부	유통정책국장	김영욱	
총괄반 (자문교수 김완배) 20명	반장	농 립 부	유통정책과장	김재수	
	간사	"	서 기 관	이준원	
	반원	충남도청	농정유통과장	남궁 영	
	"	농 립 부	사 무 관	박명수	
	"	"	"	염상열	
	"	"	"	김재왕	
	"	"	"	김윤종	
	"	산 립 청	"	이규태	
	"	유통공사	시장조사부장	이동혁	
	"	"	물류개선부장	박감춘	
	"	농 협	채 소 과 장	박광태	
	"	"	대 리	이종수	
	"	축 협	"	최홍석	
	"	임 협	임산유통부장	김종호	
	"	농 경 연	책임연구원	김병률	
	"	한 농 연	사무총장	황장수	
"	한국유통 정책연구원	원 장	최장호		
"	전 농	부 장	신동섭		
"	도매시장 관리공사	과 장	노광섭		
"	유통공사	사 원	김미나		
직거래반		농 립 부	과 장	임재암	
(자문교수 최규섭) 12명	반장	농 립 부	과 장	임재암	
	간사	"	사 무 관	이재성	
	"	"	"	정현출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반원	"	서 기 관	정동홍
	"	"	"	신금성
	"	서울시	"	진명수
	"	농 협	과 장	정춘남
	"	축 협	차 장	김완기
	"	임 협	차 장	박래덕
	"	한국유기 농업협회	사무국장	나기수
	"	소시모	사무총장	김재옥
	"	생협중앙회	상무이사	김기섭
제도개선반 (자문교수 왕성우) 13명 자문위원 : 배종열	반장	농 립 부	시 장 과 장	김영만
	간사	"	사 무 관	최병국
	반원	유통공사	과 장	심일출
	"	"	"	유충식
	"	농 협	과 장	김홍선
	"	서울도매시장 관리공사	과 장	최인배
	"	"	"	이영민
	"	인천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 장	손원호
	"	도매법인협회	부 장	서판대
	"	중도매인연합회	사무국장	이신우
	"	산지유통인연합회	사무총장	장해식
	"	한국농업경영 인증연합회	차 장	이재덕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유통부장	신동섭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물류개선반 (자문교수 최락환) 15명 자문위원 : 최종욱	반장	농 립 부	가공산업과장	조방환	
	간사	"	사 무 관	박백화	
	반원	"	"	윤달상	
	"	"	행 정 주 사	최영섭	
	반원	산 립 청	행 정 주 사	박도환	
	"	농 검	농업사무관	전용투	
	"	"	행 정 주 사	신동두	
	"	식품개발연구원	부 장	박형우	
	"	"	"	김병삼	
	"	유통공사	과 장	고광삼	
	"	"	"	김동묵	
	"	도매시장관리공사	"	임지범	
	"	농 협	과 장	김 경	
	"	파렛트협회	사 무 국 장	최영범	
"	플판지조합	부 장	김진무		
전자상거래반 (자문교수 전태갑) 9명	반장	농 립 부	정보화지원담당관	조무희	
	간사	"	사 무 관	서홍교	
	반원	"	6 급	조규표	
	"	유통공사	과 장	최대일	
	"	"	"	김계수	
	"	"	대 리	김상배	
	"	"	"	전진구	
	"	"	"	박기관	
	"	농 협	과 장	박갑식	
	"	정보센타	전 산 과 장	박동균	
	"	도매시장관리공사	"	이성희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소 속	직 위	성 명	참여기간
< 공동위원장 >			
농 립 부	기획관리실장	안 덕 수	'98. 4. 13~ 6. 30
농 립 부	기획관리실장	박 창 정	'98. 7. 1~ 7. 31
협동조합연구소	이 사 장	황 민 영	'98. 4. 13~ 7. 31
< 정 부 >			
농 립 부	농 정 국 장	김 동 근	'98. 4. 13~ 6. 30
농 립 부	농 정 국 장	김 정 호	'98. 7. 1~ 7. 31
농 립 부	축 산 국 장	이 관 용	'98. 4. 13~ 6. 30
농 립 부	축 산 국 장	김 욱 경	'98. 7. 1~ 7. 31
산 립 청	임 정 국 장	박 정 식	'98. 4. 13~ 7. 31
< 농업인단체 등 >			
농협중앙회	기 획 상 무	백 남 훈	'98. 4. 13~ 7. 31
축협중앙회	기획관리상무	류 광 상	"
임협중앙회	관 리 상 무	최 동 혁	"
인삼협중앙회	관 리 상 무	노 종 규	'98. 5. 15~ 7. 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 책 부 회 장	조 봉 희	'98. 4. 13~ 7. 31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위원장	이 호 원	"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회 장	고 송 자	"
나주남평농협	조 합 장	윤 승 혁	"
순천축협	조 합 장	황 금 영	"
생활협동조합중앙회	회 장	홍 동 선	"
< 학 계 >			
한국방송통신대	교 수	권 광 식	"
건 국 대	교 수	김 정 주	"
상 지 대	교 수	서 중 일	"
충 남 대	교 수	박 진 도	"
경 북 대	교 수	이 호 철	"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실무작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활 동 기 간
단 장	농 립 부	국 장	백 현 기	'98.4.13~6.30
반 장	"	농업금융과장	허 윤 진	'98.4.13~7.31
"	한국가톨릭농민회	사 무 총 장	정 재 돈	"
반 원	농 립 부	5 급	이 명 진	"
"	"	"	김 남 훈	"
"	산 립 청	"	이 명 수	"
"	농협중앙회	차 장	최 홍 식	"
"	축협중앙회	"	오 규 락	"
"	임협중앙회	"	전 갑 진	"
"	인삼협중앙회	과 장	안 병 기	'98.5.15~7.31
"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용 선	'98.4.13~7.31
"	(사)협동조합연구소	사 무 국 장	장 종 익	"
"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총 무 부 장	장 경 호	"
"	전국여성농민회총 연합회	정 책 실 장	김 성 속	'98.5.15~7.31